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이 교재는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인권의 이해>의 학습내용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저작권은 사이버인권교육 <인권의 이해> 원저자(오창익(인권연대))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이해> 사이버인권교육을 수강할 때 보조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강 인권의 기원	1
1.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5
2. 인권 개념의 윤리적 토대	11
3. 공유하기	16
문제풀기	17
정리하기	19
제2강 인권의 개념	21
1. 인권에 대한 비판론	25
2. 인권이라는 말	28
3. 인권의 특성	30
4. 공유하기	34
문제풀기	35
정리하기	37
제3강 인권의 역사	39
1. 계몽주의 시대	43
2. 산업혁명 시대	47
3.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53
4. 공유하기	57
문제풀기	58
정리하기	60

제4강 인권의 역할	63
1. 인권, 삶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수단	67
2. 여성들의 권리 찾기	69
3. 인권의 진전	71
4. 공유하기	75
문제풀기	76
정리하기	77
제5강 인권의 과제	79
1. 국가의 존재 이유	83
2. 제도의 확립	84
3. 인권의 과제	92
4. 공유하기	94
문제풀기	95
정리하기	97
제6강 자유권	99
1. 국제권리장전	103
2.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04
3. 공유하기	113
문제풀기	114
정리하기	116
제7강 사회권	117
1. 사회권의 의미	121
2.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122
3. 공유하기	130

문제풀기 131
 정리하기 133

제8강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135

1. 소수자의 인권 139
 2.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140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145
 4. 평등권 154
 5. 공유하기 156
 문제풀기 157
 정리하기 158

제9강 유엔인권선언 159

1.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163
 2.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166
 3.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171
 4. 공유하기 173
 문제풀기 174
 문제풀기 176

제10강 유엔인권례집 177

1.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181
 2.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184
 3. 고문방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 188
 4.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192
 5. 공유하기 196
 문제풀기 197
 정리하기 199

제11강 국제인권현안	201
1. 자본주의와 세계화	205
2. 국제인권현안	206
3. 세계화시대의 인권	214
4. 공유하기	215
문제풀기	216
정리하기	218
제12강 국가인권기구의 기원과 발전	219
1.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223
2.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성격, 기능	226
3.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230
4. 공유하기	236
문제풀기	237
정리하기	239
제13강 국가와 인권	241
1. 의무의 주체, 국가	245
2. 국가의 역할	250
3. 공유하기	255
문제풀기	256
정리하기	258
제14강 법과 인권	259
1. 준사법적 권리구제	263
2. 국가인권위원회	264
3. 국민권익위원회	266
4. 언론중재위원회	269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71

6. 공유하기 275

문제풀기 276

정리하기 278

제15강 사회복지와 인권 279

1. 사회복지의 개념 283

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287

3.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291

4. 공유하기 294

문제풀기 295

정리하기 297

제1강

인권의 기원



1.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2. 인권 개념의 윤리적 토대
3. 공유하기

제1강

인권의 기원

학습목표

- 인권 개념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종교와 경전 속에서 인권 개념의 윤리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

학습내용

-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 인권 개념의 윤리적 토대

들어가기

안티고네는 불운한 신탁에 따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뒤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두 눈을 찢은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의 딸이다. 어머니인 이오카스테가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도 죽고 난 후 안티고네의 오빠들은 서로 왕위 다툼을 벌인다. 그러다 큰오빠 폴리네이케스가 죽게 되고,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해 주려 하지만 왕은 안티고네의 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폴리네이케스가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몰래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고, 그 죄로 왕 앞에 붙잡혀 간다. 잘못을 추궁하는 왕에게 안티고네는 말한다.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도 사람들에게 그런 법을 제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속한 당신의 포고령이 쓰인 적 없고 절대 확실한 신들의 법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티고네가 오빠의 시신을 묻어준 것은 정당한 일인가? 폴리네이케스는 반역자이기에 그의 시신은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걸까?

사전테스트 OX문제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화면의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된다.

1. 인권은 20세기 이후 생겨나게 된 개념이다.

정답: X

해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권 개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인권 개념은 고대로부터 서서히 발전해 왔고, 현재에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2. 인권 개념은 서구에서만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정답: X

해설: 인권 개념이 서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종교와 경전, 철학, 정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인권 개념이라 할 만한 것들의 이론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기에 인권 개념이 단순히 서구의 산물이라 단정할 순 없다.

1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인권의 기원을 두고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통틀어 하나의 보편적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다중기원설/보편역사설)과, 인권은 서구에서 유래된 것이며 최근 예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주장(단일기원설/서구기원설)이 있다.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인권 개념은 대체로 서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도널리(Jack Donnelly)는 비서구 문화권에서도 중요한 윤리 개념들이 있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1400년대 이전에는 오늘날의 ‘권리’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번역될만한 표현은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권리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다.

한편 인권의 기원에 대해 보편역사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경전과 여러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와 경전들에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현대의 인권 개념 형성에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개념의 발아

1. 근대 이전

고대 그리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해져오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 정치적인 문제들을 논하던 나라였다. 매킨타이어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달된 고대 그리스에서도 권리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반박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은 헌법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믿었다. 거기에는 공무참여권과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만약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정치체제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분배되는 방식을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 디카이온(to dika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말은 ‘정당한 요구’라는 의미로,

‘권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뜻은 오늘날과는 분명히 다른 만큼,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의 개념이라 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권리는 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시민’이란 단어 속에는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세에 ‘권리’ 개념에 영향을 끼친 것은 고대 로마법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역사가 미셸 비에이(Michel Villey)는 고대의 로마법에는 객관적 권리 개념이 아닌 주관적 권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로마법에서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suum ius)’를 양도하는 것”을 정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학과 철학자들도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역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세 후기에 들어와서야 객관적 권리의 개념이 주관적 권리로 전환되었다. 티어니(John Tierney)는 권리란 개념과 그에 대한 언어가 등장한 것이 12세기부터라고 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권리 개념이 자연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1215년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는 ‘그의 권리(jus suum)’- 로마법에 등장하는 그의 권리(suum ius)와는 다른 말이다 - 라는 단어를 통해 주관적 권리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를 통한 권리보장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것과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서였으며 교회 또는 일부 특권계층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나카르타가 중요한 이유는, 근대 헌법과 인권문서들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법의 보호가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 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나 스스로 그를 처벌하거나……(후략)’

라는 제39조 조항은 영국의 권리청원에 그대로 인용될 정도로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마그나 카르타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권리도 다루고 있으며, 절대 권력의 분산을 시도하고 권리를 확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의 권리 개념

17세기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인간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봉건제 하의 독점적인 경제는 중상주의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자유주의적인 인권담론이 생겨나게 되었고,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유럽 여러 곳에서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 휘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근대 국제법 혹은 근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는 중세의 사상들을 근대적 권리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당대를 넘어 저명한 법사상가로서, 국가는 자연법의 구속을 받고,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대 로마법에 나오는 이우스(ius)라는 개념이, 정당한 것 혹은 인간이 정당하게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보았다. 자연법은 정의와 권리의 주장에 대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유럽의 자연법 사상의 효시가 되었다.

2) 홉스(Thomas Hobbes)

그로티우스가 유럽의 자연법 사상의 효시라면, 홉스는 영국의 자연권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홉스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정치 사상가로, 저서로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철학 원론》, 《자연법과 국가의 원리》 등이 있다.

홉스는 마그나 카르타 이후로 권력이 지나치게 분산되었다고 생각했고, 참정권과 법의 평등,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수평파를 적대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정치권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철학자였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곧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보았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여겼다.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다. 개인이 사회계약을 통해 이성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위임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었다. 그럴 때에만 개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계약이

개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면 개인들은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거둬들이고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렇게만 보면 홉스는 권력의 집중화를 주장하는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홉스가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의무를 권리에 앞서 내세우는 전통적 견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홉스는 권리를 중시하는 근대 자유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

3) 로크(John Locke, 1632~1704)

홉스에 이어 서양의 계약이론을 잇는 인물로 로크를 들 수 있다. 로크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옹호한 계몽 사상가이다. 근대 계몽주의를 확립했으며 저서로는 《인간 오성론(人間悟性論)》, 《통치론(統治論)》, 《교육론(教育論)》 등이 있다.

로크는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이성을 가진 자립적인 존재로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연권의 보장을 받고 이성을 통하여 자연 법칙을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는 홉스와 같이 정부에 대한 통치 위임에 동의했다. 정부는 자연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개인들의 자연권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증진해야 하며,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홉스가 왕에 의해 권력이 집중된 절대주의적인 정부를 주장했다면, 로크는 그보다는 권력이 제한된,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부를 주장했다. 또한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생명권과 자유권에 재산권을 추가했다.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노동과 그 노동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노동소유권 이론을 주장했다. 노동을 사적소유권의 근거로 본 것이다. 로크는 토지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것들을 생존을 위한 인류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그 공유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공유재산은 노동을 통해서만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자연 상태의 사과나무는 공유재산이지만, 내가 그것을 따려고 노동력을 투입한 순간 사과라는 과일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땅이나 물과 같은 자연은 사적재산이 될 수 없으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은 금융자본이나 투기상품은 재산권의 옹호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사과를 너무 많이 따서 썩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환을 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교환을 하는 것은

화폐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남은 사과를 화폐로 바꾸어 보관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로크의 이론의 모순된 부분이다.

로크의 이론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의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그러나 로크의 이론을 단순히 부르주아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후 근대적 인권 개념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로크의 자연권 개념에 빛을 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4)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인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문명이 그것을 나쁘게 만든다며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저서로는 《에밀》,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있다. 사회계약이론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홉스와 로크의 국가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는 인민의 의지 또는 일반 의지와 같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의지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을 구성하는 유기적 존재를 의미한다.

재산과 권리에 대해 루소는 자연에 대하여는 소유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그저 물리적 사실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正当한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그 권리가 침범 당했을 때 법과 국가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단순한 소유가 아닌 각자 정당하게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국가와 시민들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상태를 위해 사회계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정치적 권리와 재산에 대한 권리 모두 시민적 권리이며,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루소와 로크의 차이가 발생한다. 로크는 재산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루소는 모든 인간을 재산을 소유하고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시민으로 본다(물론 여기에서의 시민은 노예, 여성,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성이다). 이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하지만 루소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만큼은 소유하며,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정치적 통제권에 위협이 될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재산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전체에 속하며, 개인은 그 관리를 맡는 것이다.

루소의 사상에서 시민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써, 자연권과 교환된 시민권은

공동체에 국한된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이 일반 의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3. 위대한 문서들

1) 미국

자연권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서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전해졌다. 1776년에 제정된 미국 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은 인권에 대한 자연법적 기초를 부여하고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써,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민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로크의 사상이 미국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은 독립선언문보다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것으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유권들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행사를 할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1789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은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고, 노예제를 허용했으며, 여성에 대한 정치 참여에도 제약을 두었다. 그러나 노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의해 신체와 표현, 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는 대상을 지칭하는데 있어서 미국 시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수정헌법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1791)은 1789년에 제정된 헌법을 버지니아 권리선언을 모델로 하여 수정한 뒤 발효한 것으로써, 언론, 신앙,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정당한 법 절차를 밝으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불합리한 수색이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1789년은 여러 모로 의미 있는 해이다. 도시민과 농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대혁명이 발생한 해이며, 혁명

후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회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 de l'Homme et du Citoyen, 1789)**을 선포한 해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말로 인간의 자연권 보호를 명시했다. 그것은 자유, 재산, 신체의 안전,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 선언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재산권, 표현과 종교의 자유, 불합리하게 체포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특히 평등을 강조했다. 법을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이 부분은 미국 헌법보다 더 평등주의적이다. 그러나 이 선언문 역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이었다.

3) 영국

마그나 카르타가 공표된 이후 영국 의회는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을 반포했다. 인신보호법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에 따라 **법정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명시**했다. 이로부터 10년 뒤에 나온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이전의 문서들보다 좀 더 보편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범죄자나 용의자에 대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다.

권리장전은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최초의 의회 제정법이다. 권리장전이 채택되면서 영국은 절대왕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입헌 군주제가 실시되었다.

2 인권 개념의 윤리적 토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기초를 마련했던 다수의 참여자들은 종교적 휴머니즘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전통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교적 교리나 여러 철학에서 강조하는 사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마다의 사상과

경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념이 드러나 있다. ‘보편성’이라는 것이 인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생각해 보면, 각각의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념이 오늘날의 인권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프랑스 법학자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카생(René(-Samuel) Cassin)은 인권 개념이 성경과 구약, 그리고 십계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오늘날의 재산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권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신의 형상(Imago-Dei)대로 창조되었고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여긴다. 성경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비난을 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평등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대교에는 재산권의 중요성을 드러내면서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일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현대의 쉼 권리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집에서 부리는 종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도 부의 축적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나,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일화가 그것이다.

2) 불교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은 자기의 존재를 잊는 경지, 무아(無我)이다. ‘나’를 변하지 않는 실체로 보고 떠받드는 것을 이기주의, 집착, 교만 등 모든 윤리적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 붓다는 번뇌와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해탈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 붓다의 자비와 연기(緣起) 사상은 훗날 중생의 구원을 우선으로 하는 대승 불교의 초석이 되었다.

불교에서의 ‘해탈 사상’은 현재의 실재나 교의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이 내면의 각성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대승 불교는 자기 자신의 수행과 해탈에 집중하는 소승 불교와 달리, 대중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 대중을 구원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불자는 불교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률을 따라야 한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라고 강조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벌레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는 불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불교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또한 붓다는 모든 사람들이 팔정도(八正道) 즉,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동(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생각(正念), 바른 집중(正定) 등 여덟 가지 도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을 찾고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불교의 계명들은 십계명의 조항들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이런 계명들이 결국 <세계 인권선언>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유교

중국의 철학자인 로어춘수(羅春樹)는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적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권리가 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고전 <논어>는 공자의 어록과 일화, 제자들이 공자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어>는 인간의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공자는 모든 인간은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배움에 매진할수록 더 깊은 자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자는 정부가 인민의 삶, 즉 경제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복리에 노력을 기울이면 그 나라의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와 사회의 안정은 외부의 조건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질서가 바르게 확립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믿었다. 각 개인들의 자기수양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기수양과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태도는 군주에게도 중요한 덕목이었다. 공자는 군주라 하더라도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만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군주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판했다. 백성들을 고르게 하여 가난하지 않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본 것이다.

4) 이슬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서거하기 전에 계시 받은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꾸란에는 연대와 정의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으며, 여타의 종교들과 같이 보편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십계명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로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이 그 예이다.

꾸란에서는 무슬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믿음은 강제할 수 없다면서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물론 무함마드는 꾸란을 믿는 사람만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꾸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꾸란은 또한 경제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삶의 터전에서 살 권리, 박해를 피해 이주할 권리,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 등이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꾸란은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사회 타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5) 각 종교에서의 여성차별

고대의 많은 경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받아들인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 보편적인 인류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 개념은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서서히 발전해 왔다. 많은 종교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표방했지만, 그 속에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여성의 권리는 남성에 비해 보호받지 못했다. 유대교의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노예보다 못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남자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보다는 여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여성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 그것은 여성에게는 신의 말씀을 어기고 남편을 유혹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원죄가 있다고 보는 것과 연관이 있다.

불교는 상대적으로 타 종교에 비해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성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허용되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불교에서 여성의 출가를 반대했으며,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징벌로 여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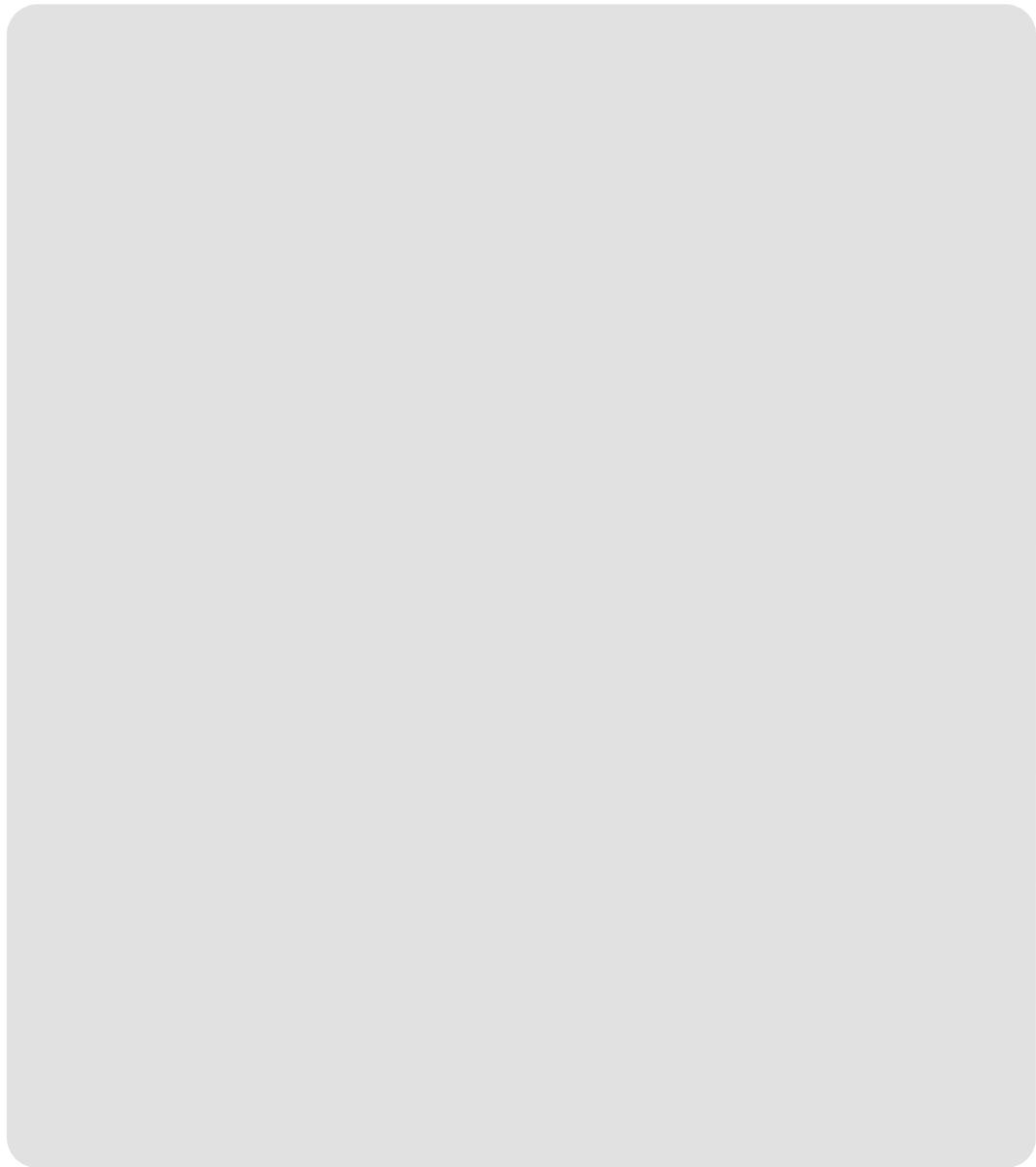
여성에 대한 인식은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을 남자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며 여성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었다. 공자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만약 교육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는 못 배운 사람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슬람의 꾸란은 유대교나 그리스도보다는 여성의 지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았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았으며,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슬람의 샤리아법은 이와 달리 여성을 차별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남자 형제에 비해 상속을 절반만 받을 수 있었고, 행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와 사상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의 태도와 노예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드러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명백히 차별적인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권 개념 역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인권의 역사란 결국 차별에 대한 투쟁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러한 차별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대적·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경전들과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 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정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들이 오늘날 인권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공유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들 이외에 인권개념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풀기

1. 영국에서 귀족이 국왕의 전횡으로부터 민주정치의 단서를 쟁취한 결과물로, 근대 헌법과 인권문서들의 초석이 된 것은 무엇인가?

- ① 인신보호법 ② 권리장전 ③ 마그나 카르타 ④ 독립선언문

답: 3

해설: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헌법과 인권문서들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민이 적법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추방 등을 당하지 않으며 재산을 보호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자연 상태의 인간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로 보고 사회계약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① 루소 ② 그로티우스 ③ 로크 ④ 홉스

답: 4

해설: 영국 자연권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홉스는 인간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로 보았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이성애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위임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개인들의 자기수양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 군주에게도 자기수양과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① 무함마드 ② 공자 ③ 붓다 ④ 로어춘슈

답: 2

해설: 유교에서 공자는 모든 인간은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배움에 매진할수록 더 깊은 자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군주에게도 중요한 덕목으로, 공자는 군주라 하더라도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만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 수 있다고 믿었다.



정리하기

1.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 서구에서의 ‘권리’ 개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중세에 이르러 객관적 권리에서 주관적 권리로 그 개념이 전환되었음
-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연권과 인간은 인간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 →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권 개념으로 발전
- 인권 개념 발전에 영향을 끼친 주요 문서들
 -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
 - 1679년 영국 <인신보호법>
 - 1689년 영국 <권리장전>
 -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선언>
 -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 1789년 미국 헌법
 -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1791년 미국 <권리장전>

2. 인권 개념의 윤리적 토대

-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관념이 드러나 있음
- ‘보편성’이라는 것이 인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생각해 보면,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념이 오늘날의 인권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제2강

인권의 개념



1. 인권에 대한 비판론
2. 인권이라는 말
3. 인권의 특성
4. 공유하기

제2강 인권의 개념

학습목표

- 자연권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인권에 대한 비판론
- 인권이라는 말
- 인권의 특성

들어가기

-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프랑스에서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도 미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비롯한 권리전반에서 (정치참여를) 배제했다.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여성 운동가였던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1748~1793)는 직접 작성한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을 통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선포한 남성시민의 권리와 똑같이 여성들도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선언문 제10조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의회의 연단에서 연설할 권리도 남성과 똑같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그녀는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Robespierre, 1758~1794)의 공포정치를 비판 (공격) 했다는 이유로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프랑스의 여성참정권은 구즈의 목숨을 건 문제제기 이후 1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인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1세기 반 만인) 1946년에야 비로소 법률로 보장되었다.

2강
인권의 개념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된다.

1. 프랑스의 노예제도는 프랑스대혁명 때 폐지되었다

정답: X

해설: 프랑스대혁명 이후인 1794년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가 1804년에 나폴레옹이 노예제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서 저항운동으로 독립이 선포되었고,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1848년에 노예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2. UN이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해설: UN의 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사회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자유권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권에 대한 비판론

가. 권리의 배경과 한계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대표되는 여러 계몽주의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 계몽주의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해 다져져 1차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여성, 노예 등을 배제하는 등 ‘인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주장으로서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까지 인권을 명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민헌법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인권 사상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시민헌법의 등장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보수주의자였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생명, 자유, 양심, 노동 생산물, 재산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관한 자연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의 거센 폭풍이 영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권 개념을 비역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이상학적 추상개념으로 규정했다, 영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했다.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대표되는 여러 계몽주의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 계몽주의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해 다져져 1차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여성, 노예 등을 배제하는 등 ‘인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주장으로서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인권을 명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민헌법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나. 인간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1. 보수주의적 비판

인권 사상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시민헌법의 등장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보수주의자였던 애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생명, 자유, 양심, 노동 생산물, 재산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관한 자연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의 거센 폭풍이 영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권 개념을 비역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이상학적 추상개념으로 규정했다, 영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했다.

2. 공리주의적 입장의 비판

버크보다 더 자연권 개념을 부정했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덤(Jeremy Bentham, 1748~1832)은 효용가치에 입각한 이성적인 입법과 정책연구에 평생을 바친 법실증주의자였다. 그는 합리성에 기초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호하거나 가설적인 개념을 제거해야 했고, 자연권(선験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권이란 관념은 철학적 헛소리라고 비판했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용성의 원칙이야말로 법률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효용성의 원칙을 수용하고 자연권 개념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사회주의와 사회과학적 입장의 비판

또한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에서 규정한 '인간의 권리'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이기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권리가 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계급에 따른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관심과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경제적 토대문제를 도외시한 채 인간의 권리만 주장하면 할수록 인간해방에서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회과학의 조류도 사회가 객관적인 대상이지 윤리적 원칙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연권을 비판하는 이론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요인은 당시의 자연권 사상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색채의 자연법(신법)과 연결된 것처럼 인식되어 세속적 사상가들의 눈에 거슬린 점도 있었고, 자연권이 절대주의적인 형식으로 표현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이 드러난 데다, 권리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상의 분류	보수주의	공리주의	사회주의	사회과학
자연권 비판의 핵심	· 이성, 자연법적 근거에 의한 절대적 권리	· 전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에 어긋나는 개인주의 · 비과학적 근거	· 부르주아적 이기주의 · 단절되고 파편적인 (단자적인) 개인의 사익	· 형이상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
지향점	· 세대 간 전통의 지혜	· 법실증주의 · 효용원칙에 근거한 이타주의	· 종적 존재로서 연대하는 인간	· 사회를 형성하는 힘을 역사·과학적으로 분석
대표적 인물	· 버크	· 벤담	· 마르크스	· 콩트 · 스펜서 · 뒤르켐
이론의 계승자	· 오크쇼트 · 미노그	· 오스틴 · 하트	· 클레네르 · 파슈카니스	· 현대 구조주의 사회과학

4. 동면기로 접어든 인권이론

이렇듯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자연권은 보수주의, 자유주의(공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20세기 중엽까지 인권이론은 일종의 동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인권운동은 계속 진행되었다. 노예폐지 운동,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운동, 노동운동, 각종 공장법의 제정, 보편교육 움직임, 보통선거권, 국제인도법 운동, 소수민족보호 운동, 반식민주의 운동 등이 쉴 새 없이 벌어졌다. 이론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인권당사자, 인권피해자들의 (인권피해 집단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인권이론이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권의 의미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은 17~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18세기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고, 사용할 경우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썼다. 인권을 표현하는 언어가 18세기 후반 등장했을 때도 이 권리들에 대한 정의가 그다지 명확하지도 않았다.

전쟁과 대량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국제연합)이 설립되고 1948년 UN 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면서 ‘인권’이란 말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인권은 우리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되었으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말은 무엇일까?

나. 인권의 사전적 의미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의미한다. 단어 자체는 한자로 된 개념어이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지어낸 말이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인권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라, 인간역사의 쓰러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진 경험적 개념인 것이다.

개념어인 만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우리의 감각을 모두 동원해도 인권이 뭔지는 알 수 없다.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당연히 맛도 없다. 인권을 흔히 무지개에 비유하기도 한다.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빨강이 파랑보다 더 중요하거나, 노랑은 보라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색깔은 없다. 제각각 다 중요하다. 그래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 소수자를 의미한다.) 등의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상징을 흔히 무지개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권이란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인 인(人)자와 권세, 권리를 뜻하는 한자어 권(權)자를 붙여서 만든 말이다. 이때 권(權)자는 일종의 접미사 역할을 한다. 앞의 말에

붙어서, 그 말에 따르는 권리나 자격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은 ‘사람의 권리’를 줄인 말이다.

$$\text{人權} = \text{人(사람 인)} + \text{權(권세 권)}$$

$$\text{human rights} = \text{human(인간)} + \text{rights(권리, 옳은)}$$

인권은 영어인 ‘human rights’를 번역한 것으로, 1789년 프랑스혁명을 전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Les Droits de l’Homm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rights of man(인간의 권리)’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 단어는 19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Rights of Man’(당시에는 Man이란 단어가 남성만이 아니라, 인간 일반을 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이 마치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기에, 지금은 Man 대신 Human이란 단어를 사용한다.)을 번역한 말이다. 일본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한자어권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 영어(Human Rights), 프랑스어(Les Droits de l’Homme), 독일어(Menschenrechte), 스페인어(Los Derechos Humanos)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인권은 ‘사람+권리’ 또는 ‘사람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권리라는 뜻의 영어 단어 ‘right’는 형용사로 쓰면, ‘옳은, 올바른’ ‘맞는, 정확한’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는 ‘옳은 것, 정당한 것’이란 뜻도 갖고 있다.

권리라는 뜻의 프랑스어 단어 ‘droit’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면, ‘맞는, 바른’ ‘옳은, 공정한’ ‘옳은 것, 정당한 것’이란 뜻이 있다. 이 단어는 영어로도 쓰이는데, 영어에서도 ‘권리’ 등의 뜻을 갖고 있다. 독일어의 ‘recht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단어들은 모두 ‘오른쪽’이란 뜻도 갖고 있다. 그리고 ‘Human Rights’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권이 여러 종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하나의 권리라고 할 때에는 ‘a human right’라고 한다.

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영어 단어 ‘Human Rights’를 단순히 ‘인권’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같은 것은 외면할 가능

성이 있으니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강조하자는 뜻에서 ‘권무(權務, 권리와 의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자신만을 위한 인권은 ‘자권(自權)’과 남을 위한 이타적 권리인 ‘타권(他權)’으로 나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학자는 꼭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권(義權)’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3 인권의 특성

가. 인권의 국제적인 발전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를 통해 모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나.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임에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권을 그저 ‘사람의 권리’라고만 하면 사람의 범주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 곧 인권의 보호가 오히려 더 절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등의 단어가 자주 쓰인다. 인권은 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함을 의미한다는 인권이 지니는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다. 이때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의 행복 추구권 조항이다.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다. 인권에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또한 잣대이기도 한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일 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 또는 반(反)인권이라 불려야 한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각기 다른 어떤 이유로 사람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거나, 인권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차이를 명분삼아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있어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도 인권현실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한다.

☞ 개념보충: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성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국가들이 인권담론을 지배해오면서 만들어낸 환상이며, 인권의 ‘보편성’은 ‘문화제국주의’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위장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고 주장한다.

인권 개념에 있어서 보편성과 차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는 비엔나선언에 잘 드러납니다. 비엔나선언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면서도 ‘국가별, 지역별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한다’는 제한을 가한 것이다.

현 시대 상황에서 무제한적 보편주의가 부적절한 것과 같이 급진적 또는 무제한적 상대주의 또한 부적절하다. 일정 부분 보편적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리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평화권’ ‘연대권’ ‘집단권’ 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3의 권리로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편의를 위해 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분류에 불과하다.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이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이동하는가가 이 권리의 핵심이다. 학교를 간다면 이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의 일부가 되고, 공장에 간다면 일할 권리의 일부가 된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는 모두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유권과 사회권의 권리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권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권의 행사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하나의 권리, 또는 몇 개의 권리만 보장된다고 해서 인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어떤 인권을 부인하거나,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서열을 매겨 특정 영역의 인권을 보다 더 중요하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여러 목록은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중 단 하나의 결핍만 있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 교회나 사찰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권리 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권리가 되기도 한다. 인권은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한다. 장애인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2)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원리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다. 인권은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나의 권리는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공적 책임, 연대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인권의 진전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단 하나,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권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본질적 인권을 제외하고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개념보충: **인권과 기본권(basic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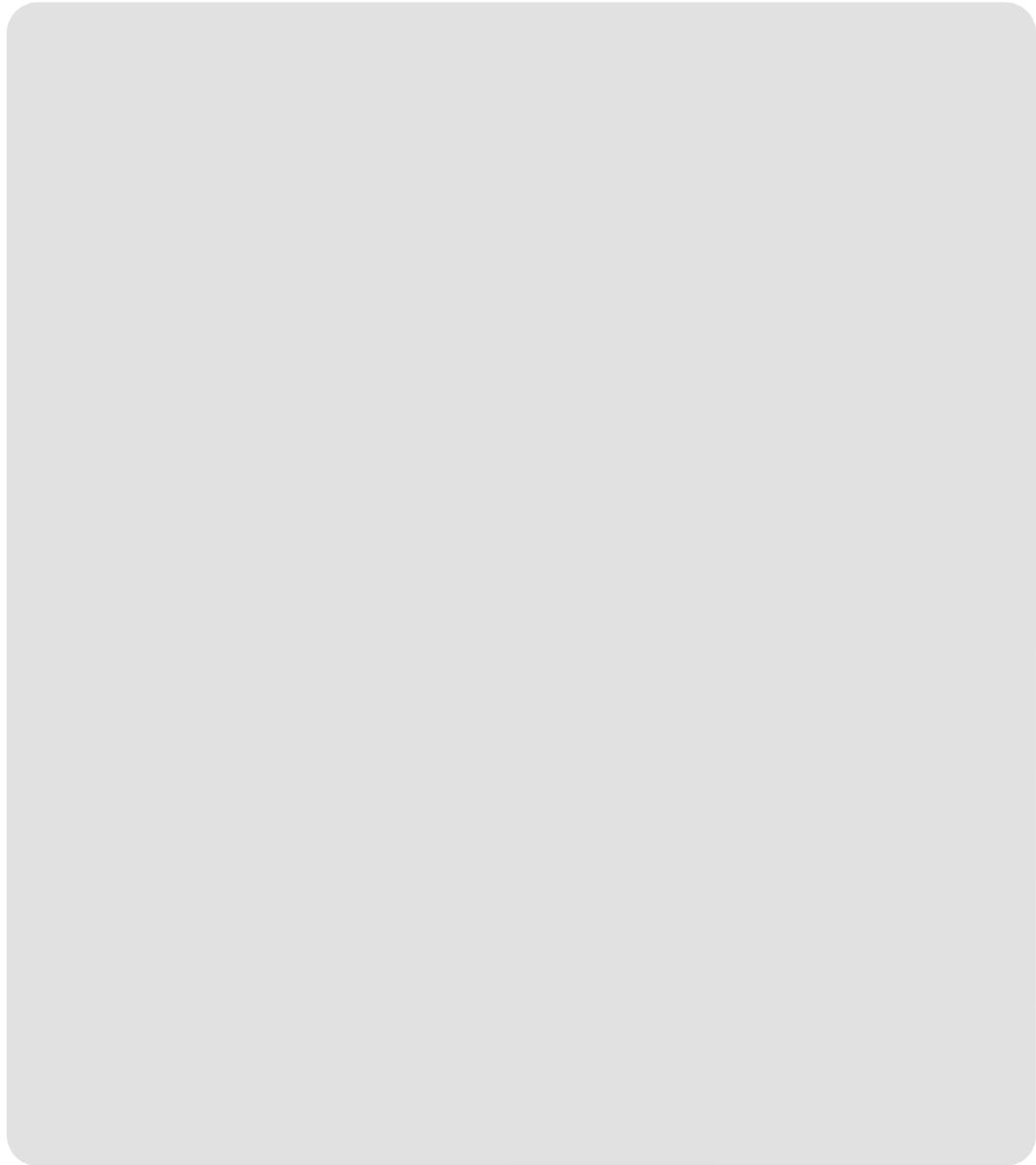
인권과 비슷한 말로 기본권이 있다. 인권(人權)과 기본권(基本權)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 용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자연법적이고 생래적(生來的)인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사람이 누리는 어떤 권리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임을 의미한다.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권리로 인권보다는 대체로 그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작용의 영향(그것이 보호이든 제한이든)을 받는 권리이다. 인권은 자체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나, 기본권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은 기본권으로만 부르고 인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인권이 공동체적 가치, 연대성, 공공성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4

공유하기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봅시다.





문제풀기

1.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권은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다음 중 자연권을 비판한 철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에드먼드 버크
- ② 칼 마르크스
- ③ 존 로크
- ④ 제레미 벤덤

정답: 3

해설: 로크는 17, 18세기에 자연법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2. 인권은 영어인 'Rights of Man'을 번역한 한자어이다. 이 단어를 처음 번역한 나라는 어디인가?

- ① 중국
- ② 일본
- ③ 한국
- ④ 베트남

정답: 2

해설: 서구문화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1885년 처음으로 rights를 권리로 번역하며 사전에 제시했다.

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강조하는 인권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① 보편성의 원칙
- ② 불가분성의 원칙
- ③ 문화적 상대주의
- ④ 상호의존성의 원리

정답: 1

해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함을 의미하는 보편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 조항이다.



정리하기

1. 인권에 대한 비판론

- 근대 인권이론은 추상적인 권리의 내용과 종교적인 색채의 자연법과 연결된 것처럼 인식
- 19세기 보수주의와 급진적 사회주의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인권운동은 멈추지 않았음

2. 인권이라는 말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UN이 창설됨
→ ‘인권’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
- 인권(人權)은 한자로 된 개념어
-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람의 권리’라고 정의 가능

3. 인권의 특성

-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제3강

인권의 역사



1. 계몽주의 시대
2. 산업혁명 시대
3.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4. 공유하기

제3강 인권역사

학습목표

- 인권의 발전과정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시대적 상황과 정치·경제적 발전이 인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계몽주의 시대
- 산업혁명 시대
- 20세기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들어가기

프랑스의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 ~ 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작품이다. 이 작품의 부제는 〈1830년 7월 28일〉이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1815년 빈 회의(Congress of Vienna)를 통해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뒤, 1830년대 유럽 전역에서는 왕정복고에 대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샤를 10세(Charles X, 1757 ~ 1836)가 입헌군주제를 거부하고 과거의 정치체제로 회귀하려고 하자, 1830년 7월 27일 프랑스 민중들은 시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대와 시가전을 벌였다.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가 혁명 중 두 번째 날인 7월 28일 파리 시내의 모습을 본 뒤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 들라크루아는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국을 위해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혁명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작품에는 혁명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가운데 여성은 자유를 상징하며 오른손에는 프랑스 국기를, 왼손에는 총검을 들고 있다. 여성의 왼편에는 하층계급으로 보이는 소년이 총을 들고 있고, 다른 편에는 중산층과 하층계급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있다. 7월 혁명이 계층에 상관없이 다수의 민중들이 참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도 영향을 끼쳤다.

혁명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혁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명은 희생을 동반한다. 이 그림에도 희생된 민중들과 혁명군의 모습이 보인다. 그림 속의 민중들은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일까? 그들이 투쟁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1.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나라는 미국이다.

정답: X

해설: 미국보다 앞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대혁명 후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식민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1794년 2월에 노예폐지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8년 만에 나폴레옹이 식민지의 노예제를 부활시켰다. 영국에서는 1807년에 자국 식민지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한 데 이어 1833년에는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2.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정답: O

해설: 19세기 말 유럽에서 여성참정권 운동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최초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893년 뉴질랜드였고, 이어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에서도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 계몽주의 시대

인권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동서양의 여러 철학·종교, 경전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각각의 사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목표는 달랐다 해도,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분명 인권 개념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인권개념은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종교나 경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이나 종교와 경전의 지향점, 즉 세속적인 삶을 떠나 수도자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던가 하는 점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인의 권리나 법을 중시하는 서구의 사상이 인권개념을 특징짓는 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봉건제 몰락 후 중상주의가 대두되고 계몽주의 시대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는 동안 억압받던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필연적으로 인권의 발전을 소환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이 늘 발전만 해 온 것은 아니다. 인권은 역사 속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 더디기도 했지만 분명히 발전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가.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적 사건

1. 영국혁명

1) 영국혁명의 역사적 의미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민주주의, 나아가 인류 역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때는 인권 담론이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구축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16~17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중상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중산층의 대두이다. 이로 인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 사고의 추구, 법치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2) 영국혁명의 과정

영국 혁명이란 17세기에 일어난 청교도혁명(1642~1648)과 명예혁명(1688)을 포괄하여 이르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제임스 1세(James I, 1566~1625)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영국 의회를 부정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찰스 1세(Charles I, 1600~1649) 역시 의회를 누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찰스 1세는 1637년 스코틀랜드의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11년 만에 의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포함한 의회의 의원들이 왕실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 결과 의회군이 승리하여 1649년 1월에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왕실의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의회는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 주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처음에 크롬웰은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와 같은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평파(Levellers)와 같은 급진주의자들과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는 이들을 군대에서 추방하고 숙청했다. 수평파 내에서 공산주의 성향이었던 디거스(Diggers)-사유 재산의 폐지를 주장하고, 부의 재분배를 촉구-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

수평파는 하인이나, 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적선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유 소유 토지에서 나온 재산이 있거나 교역권 특허장을 받은 사람만이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한 독립파(크롬웰과 같은)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재산소유권이나 경제적인 자립에 따라서 정치적 자유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디거스는 재산 공유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극빈층도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법적·정치적 민주주의를 추가로 요구했다. 디거스의 주장은 공화정 정부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했고, 지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다가 1650년에 해산당하고 말았다.

3) 영국혁명의 결과

영국에서 혁명의 정신은 1660년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가 왕정복고로 즉위하면서 그대로 사그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40년 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부르주아

들이 의회의 권력 장악과 시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명예혁명을 통해 혁명의 정신은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1689년에 공표된 「권리장전」으로 성문화되었다.

2. 미국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은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의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미국인들은 이에 분개했고, 1640년의 영국 혁명을 본보기로 삼아 이를 모방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영국의 수평과가 생명권, 재산권,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상기했던 것이다. 이들은 왕정을 거부하고 빼앗길 수 없는 여러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고, 이는 1776년에 발표된 「미국독립선언문」에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공화국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대항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 정부) 사이에 권력을 배분하도록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연방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1770년대에 영국 왕실 및 영국 측에 가담한 근왕파에 함께 대항했던 남부 주와 북부 주의 독립파들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이 끝나자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노예제를 유지하던 남부 주와 북부 주 간에 긴장감이 조성되었고, 구 연방주와 신 연방주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 농민과 농장의 소유주,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재산소유자에 대한 특혜가 발생했다. 가장 자유주의적인 주에서도 헌법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세금을 내는 모든 등 재산 정도에 따라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다. 혁명을 지지했던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조차도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3. 프랑스혁명

미국 혁명의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은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미국 혁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세력의 타락과 경제적 실책에 불만을 느끼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 혁명에 참여해 함께 싸웠던 프랑스 군인들이 돌아와 미국 혁명의 정신을 전파하면서 동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이들과 농민, 분노한 부르주아들과 제3신분이 들고 일어난 가운데

국민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 1789년 7월 14일 민중들은 거리로 나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보편적 법치, 개개인의 평등한 시민 자격과 주권 등을 명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모든 시민’이라는 말로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했다. 여기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정치참여나 투표권에 있어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제한을 두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재산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분열이 발생했다.

당시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혁명을 통한 인권사상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다른 나라들이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외국의 여러 왕실들이 두려워한 것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프랑스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시민이 아닌 사람 즉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도 갈등은 불거지고 있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된 지 석 달 만에 하인과 여자, 사흘 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 등에게는 투표권과 공직취임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때 대중운동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Maximilien-Francois-Marie-Isidore de Robespierre, 1758~1794)와 같은 몇몇 사람만이 이 조처에 반발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재산에 따라 비(非)유산계급이나 농민과 같은 가난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수입에 따른 누진세 부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부당한 재산권 행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됨에 따라 혁명 세력도 힘을 잃었다.

나. 계몽주의 시대의 성과와 한계

계몽주의 시대에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절대적인 왕실의 권위에 맞서는 것으로 봉건주의 체제의 뿌리를 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혁명들은 미완의 혁명이었다. 보편적 권리를 내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토지의 소유나 납세의 정도와 같이 재산에 따라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 물론 혁명의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동성애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세계 최초로 유대인을 해방시킨 프랑스에서조차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노예들 역시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폄하할 수는 없다. 이 시기에

여성과 노예 등은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때 등장한 인권 개념은 후에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1. 근대적인 인권개념의 발전

계몽주의 시대에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절대적인 왕실의 권위에 맞서는 것으로 봉건주의 체제의 뿌리를 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2. 미완의 혁명

그러나 이 시기의 혁명들은 미완의 혁명이었다. 보편적 권리를 내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토지의 소유나 납세의 정도와 같이 재산에 따라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 물론 혁명의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동성애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세계 최초로 유대인을 해방시킨 프랑스에서조차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노예들 역시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폄훼할 수는 없다. 이 시기에 여성과 노예 등은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때 등장한 인권 개념은 후에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산업혁명 시대

1807년에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대륙체제로 단합시켜서 영국을 굴복시키려 했다. 당시 유럽의 자코뱅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을 봉건시대의 잔재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구시대의 정치체제를 답습했고,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왕정복고(Restoration, 1815~1830)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왕정복고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 1830년에 7월 혁명이 발생했고, 이 혁명은 벨기에,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반란들을 촉발시켰다. 영국에서도 중산 계급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에 영향으로 지주와 귀족계급에 대항하는 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18세기 중엽부터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노동계급의 시민적·경제적·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며 인권담론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변혁을 경험했다. 잠시 숨을 죽이는 듯했던 혁명의 유산들은 더 크게 기지개를 켜고, 이는 인권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노예, 무산계급, 여성 등 이전까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이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여 분노를 표출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 노예제도 폐지

1. 프랑스

노예를 붙잡아 물건처럼 매매하는 노예무역이 번성하게 된 것은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면서부터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노예가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노예무역의 잔인함은 이를 데 없었다. 노예를 붙잡아 배에 태워 데려오는 동안 열악한 상태에서 지내던 노예들이 죽는 경우도 허다했고, 살아남은 노예들은 가혹한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 대혁명 후 프랑스의 식민지(현 아이티)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프랑스는 식민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1794년 2월에 노예폐지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8년 만에 나폴레옹이 식민지의 노예제를 부활시켰다.

2. 영국

영국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1807년에 자국 식민지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뒤인 1833년에는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3. 미국

그러나 미국에서는 노예폐지운동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부 대농장 노예소유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 노예들을 데려왔다. 그러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끝나고 북부에 있는 일부 주에서부터 점차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1808년부터 미국 정부는 노예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노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기존에 있던 노예들과 그 자녀들은 해방될 수 없었다.

남부에 있는 주에서는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 쌀과 면화를 재배하던 남부 주의 대농장들은 노예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깊어졌고,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1860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북부 주와 남부 주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1861~186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북부 주가 승리함에 따라, 1865년 미국 의회는 미국 내에서 모든 노예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 참정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여러 혁명들은 귀족 계급에게만 가능했던 참정권을, 원칙적으로, 충분한 재산(토지)을 소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모든 시민(백인 남성)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진 사람들과 노동계급 사이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계급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참정권을 행사하기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되었고, 이런 노력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루어졌다.

1. 각 국의 참정권

1) 프랑스의 참정권

프랑스에서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후 헌법에서 왕권신수설이 삭제되고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선거제도상의 변화는 미미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는 제안은 토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르주아들만 선거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1848년 제2공화정의 자유주의 「신헌법」에 보통선거권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1848년 11월 4일 공포된 헌법은 20세 이상의 남성시민으로서 시민적 권리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보통선거권(남성에 한함)을 실시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 지 두 달 만인 1850년 5월 31일 국민의회는 투표권에 재산자격 제한규정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 미국의 참정권

미국에서는 1822년경에 이르러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토지나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의 많은 이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으며, 헌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문자 해독 시험으로 인해 선거권(남성에 한함)은 더욱 제한되었다.

흑인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더욱 심했다. 남부에서는 글을 모르는 백인일 경우에는 인두세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허용했는데 흑인 중에서는 인두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870년대 남부에서 시작된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을 통해 대중교통, 학교, 공원, 공동묘지, 극장,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흑백인종 분리정책이 강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선거법의 제한만으로 흑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는 초법적인 조치를 하기도 했다. 문자 해독 시험과 법률적 차별, 강압적 정책으로 인해 흑인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짐 크로우 법」은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1954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3) 영국의 참정권

영국에서는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인정이 되었다. 이 「개정선거법」에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1838년 영국의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통해 보통선거권,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출마자의 재산자격 제한 철폐, 의원의 세비 지급, 인구수가 균등한 선거구제 설정, 매년 의원선거 시행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것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다.

그러나 차티스트 운동가들의 요구는 곧바로 수용되지 않았다. 의회는 번번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차티스트 운동은 힘을 잃었으나, 그 뒤로도 영국에서 선거권 확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덕분에 선거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고, 계급에 따른 선거 관련 영향력은 1918년의 개정 선거법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2. 여성의 참정권 운동

1) 미국의 여성참정권

19세기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분명 기여했지만, 여전히 수동적 시민으로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산업화로 인해 교육받은 미혼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노동 환경에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조직화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여성참정권 운동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최초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893년 뉴질랜드였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노르웨이(1913)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참정권운동을 전개한 지 불과 십 년 만에 전국적 선거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여성의 선거권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들 나라에서의 여성운동은 주로 중산계급과 상류계급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 폐지운동과 더불어 여성해방요구가 일어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개되었다. 184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권리대회가 열렸다. 이후 1869년 '전국여성참정권 협회'와 '미국여성참정권 협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1890년 '전미여성참정권협회'로 통일되어 여성참정권 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여성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에서는 1920년에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2) 영국의 여성참정권

영국에서는 1865년 런던에서 '여성참정권위원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참정권 운동이 벌어졌다. 그해 하원에서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 수정안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각지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식인과 중산계급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참정권협회전국동맹'은 1897년 결성되어 여성참정권 운동을 벌였고, 1903년에는 팡크허스트(Emmeline Pankhurst, 1858~1928)를 중

심으로 결성된 ‘여성사회정치동맹’은 1918년 국민대표법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여성사회정치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여성활동가 에밀리 데이비슨(Emily Wilding Davison : 1872-1913)은 1913년 6월 4일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며 경마대회에서 달리는 말 앞에 뛰어들어 나흘 만에 숨을 거두기도 했다. 그녀의 죽음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은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고, 마침내 1928년 영국 정부는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3. 노동의 기본권 보장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자와 빈민으로 전락했다. 다행히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도 사정은 좋지 않았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 19세기 중엽 프랑스 임금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5시간 정도였고, 그렇게 일해서 받은 임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작업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었다. 어린 아이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루 16~17시간 정도 일을 했고,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이런 열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노동조합이었다. 19세기 서유럽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871년 영국에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고, 1900년경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았다. 미국에서도 1936년에서 1937년 사이에 대규모 파업을 거쳐 노동조합 결성권이 인정되었다.

노동시간도 점차 단축되었다. 1847년에 영국에서는 청소년과 여성의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얼마 후에 남성의 노동시간도 1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노동자들의 지속적으로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8시간 노동제가 여러 국가에서 확립되었다.

3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20세기는 시작과 동시에 전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직면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기 때문이다. 또 전쟁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산업화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인권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면, 20세기는 그 이전 시대의 많은 정치적·사회적 요구들이 서구에서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에 들어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같은 기구의 창설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국제조약에 성문화되었다. 또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과 식민억압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을 위한 권리가 인권의제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했다.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1.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계는 힘의 정치, 상업적 경쟁, 민족주의가 합해진 적자생존식 대외정책이 성행했고, 이는 유래 없는 전쟁으로 그 정점에 다다랐다.

참담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인권원칙이 전세계로 확산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서구로 확산하려는 노력은 헝가리와 독일 등지에서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러시아에서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소련의 억압적 관료체제로 이어졌다.

2.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정책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 정책은 전 세계 혁명을 향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공세에 맞서서 소련이라는 국가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뜻했다. 이러한 논리는 농민에 대한 공포정치와 모든 국내 반대파의 숙청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바깥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소련을 추종하든지, 각국 내 개별 사회주의 정당들이 결정한 자체적 사회주의 중에서 한 노선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분열이 심화되었다.

3.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미국의 윌슨 대통령(Woodrow Wilson, 1856~1924)은 칼로써 결정되는 세력균형 개념을 거부했다. 그는 미국식 모델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어 평화가 강화되는 것을 희망했다. 이런 정신에 따라 1919년의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그 부설 조직으로써 ILO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평화와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윌슨이 제시했던 방법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자국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국제기구에 넘기는 것을 우려한 미국 상원의 반대 때문에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과 소련도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국으로써 전쟁 당시 유럽 각국에 무기와 군수품을 팔며 경제적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발생한 대공황(1929~1939)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했다. 그때 미국의 노동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대공황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까지 여파가 미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4.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한편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가혹한 전쟁배상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그 사이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독일의 재건, 베르사유 조약 파기, 반유대주의를 외치며 나치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나치의 지지를 상층으로 1933년 1월 독일의 수상이 된 히틀러는 1934년에 스스로 총통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나. 제2차 세계대전과 유엔

1. 민간의 대량사망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전체

사망자 중 60퍼센트가 민간인이었다. 기계화된 전쟁 무기,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 유대인 대량 학살이 낳은 결과였다. 또한 전쟁 당시에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거주지까지 목표로 삼은 대규모의 공습과 포격이 이루어졌다. 연합국 역시 독일의 드레스덴을 폭격하여 1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역시 사망자는 대부분 민간인들이었다.

2. 유대인 대량 학살은 인권유린인가?

한편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되었던 유대인 대량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이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쫓아내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차별 정책을 폈다. 유대인 식별카드를 착용하게 만들었고, 재산을 몰수하여 게토라는 집단 거주 지역에 강제로 몰아넣어 학살했다. 이렇게 희생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도 학살했다.

엄청난 인명이 희생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 전승국들은 국가 간 분쟁을 막고 사회정의를 고취하기 위해서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1944년 중국, 소련, 미국, 영국이 모여 국제연맹을 계승할 세계기구의 제안을 구상하기 시작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유엔(UN: United Nations)을 결성하는 데 합의했다.

3.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국제기구

주요 강대국, 유엔 가입 희망국,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석한 가운데 1945년 4월 12일에 소집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 기구들의 주요 기능을 논의했다. 주요 전승국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 그리고 집행부로서 사무총장 휘하의 사무국을 갖추기로 했다.

그런데 유엔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한 <유엔헌장>에 인권을 포함시킬 것이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강대국들이 여기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결국 약소국들과 NGO들의 노력으로 <유엔헌장>에 인권 항목을 삽입하게 되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시작이었다.

이후 1946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권리장전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의 아내였던 엘리너 루스벨트(Anna Eleanor Roosevelt, 1884~1962)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국의 철학자이자 외교관인 즈앙펑춘(張彭春, 1892-1957)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레바논의 실존철학자이자 위원회의 보고관이었던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 1906-1987)와 프랑스의 법학자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다. 그리하여 치열한 논의와 조정 작업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8개 국가는 기권했고, 반대한 국가는 없었다.

4 공유하기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상기하며 인권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풀기

1.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왕정을 거부하고 빼앗길 수 없는 여러 권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고, 훗날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끼친 이것은 무엇인가?

- ① 영국혁명 ② 7월 혁명 ③ 미국혁명 ④ 2월 혁명

정답: 3

해설: 18세기 후반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분개한 미국인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빼앗길 수 없는 여러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고, 이러한 요구는 1776년에 발표된 「미국독립선언문」에 반영이 되었다. 미국혁명은 프랑스에 전해져, 훗날 프랑스혁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프랑스에서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도 「미국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

2. 19세기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남부 주와 북부 주가 대립한 전쟁은 무엇인가?

- ① 1차 세계대전 ② 남북전쟁 ③ 미국독립전쟁 ④ 2차 세계대전

정답: 3

해설: 미국의 남부에 있는 주에서는 쌀과 면화를 재배하던 대농장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예제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깊어졌고,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링컨이 1860년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북부 주와 남부 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이 전쟁에서 북부 주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3. 1838년 영국의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통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무엇인가?

- ① 먼로선언 ② 차티스트운동 ③ 민족해방운동 ④ 짐 크로우 법

정답: 2

해설: 1838년 영국의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통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보통선거권,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출마자의 재산자격 제한 철폐, 의원의 세비 지급, 인구수가 균등한 선거구제 설정, 매년 의원선거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정리하기

1. 계몽주의 시대

1)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

① 영국혁명

- 17세기에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포괄
- 1649년 의회군의 승리로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왕실의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의회는 주권 회복 → 이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 주장이 처음 등장
- 영국 혁명 정신은 1689년에 공포된 「권리장전」으로 성문화됨

② 미국혁명

- 왕정거부, 빼앗길 수 없는 여러 권리(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보호 주장 →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에 반영

③ 프랑스 대혁명

- 미국 혁명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과 농민, 분노한 부르주아 등, 제3신분이 들고 일어나 국민의회 결성
- ‘모든 시민’이란 말로 보편적 권리를 주장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발표 → 석 달 만에 하인과 여자, 사흘 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권과 공직취임권 박탈

2) 계몽주의 시대의 성과와 한계

- 절대왕정에 맞서 봉건주의 체제를 흔들고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 개념 발전
- 여전히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여성, 노예들은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함

2. 산업혁명 시대

1) 노예제도 폐지

- 프랑스는 1794년 노예폐지령 채택했으나 8년 만에 나폴레옹이 식민지 노예제 부활
- 영국에서는 1807년 식민지에서 노예무역 폐지 → 1833년 노예제 폐지
- 미국에서는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부 주와 북부 주가 갈등을 하다 내전 발생.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던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어 1863년 노예해방 선언→ 1865년 미국 의회에서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통과

2) 선거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

① 선거권

프랑스

- 1848년 제2공화정의 자유주의 「신헌법」에 보통선거권이 포함됨
- 1848년 11월 4일 20세 이상의 남성시민만으로 시민적 권리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공포 → 1850년 5월 31일 국민의회에서 투표권에 재산자격 제한규정 다시 도입 결정

미국

-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을 요구했으나, 미국 내의 많은 이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 → 문자 해독 시험으로 인해 선거권은 더욱 제한됨
- 1870년에 남부에서 시작된 「짐 크로우 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흑백인종 분리정책 강행 → 흑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함

영국

- 차티스트 운동 : 1838년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통해 보통선거권, 무기명 비밀 투표 실시, 출마자의 재산자격 제한 철폐, 의원의 세비 지급, 인구수가 균등한 선거구제 설정, 매년 의원선거 시행 등을 요구

② 여성의 참정권 운동

- 19세기 말 유럽에서 여성참정권 운동조직이 늘어남
-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에게 선거권 인정된 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확산

③ 노동기본권의 보장

- 19세기 서유럽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운동이 일어남 → 1871년 영국에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음
- 노동시간 단축 :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줄어든 뒤,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차 세계대전 후 여러 국가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 확립됨

3. 20세기와 양차대전

1)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적자생존식 대외정책 성행, 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인권관을 재평가하는 계기
-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국제연맹과 그 부설 조직으로 ILO 결성 → 미국, 독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음
-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니치즘 세력을 키우기 시작 →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

2) 2차 세계대전과 유엔

- 전쟁 중에 민간인 피해 급증 : 무차별적인 공격과 유대인 대량 학살이 원인
-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 절감 → 유엔 결성에 합의하고 1945년 4월 12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 기구들의 주요 기능 논의
- 〈유엔헌장〉에 인권 항목 삽입
-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권리장전 초안 작성
-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제4강

인권의 역할



1. 인권, 삶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수단
2. 여성들의 권리 찾기
3. 인권의 진전
4. 공유하기

제4강 인권의 역할

학습목표

- 인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여성들의 권리 찾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권이 발전해 온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인권, 삶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수단
- 여성들의 권리찾기
- 인권의 진전

들어가기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제정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다.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성립하면서 1871년에 시민권을 일부 보장하는 제국 헌법을 제정 집행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권을 보장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 제정 이후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담긴 특색 있는 헌법으로 근대 헌법 최초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 보장을 이상으로 삼는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1.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피살 사건 때문이다.

정답: O

해설: 1914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지역의 사라예보에서 피살된 사건으로 인해 서로 얽혀 있던 이해관계(세력 확장)에 의해 국제적으로 편이 나뉘면서 시작되었다.

2. 노동조건과 생활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났다.

정답: X

해설: 국제노동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1일과 1주일에 노동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을 확립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 보장, 결사의 자유 등을 추진하며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발전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1 인권, 삶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수단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관념은 중세의 계급 질서를 깨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생겨났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헌법이란 그릇이 생기면서 인권의 사상과 이념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각 나라의 현재 실행되는 법의 시스템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권은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난 뒤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1941년 1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통해 자유란 세상 어디서든 인권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자유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기구 수립의 움직임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세계인권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인권은 각 국가 내의 헌법과 법률, 세계인권선언의 조약들로 스며들게 되었다.

가. 인권의 쓸모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관계없이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은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남에게 넘겨 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39쪽

인권의 쓸모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교과서는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거나,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은 무시나 모욕을 당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존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게 바로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인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짝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기본적인 필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기본적인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려는 것이다. 이때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가 된다.

- 중학교 3학년 『도덕』 89쪽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삶이 지향하는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된다. 단순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되기 때문에,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산다는 궁극적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나. “레미제라블”로 알아보는 인권의 역할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에 등장하는 코제트의 엄마 팡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팡틴은 비록 미혼모(비혼모)였지만,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린 코제트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사람(misérable)이 된다.

팡틴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다, 코제트의 양육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했다, 집에 있는 세간을 팔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이를 뽑아 팔고, 마침내 몸을 파는 성매매에 까지 나서게 된다. 그러다 한 ‘시민(투표권이 있는 자산계급)’의 장난질에 걸려 경찰관 자베르에게 체포되었다가 장발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된다. 장발장의 도움으로 치료도 받게 되지만 팡틴은 가난 때문에 얻은 질병을 건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딸 코제트도 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다.

만약 19세기 초의 프랑스 사회가 미혼모(비혼모)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그래서 팡틴이 단지 미혼모라는 이유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속에서 내쫓기지 않았다면, 미혼모라고 해도, 만약 그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가 함부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를 보호해 줄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만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린 딸 코제트를 악당 여인숙 업자 테나르디에가 아니라, 지금의 공공 어린이집 처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있었다면, 그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병이 들어 쇠약해진 몸을 맡길 수 있는 무료 공공 의료원이 있었다면, 그 때도 팡틴에게 인권이란 것이 있었다면, 팡틴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팡틴처럼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팡틴에게는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고용 안정),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권리, 참정권,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진료 받을 권리가 없었다. 팡틴에게 인권이 없었다는 건, 단지 불편하거나 남들에게 존중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제 생명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다.

2 여성들의 권리 찾기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팡틴은 19세기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비참한 사람들의 전형과도 같았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민주정치의 서막을 연 나라였다. 왕이나 황제처럼 혈통에 의해 국가지도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가지도자를 뽑는 민주적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왕정이 아닌, 공화정의 탄생이었다.

가. 제1공화정과 왕정복고

프랑스는 제1공화정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공화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성이었고, 예전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었다. 공화국은 여기에 일부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이다. 프랑스의 일반 시민 중에 참정권을 확보한 사람은 0.7%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자신의 대표를 투표로 뽑는 공화정은 제1공화국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나폴레옹의 제1제정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과 운명을 함께한다.

뒤이어 왕정복고 시대가 시작된다. ‘레미제라블’에서 팡틴의 불행은 왕정복고시기에 맞춰져 있다.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났지만, 샤를르 10세 대신 좀 더 영악한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왕이 되어 왕정 시대는 계속된다.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공화정이 수립될 때까지, 아니 그 다음 보나파르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제2제정을 거쳐 제3공화정이 수립될 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혁명과 반동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이런 정치적 격변과 함께 참정권도 조금씩이라도 확장되기 시작한다.

나. 당시 여성들의 노동 환경

팡틴의 경우처럼 권리를 억압당하던 여성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방직 공장이나 탄광, 제철 산업 등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노동과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까지 짊어져야 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1830년대 미국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산업화로 인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 여성들의 권리 요구 운동

미국과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노예제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40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반노예제 대회(World Anti-Slavery Convention)에 여성들이 참석하려고 했으나 공적인 대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남성들이 거부했고 이런 남성들의 행태는 여성 운동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자극받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1815~1902), 루크레시아 모트(Lucretia Mott, 1793~1880) 등 노예제에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운동가들이, 1848년에 미국 세니카폴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를 위한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여성이 선거권,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할 권리, 배심원으로 활동할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미국의 여성권리요구운동

1868년에는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자유주의 조직인 전국여성참정권협회(National Women's Suffrage Association, NWSA)와 보수적인 단체 미국여성참정권협회(American Women's Suffrage Association: AWSA)가 창립되었고, 이후 이 두 단체가 통합하여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

2. 영국의 여성권리요구운동

영국에서도 여성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1850년대에는 교육 개혁, 이혼할 권리, 결혼한 여성의 재산권 인정, 여성 고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1860년대 이후에 여성참정권을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부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이 철제 기둥에 자신의 몸을 묶거나, 경마장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격렬하게 활동했다.

3. '세계 여성의 날'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된 것도 이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에 있는 섬유 공장의 여성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서 1일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여성운동가대회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이자 독일 사민당의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 1857~1933)과 러시아의 여성정치가였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Mikhailovna Kollantai, 1872~1952)의 제안으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고,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하여 공식 지정(International Women's Day)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전후해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 인권 진전

가. 가치와 질서에 저항한 68혁명과 영향

1. 68혁명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1968년이였다. 1968년 봄, 파리 근교의 낭테르 대학교 학생들의 학내 문제로 시작된 시위는 곧 미국의 베트남 침략과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발전했고 이 투쟁은 68혁명(Mai 68)으로

이어졌다. 당시 동·서양 진영은 냉전을 핑계 삼아 국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었다. 이에 68혁명은 인간의 가치와 이상을 우습게 여기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와 사회 풍조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자신들을 억누르는 모든 권위와 권력, 체제, 조직에 반대했다.

이른바 '68혁명'은 독일 등 서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동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운동이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흑인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냉전구조와 매카시즘 같은 색깔론의 공세로 숨죽여 지내는 것 같아 보였던 민중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서 과감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광범위한 저항이었던 68혁명은 저항자들에게는 실패로 끝났으나, 가치와 질서에 저항한 사건으로 동·서양 양 진영에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기존의 정치문화에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68혁명은 평등, 여성해방, 인권, 반핵 평화 운동, 공동체주의, 생태 등의 진보적인 이념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으며, 인권 운동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2. 인권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인권이 늘 진전되어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미국의 두 번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2003년 이라크 침공, 2003 invasion of Iraq)할 때처럼, 인권이 전쟁의 명분으로 둔갑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여전히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같은 인권이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해 늘씬한 몸매를 갖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백세까지 사는 것을 인권이라고 여기는 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마실 물과 기초적인 식량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해 하루 일상을 모두 허비해야 하고, 끼니를 잇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시대 상황에 따라 인권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 시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쟁력, 규제완화, 효율, 편리, 시장이나 성장 따위의 말이 더 자주 쓰일 때도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3. 그래도 진전되는 인권

더 넓은 안목으로 긴 세월을 살펴보면 인권은 분명히 진전되어 왔다. 마치 창조주가 흑백을 분리한 것처럼 여기던 미국 백인들의 폭력적 흑백분리 정책은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 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 말콤 엑스(Malcolm X, 1925~1965), 로자 파크스(Rosa Lee Louise McCauley Parks, 1913~2005) 같은 흑인 운동가들에 의해 균열을 보이더니, 이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흑인 최초로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1961~)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프리카 선주민들을 국민은커녕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도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1918~2013)의 대통령 당선으로 과거의 일이 되었다.

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군인들만 대통령이 되던 나라였던 한국의 경우에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인 측면에서나마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되었다.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호헌(護憲) 조처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작·은폐,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다.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6월 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각계각층의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인권의 역할

당장은 인권이 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인권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는 조금씩이나마 인권이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인권을 설명할 때, 흔히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준 선물처럼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실제로 인권은 하늘의 선물 일수도 있지만, 그 인권을 누리는 것은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여성참정권의 경우에도 157년의 오랜 세월 동안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여성들의 끈질긴 그리고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권리가 주어지는 적은 없었다. 한결같이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의 계속된 요구, 그리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펼쳐 일어났던 민중의 투쟁을 시작으로, 1919년의 3.1혁명, 1948년의 4.3항쟁, 1960년의 4.19혁명, 1980년의 5.18혁명, 1987년의 6월 항쟁 등 숱한 항쟁과 그에 따른 희생이 있었다.

인권의 역할은 단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에 있다. 인권은 인권당사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각성하고, 마침내 투쟁하면서 진전된다. 그 인식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매우 인간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식은 더 많은 인권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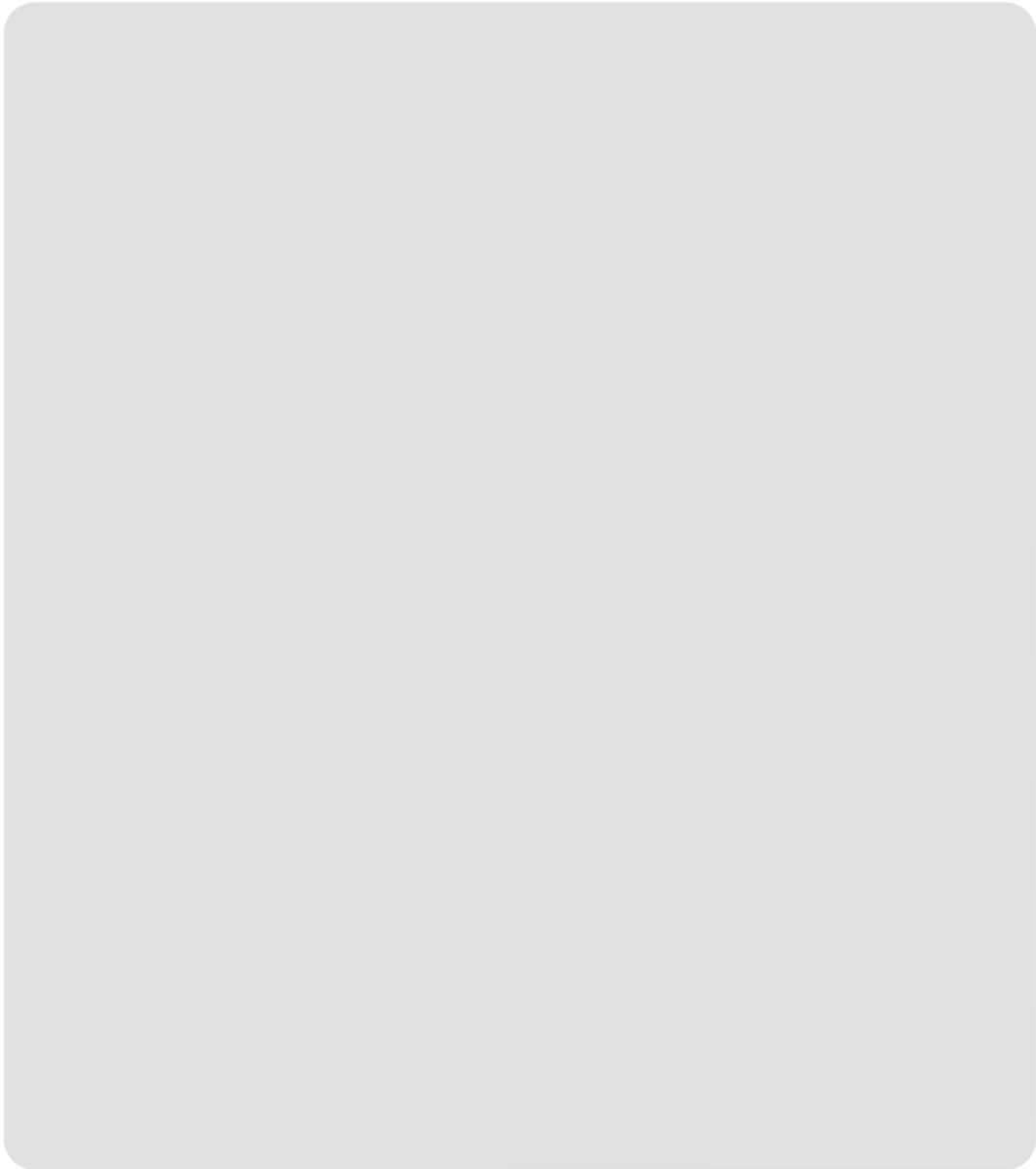
☞ 개념보충: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법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임금을 주게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임금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으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함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고, 프랑스가 1950년, 그리스는 1955년, 네덜란드는 1969년, (영국이 1999년), 한국은 1988년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4 공유하기

인권의 내용과 목록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자의 의견을 입력해 보자





문제풀기

1. 다음 문장의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 ① 조건 ② 수단 ③ 규범 ④ 성격

정답: 2

해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불에 타 숨진 동료들을 기리며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서 쫓겨난 데서 비롯된 세계 여성의 날은 언제인가

- ① 3월 6일 ② 3월 7일 ③ 3월 8일 ④ 3월 10일

정답: 3

해설: 세계 여성의 날은 1975년 UN에서 매년 3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3. 다음 중 68혁명 시기의 저항운동이 아닌 것은?

- ① 베트남전 반대운동 ② 흑인 민권운동 ③ 4·19 혁명 ④ 일본의 전학공투회의

정답: 3

해설: 4.19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일이다.



정리하기

1. 인권, 삶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수단

- 인권의 역할
 - 누구에게나 삶이 지향하는 중요한 핵심적 가치
 - 구체적으로 살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할 권리이기 때문에,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음

2. 여성들의 권리 찾기

- 여성참정권
 - 150년이 넘는 긴 시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치열한 투쟁을 필요로 했음

3. 인권의 진전

- 68혁명
 -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서 과감한 발언을 하는 계기가 됨
 - 혁명의 이념은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됨
- 2003년 이라크 침공
 - 인권이 전쟁의 명분으로 둔갑하는 일도 있기는 했지만 더 넓은 안목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분명히 조금씩 진전되어 왔음
- 인권의 진전
 -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피해자, 인권당사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

제5강

인권의 과제



1. 국가의 존재 이유
2. 제도의 확립
3. 인권의 과제
4. 공유하기

제5강 인권의 과제

학습목표

-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의 존재 이유
- 제도의 확립
- 인권의 과제

들어가기

1941년 1월 6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이때는 전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기 전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독일 등과 싸우던 연합국에 무기 및 전쟁 물자를 보내기 위해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루스벨트는 이 연설에서 ‘네 가지 자유’에 대해 말했다.

“제1의 자유는 언론 및 발표의 자유이다. 제2의 자유는 종교신앙의 자유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을 예배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제3의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약속을 뜻한다. 제4의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세계적인 균축이 철저히 추진되고, 어떠한 나라에도 인접국에 대하여 물리적 침략 행위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가 제시했던 국가의 목표가 21세기 현재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화면의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만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해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은 권리의 주체이며, 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이 아닌 국가인 것이다.

2. 인권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정답: O

해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인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도 하고, 과거에도 있었으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인권 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1 국가의 존재 이유

가. 세계인권선언의 성립과 의미

엄청난 학살과 파괴가 자행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 국가들은 본질적 의무를 되새길 필요를 절감했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된 이유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이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들이 모여 인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밝힌 것이었다.

인권에 대해 부담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는 인권 문제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들이 모여 만든 <세계인권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원칙일 수 있어도 인류가 가야할 방향을 온전히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가들이 모여서 단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만든 원칙이라는 점, 인권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에 서는 법이 없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었다.

나. 민주주의와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더불어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서로 분리된 현상으로 인식된 적도 있었다. 민주주의는 정부 조직, 즉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고, 인권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역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과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가진 권력분립, 공개성, 책임성 원칙 등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국민들은 모두 평등한 자격을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은 국가의 존립 근거이며, 국가의 정당성 판단의 근거이기도 한다. 국민들은 권리의 주체이며,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정책과 공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국가(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또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제도의 확립

가. 주거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기본적인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의식주(衣食住)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집은 인권 중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주거권과 관련이 있다.

1991년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다.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이다. 쉽게 말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원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세입자를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인이 갑자기 전월세금을 올려달라거나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의 주거생활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계속 그 집에서 살기 원한다면 임대료 미지불 등 특별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자동갱신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별, 종교, 인종, 소득 수준, 고용상태, 장애여부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성별이나 인종,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경제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빈곤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 들어 살 형편이 되지 않다. 그런 도시빈곤층이 모여드는 곳이 달동네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무허가 주택이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한다며 그곳에서마저 내몰리고 있어 도시빈곤층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국민들을 위해 국가는 주택 가격의 현실화 및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 등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집이 없는 홈리스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주거권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들이 주거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물과 전기, 햇빛, 수도, 도로, 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나 관공서, 은행과 같은 공공시설과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이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들은 공공시설의 사용이 힘들 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도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이 좋은 집에 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지하(반지하) 방에 삽니다. 유엔은 국가가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하는 것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섯째,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방, 부엌, 화장실과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넓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집도 살기 어렵다. 하지만 이와 같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12퍼센트에 해당하는 203만 가구, 500만 명에 달한다.(2011년 개정된 최저 주거 기준 적용시).

일곱째, 문화적 특성이 보호되며, 익숙한 문화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한 동네에 오랫동안 함께 살던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은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일수록 빈번한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 간의 익숙한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엔이 주거권과 관련해 제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다. 2009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 주거권과 관련해 바로잡아야 할 세 가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것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책,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것, 마지막으로 살고 있던 사람을 강제로 내쫓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씩씩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의 사회학자 존 렉스(Jone Rex)와 로버트 무어(Robert Moore)는 1967년 '주택 계급'이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주택을 둘러싼 영국 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였다. 이들은 주택의 소유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일곱 개의 계급을 제시했다. 주택 소유자(일반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자), 공공주택 임대인, 철거되기를 기다리는 주택에서 단기간 동안 사는 공공주택 임대인, 개인주택 임차인과 방을 세놓고 있는 주택소유자, 셋방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일곱 계급이다. 이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넉넉한 이들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교외 주택에 몰려 살고, 형편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복잡한 도심에 산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행 대출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설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더라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세를 놓다. 우리나라의 사정과 비슷하다.

다른 서유럽 나라들은 자기 집 비율이 40~60퍼센트 정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치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주택을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민의 3분의 1이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도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사는 가구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삽니다. 이들도 적정한 가격의 월세를 내고 생활을 하는데, 이 가격은 지역별로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지방 자치 단체가 합의해서 정한다. 공정 임대료 제도이다. 임대인은 월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 없고, 정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 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몇 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을 한다. 또 집을 빌려주는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며, 집주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동양에서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보겠다. 싱가포르는 전체 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싱가포르 국토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땅값을 내지 않고 건물 값만 내기 때문에 집값이 저렴하기 탓이다. 또한 건설회사가 아닌 정부 기관이 맡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집값이 저렴하다. 그리고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들에게 집값 대부분을 거의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다. 국민 모두에게 매달 월급의 3분의 1을 강제로 저축하게 해서 모아 놓은 국민 연기금이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빈곤층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으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보완하거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나 쪽방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만한 주택, 예를 들어 옥탑방이나 반 지하 같은 방을 만들지 않도록 애초부터 법제화하는 것도 주거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나. 노동권

노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발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는 19세기 영국 노동보호법에 이어 파리 코뮌, 20세기 소비에트 혁명 후의 소련 헌법,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면서 각종 노동 현장과 노동조약 등을 통해서 노동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ILO는 노동시간과 적정 생계의 보장을 위한 임금의 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 노인보험의 실시, 노동조합 등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 하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의와 노동인권 및 복지의 보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노조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노동통계자료를 모으고 노동과 관련된 국제경쟁, 실업, 불안전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등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노동법규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들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이러한 주장과 집회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 끝에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효시라 일컬어진다. 그 이유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노동자의 권리 등 생존권이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근대헌법들이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과는 반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도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1966년 12월 16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즉 사회권규약에서는 모든 권리항목 중 근로의 권리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노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가능한 한 완전한 고용의 상태를 실현하여 노동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의 종류를 선택·결정하고 그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자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노동의 권리는 다시 국가나 타인에 의하여 강제적인 노역에 종사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노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작용, 즉 입법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것으로든 노동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을 실시하지 않고 개개인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사용자나 사업주)에 대해 이를 예방하거나 교정하여 노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노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노동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규약 제7조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노동의 내용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시한 노동의 조건 첫 번째는 최저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의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 고용형태 등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노동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에 대해 자신과 가족들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장이나 작업장과 같은 환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환경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시간, 작업내용 및 노동의 강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노사의 합의에 의해 노동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 즉, 승진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휴식과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규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제대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흡한 제도적 문제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전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의 보전을 넘어서서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최저임금제의 제도상의 변화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고, 상대적 하한 수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에서는 그 증가폭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파트타임이나 대안적 고용형태가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로 연결되며, 정규노동자를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임금 수준,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사회보험과 법정 근로조건으로부터의 배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저임금, 빈곤의 문제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및 사회보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급여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업 역시 노동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빈곤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복지권

1948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과 직업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의료 및 교육에 대한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복지권에 포함시켰다. 또 사회권규약 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가진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이와 장애, 건강, 산업재해, 실업 등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회보장’은 의료·질병, 노령, 장애, 산업재해, 실업과 관련된 보장들이 포함되며 빈곤층, 노숙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말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약 300개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수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자활 지원 등 빈곤 계층에 제공되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초기에 빈민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국가의 복지사업이 되었다.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별 복지이다. 공공부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되는 금액이 적당한지, 저소득층 중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즉 사각지대는 없는지 여부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은퇴를 하는 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자영업자도 가입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보험과 비교해 주로 노동자가 아닌(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대상인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이다. 이것은 아동과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인데 급식과 보육처럼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처럼 사회수당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수당은 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재원이 조달되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나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복지논쟁은 사회서비스·수당에서 보편복지의 전면화를 둘러싸고 제기된 것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까지 전면 복지를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사이 공공부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취약계층의 복지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과 공공임대주택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법 개정이다. 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확충도 절실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의 개편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무상급식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 문제에서 보여지듯, 복지 논란은 계층 간의 갈등을 수반한다. 이를 위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대중들이 힘을 합쳐 복지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테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 수당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지 관련 의제를 설정하고 쟁점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권리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다른 사회적 권리들을 누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생활이 어려워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공약을 내건 정치인에게 표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권이란 먹고사는 문제에서의 '인간다운 삶'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 주체로써, 다른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면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의 과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보다 필요한 것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현재에는 매우 중요한 통신의 자유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것은 과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권리였을 것이다. 현재나 과거 모두 중요한 인권 문제였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인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다. 시대에 따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인권의 영역에서 제기되어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면, 그 이후에는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주목해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해도, 그것을 실현할 힘과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는 좋은 정책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기 어렵다. 중요한 문제는 좋은 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사회적 힘과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다. 인권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권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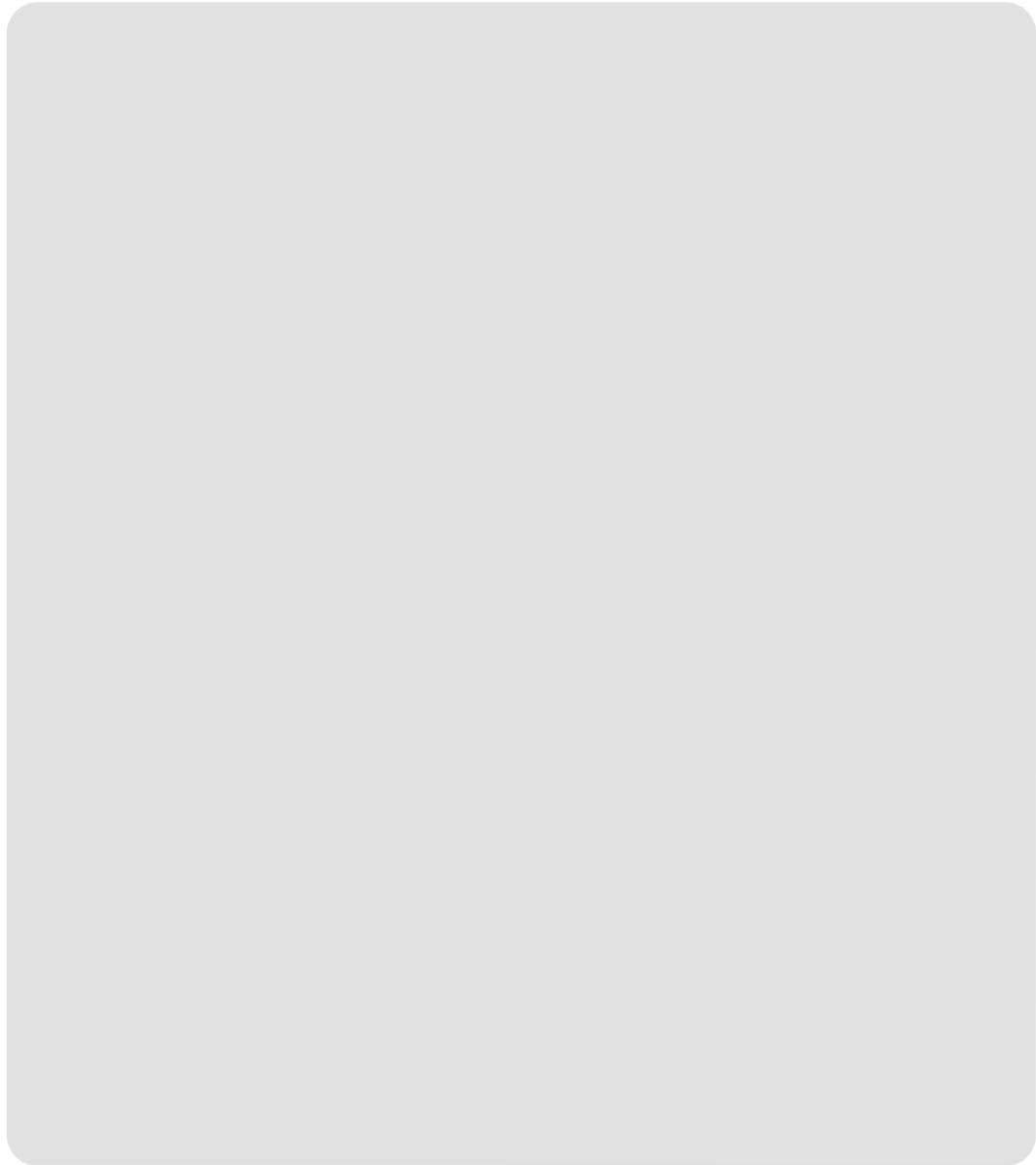
지금은 과거에 비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약자·소수자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구조는 국가만의 책임은 아니다. 인권은 주로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헌법이 정한 의무 말고도 시민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 의무에 대해서도 환기시키고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침해 금지 의무), 다른 사람을 도울 의무(구조 의무)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약자·소수자가 불평등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우선적 선택’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약자와 소수자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언젠가 그것이 모두의 상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4

공유하기

과거에는 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겨지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해 보세요.





문제풀기

1. 1991년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
- ② 모든 사람들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함
- ③ 모든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와 지역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 ④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을 임의로 사고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음

정답: 4

해설: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이다. 둘째,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넷째, 집이 없는 홈리스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물과 전기, 햇빛, 수도, 도로, 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일곱째, 문화적 특성이 보호되며, 익숙한 문화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 영국의 사회학자 존 렉스와로버트 무어가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으로, 주택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일곱 가지의 계급으로 구분한 이 개념은 무엇인가?

- ① 부동산 사회 ② 주택 계급 ③ 계급 사회 ④ 계급 투쟁

정답: 2

해설: 영국의 사회학자 존 렉스와로버트 무어는 1967년 주택의 소유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주택 계급'이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일반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자인 주택 소유자, 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자, 공공주택 임대인, 철거되기를 기다리는 주택에서 단기간 동안 사는 공공주택 임대인, 개인주택 임차인과방을 세놓고 있는 주택소유자, 셋방에서 사는 사람이렇게 일곱 계급이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자활 지원 등 빈곤 계층에 제공되는 것으로,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별 복지이다.
- ② 사회서비스와 수당은 이동과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인데 급식과 보육처럼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처럼 사회수당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 ③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수당은 소득이 낮은 하위계층이 사각지대이다.
- ④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정답: 3

해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수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이 낮은 하위계층이 사각지대이고, 사회서비스·수당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상위계층이 사각지대이다.



정리하기

1. 국가의 존재이유

-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인권은 국가의 존립 근거이며, 국가의 정당성 판단의 근거임

2. 제도의 확립

- 주거권
 - 1991년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원칙 발표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거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노동권
 - ILO는 노동시간과 적정 생계의 보장을 위한 임금의 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 노인보험의 실시, 노동조합 등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 하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의와 노동인권 및 복지의 보장을 가능하도록 함
 - 사회권규약에는 노동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노동조건에 대해 규정 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의 개선 및 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필요
- 복지권
 - 사회권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함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유형별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수당으로 나눌 수 있음

3. 인권의 과제

-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함
-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인권의 발전이 가능함

제6강

자유권



1. 국제권리장전
2.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3. 공유하기

제6강

자유권

학습목표

- 국제 권리 장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자유권 규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제 권리 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자유권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들어가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를 포위하며 분리장벽을 세웠다. 분리장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한 가혹한 점령 정책을 상징한다. 분리장벽은 2002년부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에 건설한 8미터의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다. 이스라엘은 분리장벽에 수많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 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경찰들을 배치했다. 이로 인해 요르단계곡이 폐쇄 되었으며 주택 파괴, 강제 퇴거 등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의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했다. :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세운 분리장벽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한국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이다.

정답: X

해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 한국은 유엔의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 가입되어 있다.

정답: O

해설: 한국은 1990년 4월 10일 자유권 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했고,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사회권 규약은 유보 없이 가입했고, 7월 10일부터 두 규약이 발효되었다.

1 국제권리장전

가.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의 개념

유엔은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바로 이튿날 1948년 12월 10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 나와 있듯이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지만 어떤 강제력도 가지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조약은 아니었다. 유엔은 권력을 부여받지 못했고, 권력 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선언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세계 헌법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다음 거의 20년 동안 인류는 제자리걸음만 했다. 냉전(冷戰)은 심화되었고, 대립과 분열은 더 심각해졌다. 인권은 기껏해야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때문에 국제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인권 규범이 요구되었고,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 또는 ‘국제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또는 ‘국제 자유권 규약’>을 채택하도록 했다. 두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어 발효에 필요한 35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7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얻었다.

나. 국제권리장전의 내용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교육·식생활·주거·보건 분야의 인권을 규정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를 가질 권리와 적절하고 편안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 자유,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평화적 집회, 가족, 사생활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의 품위를 훼손하는 처우 및 형벌, 차별, 자의적인 체포, 채무를 이유로 한 감금 등도 금지한다.

이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규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는 두 개의 선택 의정서가 붙어 있는데, 국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치적 배려이기도 하다. 이 두 규약으로 인해 <세계인권선언>은 훨씬 중요하고 실질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상징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그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¹⁾(Optional Protocol)를 한데 묶어 ‘국제 권리 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이는 국제 인권레짐 또는 인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

구분	자유권	사회권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
세대구분	1세대 권리(18-19세기) ²⁾	2세대 권리(19-20세기) ³⁾
내용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영장주의,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출판·집회·결사·양심·사상의 자유/ 대표를 선출할 권리, 대표가 될 권리/ 국적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일할 권리(일할 권리,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노동3권)/ 주거권/ 진료권/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 등
특징	자유주의 국가에서 강조/ 국가가 비용을 별로 쓰지 않아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조/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과 사회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예) 장애인 이동권, 북한인권 논쟁에서의 허구

2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서문, 1조, 3조, 그리고 5조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문에서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며, 개인들이 그러한 인권들을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이

1) 개인 청원을 수락하는 제1의정서(1976)와 사형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의정서가 있다.
2) 이런 세대 구분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한정된 것이다. 대체로 이 시기에 승인되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3) 19세기, 20세기의 사회주의 운동과 특히 1917년 러시아혁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영위하고,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은 모든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권(6조)을 선언하고, 고문, 비인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7조), 노예, 강제 노동의 금지(8조),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 금지(9조), 억류자의 인도적 처우(10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류 금지(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12조), 외국인의 추방을 방지하는 절차적인 보장(13조), 공정한 재판의 보장(14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소급적 적용을 금지(15조), 법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16조), 사생활에 대한 개입금지(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19조), 전쟁 선전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을 부추겨 차별, 적대심, 또는 폭력사태를 선동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20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21조)와 결사의 자유(22조), 가정·결혼의 보호(23조), 이동보호(24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25조), 법 앞의 평등(26조), 소수자의 보호(27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28조는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이행을 감시할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 생명권과 인간존엄성

독일이나 일본의 헌법에는 “누구든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은 생명권을 직접 선언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누구도 생명권을 부인하지 않는다. 생명권은 당연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단정하고 있다.

생명권의 핵심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생명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여, 전쟁이나 테러를 반대하고,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심지어 남의 자살을 돕거나 방치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히 전쟁이나 침략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나 폭압적 정치 권력에 의해 학살되거나 다친 사람들, 핵무기나 방사능의 피해나 위협 등이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간접적인 수단으로 자행되는 대량

학살도 포함된다.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지의 자원들이 수탈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환경 문제나 식량 문제 등으로 고통받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많은 궁핍한 이들이나 연약한 아동 등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현상도 알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과 무관하지 않다.

- 자유권 규약 제6조 제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된 형벌 제도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거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중단한 나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자유권 규약에 근거해 볼 때나, 인간의 생명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법의 도덕성에 기초해서 볼 때 인권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인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벌이며, 생명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흉악 범죄를 억제하고, 그 방법 말고는 타인의 생명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 신체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자유권 규약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신체를 잘 보전하고, 구속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압박에서 자유롭고, 신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우리는 ‘신체의 자유’라고 한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현실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근대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문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고문은 한국에서도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수없이 행해졌다. 지금도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국가들에서도 고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군대 내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그리고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하는 신체에 대한 구속의 문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자유권 규약 제19조 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심이나 사상은 인간 내부의 생각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사상과 양심을 밖으로 밝히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헌법 재판소는 인간의 양심을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자유권 규약 제22조 1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집회’와 ‘결사’란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며,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 수단이자 행동 양식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집단적 성격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지배 체제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이 집단의 양심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다수결 원리를 지향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집회와 결사의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은 형식상 신고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사전 허가제처럼 운용하고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 사생활의 보호, 프라이버시(privacy)

- 자유권 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을 때는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알리지 않을 자신에 관한 정보의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권리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권력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뿐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사생활 보호라는 개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생활의 권리는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Thomas M. Cooley, 1824~1898)가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let me alone)’라고 부르면서 연유하여, 1890년 사무엘 워렌(Samuel Warren) 변호사와 훗날 미 연방대법관이 된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공동 저술한 논문 『사생활의 권리 The Right to Privacy』가 발표되면서 체계화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사생활의 최소한 다섯 가지 차원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엿보이고 싶지 않은 바람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남들에게 노출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연관된 권리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알몸 상태의 수색이나 구금, 의료 관련 상황, 노출, 사적공간, CC-TV 촬영, 기타 형태의 감시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가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정보를 남들이 알면 곤란하거나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셋째, 의사소통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한다. 애초 인권 조약들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 조항은 ‘서신

왕래만 포함되었지만, 감청을 비롯한 전화 통화 감시, 전자우편에 대한 감시 등도 사생활 보호 조항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넷째, 우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보호받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은 가정 폭력, 성적 학대, 체벌, 환경적 위험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왔다. 다섯째, 통제받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성이나 자기 정체성·교제 등에 관해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자신의 인격을 온전히 발전하는 데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합의된 국제 인권 조약들로 인해 사생활 보호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바. 정치활동의 권리

- 자유권 규약 제25조 a호, b호, c호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국가 단위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활동의 권리에는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구성원이 될 권리, 선거를 통해 운영을 맡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무를 맡아 수행하는 권리 등이 있다.

첫째, 국가 구성원이 될 권리는 국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 규약 제24조 제3항에는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둘째, 사람들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 표출된다. 따라서 선거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협약의 규정만으로 특정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소수자의 견해도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시민은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해지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보장하는 선거에서 피선되거나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

사. 법 앞의 평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것을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권리 구제의 최종적 수단은 법원의 재판이다. 그러므로 구제받을 권리의 핵심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 판결 과정에 있어서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 구제와 같은 간편 절차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청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등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첫째, 권리구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최후의 재판 절차에 의존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독립된(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기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대등한 지위와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란 일반이 방청할 수 있고, 언론기관이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됨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과 공공질서,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재판 절차가 비공개된다 해도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재판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2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 형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추가로 요청된다. 그중 중요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공정한 태도에 관련되는데 특히 법원이 ‘편견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밖에도 무죄로 추정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절차적 권리가 인정된다. ①자기의 혐의에 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권리 ②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가질 권리 ③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④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를 인정하라고 자백하라는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 ⑤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⑥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⑦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 등이 그것이다.

☞ 개념보충: 미란다원칙(Miranda Rule)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s. Arizona 384 U.S. 436)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하는 까닭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3년 3월,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신문 끝에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고, 변호인 측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결국 1966년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미란다가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미란다가의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검찰 측이 미란다가의 자백 이외의 증거를 새롭게 찾아내 제시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미란다는 11년형을 선고받았다.

3 공유하기

어떤 신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한 유명 여성의 사진을 보도할 자유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신문의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사생활 권리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 보세요.



문제풀기

1. '국제 권리 장전'은 인권에 관한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 총회 결의를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다음 중 국제 권리 장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세계인권선언
-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③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④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정답: 3

해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때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 권리 장전은 1948년 유엔 창설 이후에 만들어진 조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다음 중 국제 자유권 규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일할 권리
- ② 생명권
- ③ 사생활의 보호
- ④ 프라이버시권

정답: 1

해설: 일할 권리는 국제 사회권 규약에 속하는 것이다.

3. 국제 자유권 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는 무엇인가?

- ① 사회권규약위원회
- ② 유엔 인권 이사회
- ③ 고문방지위원회
- ④ 자유권규약위원회

정답: 4

해설: 자유권 규약 제28조는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이행을 감시할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기

1. 국제 권리 장전

-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뒤 유엔은 법적인 구속력과 집행 수단을 갖춘 조약 형태의 국제 인권 규약을 만들기 시작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자유권 규약

- 국제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국제 자유권 규약 또는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1966년 채택 : 발효에 필요한 국가들이 비준함
 - 1976년 효력
- <세계인권선언>은 실질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고, 상징적 선언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됨
- <세계인권선언>과 이 두 가지 규약을 한데 묶어 ‘국제 권리 장전’이라고 일컫기도 함

- 국제 자유권 규약 또는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생명,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공정한 재판,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호, 정치에 참여할 권리, 소수자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보장
 - 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의 품위를 훼손하는 처우 및 형벌, 차별, 체포 등 금지

제7강

사회권



1. 사회권의 의미
2.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3. 공유하기

제7강 사회권

학습목표

- 사회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회권의 의미
-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들어가기

얼마 전 의류, 식품, 아울렛 매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E그룹이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하자, E그룹의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시작한 이번 파업은 아울렛 매장의 계산대 점거 농성과 고공 농성, 단식 농성,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직원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들은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내내 서서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8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당당히 요구 조건을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어요.”

E그룹의 파업은 500여 일 동안 이어졌고, 파업참여자들은 끈질긴 투쟁 끝에 대부분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집행부 18명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18명은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파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이나 ‘불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자의 파업 말고도 우리가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가 많이 있다. 그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사회권은 자유권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정답: X

해설: 사회권은 자유권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며, 두 가지 권리는 '인권'이란 하나의 개념 안에서 나눌 수 없는 원리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사회권은 평등을 기초로 한 권리이다.

정답: O

해설: 자유권이 국가의 통치와 간섭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면,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국가, 사회, 공동체에 대해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1 사회권의 의미

가.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인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국가의 통치와 간섭에 대하여 개인의 정치 참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곧, 자유권이라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곧,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에 대한 권리’ 또는 ‘~할 자유’로, 훨씬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민중들이 쟁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현실을 야기함으로써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보통선거권, 사회보장과 복지,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다.

나.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191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었으나, 1930년대의 대공황과 과시즘 광풍을 겪고 난 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과정에서 사회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유엔헌장에서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함을 선언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등에 관한 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사회권을 강조하고자 노력했고,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이러한 권리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규약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사회권과 자유권을 하나의 규약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규약으로 제정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이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권을 서열화

하거나 몇 개로 나누어 다룰 수 없다고 보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사법적 구제가 곤란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양자를 분리해서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1966년 제정되어 1976년에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즉 ‘사회권규약’이다. 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의 22조~27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가. 사회권 규약의 종류

사회권규약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제1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말로 시작하는 제1조는 자결권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정치적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규정한다. 모든 인민이 천연자원과 여러 가지 재화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생존수단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 조약의 가입국에게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부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는 국가의 이행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개별적 혹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 나라에서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회권규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기문·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3조는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제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조약의 규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총 10개조(6조~15조)에 걸쳐 구체적인 사회권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각

조항들의 의미와 요건, 제한과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부터 제25조로 구성된 제4부는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입국들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심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건의와 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다룬다. 제26~제31조로 구성된 제5부는 사회권규약의 비준절차와 발효, 개정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규약 중에서 제3부는 사회권의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항들은 크게 ①노동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②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③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④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⑤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⑥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⑦교육받을 권리 ⑧문화에 관한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노동권은 사회권의 개별적인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권리이다. 제6조에는 노동의 권리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노동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능력에 따른 보상, 여가 및 휴일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와 제7조에 대한 내용은 앞서 〈인권의 과제-노동권〉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제8조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권규약 제8조는 ILO조약 제83호 제2조와 함께 사용자의 권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했다. 또한 노조가 전국적인 연맹이나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권리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경우 노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오용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 조치를 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제9조는 간단한 문장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규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회보장이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한편 196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체결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는 사회보장 입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제9조에는 사회보장 혜택의 적용과 산업 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급여, 그리고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에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단위”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원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기던 가정의 성립과 운영을 공적인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 규약 가입국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와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에서 어린이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혈연으로 구성된 가정뿐만 아니라, 동성부부 가정, 비혈연 동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모든 가정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2항은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산모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산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자연적 권리이자 기본 권리인 임신과 출산에 대해 필요한 제반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모의 권리인 동시에 태아의 생존권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나아가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육아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의 제공, 그리고 출산을 전후로 유급휴가 또는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 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속에는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 되어 있다.

4.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사회권규약의 제10조 제3항은 아동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은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동은 출생을 포함한 다른 어떤 이유든 차별받지 않고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아동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연령제한을 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소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부모와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는 아동의 건강과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을 위한 배려가 포함되며 복지의 제공도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경제적·사회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노동으로 인한 노동착취, 임금착취 및 성적 착취나 학대, 유기 등이 해당된다. 또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 정상적인 발육,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함으로써 가입국에게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6조에도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의 무상 의무교육과 상급 교육과정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국제인권 규약으로는 1989년에 체결된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5.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의식주와 같은 생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의식주(衣食住)는 기본적인 생활 수단의 의미를 넘어, 한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사회권규약 제11조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신과 가족이 의식주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가스·난방 등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한다.

제2항은 모든 사람이 기아에서 벗어날 권리와 이를 위해 국가 단독 또는 필요하다면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 문제를 개선하고, 세계 식량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개선 방법으로는 ①기술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고 ②영양 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③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농지제도를 발전·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량수입국 및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세계의 식량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량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생활자원임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인류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2조에도 모든 사람이 기아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주거의 권리란 안전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수도 등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주거 비용, 접근성, 적절한 주거 공간(넓이) 및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주거 기간의 보장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주택의 강제철거나 강제퇴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권규약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도 위원회를 통해 강제 철거·강제퇴거에 대한 우려와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6.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건강은 생명과 신체의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건강권은 최소 수준의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건강권은 성적 자유와 출산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고문이나 생체실험 등 건강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시설, 재화,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아우른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을 낮추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마련 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③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④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의학적 배려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는 제10조에서 기본적 보건진료, 즉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필수적 보건진료와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 혜택의 확장,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 위험한 지반 및 가난으로 인해 취약한 집단의 건강상의 요구의 충족 등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다.

7. 교육받을 권리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수단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은 개인이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의미 있게 영위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의미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와 인종·종족·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의 권리는 교육과 교육시설을 동등하게 접근·향유하고,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설립과 학문의 자유, 비인도적 처우와 훈육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제2항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한 국가의 의무는 ①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는 아동을 교육기관에 취학시킬 의무를 지며, 국가는 학교제도를 정비해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추 의무를 진다. ②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고등교육 역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때의 ‘점진적’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③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초교육을 장려·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주인권 협약 추가의정서 제13조 제3항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과정을 설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국가는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아동을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학교’는 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합치하는 학교(사립학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자유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부모나 법정 후견인에게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학교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녀의 종교나 도덕교육을 책임질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을 국가에게 약속하도록 한다.

제4항은 어떤 조문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을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의 자유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사회권규약 제14조는 제13조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 중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가입국에 대해서, 합당한 시한 내에 무상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 문화에 관한 권리

문화는 인간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유 양식이다. 또한 인간은 문화를 통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한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구현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다. 사회권규약 제15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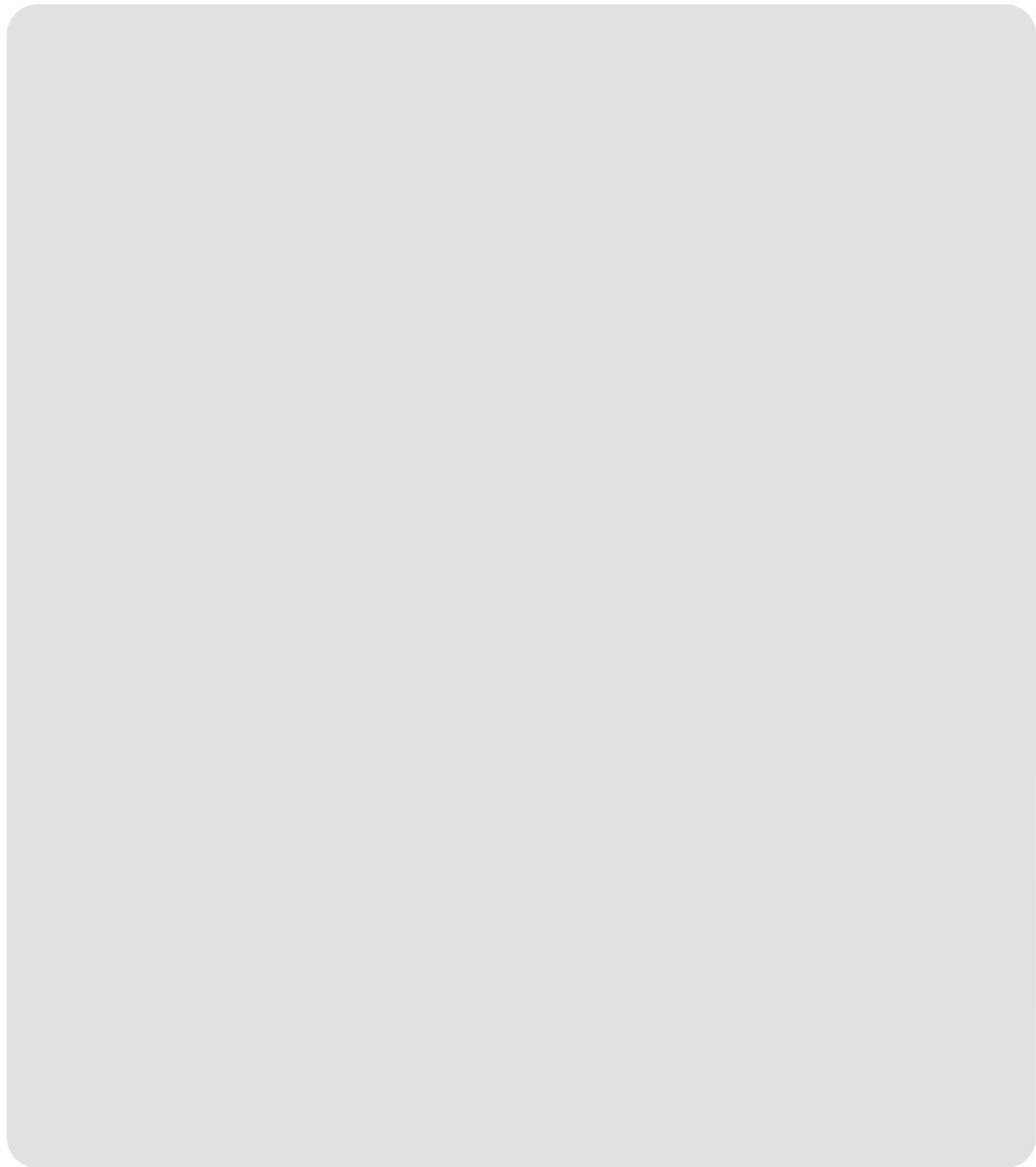
제1항은 누구에게나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거나 발전·보존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누구나 과학의 진보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 곧 지적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학과 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한 조치는 그것을 위한 외부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과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3**공유하기**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이 갈등을 빚었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봅시다.





문제풀기

1. 사회권규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제1부 제1조는 자결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자결권을 가짐을 선언한다.
- ② 제2부 제2조에서는 사회권규약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③ 제3부에서는 10개조에 걸쳐 구체적인 사회권들을 열거하면서 각 조항들의 의미와 요건, 제한과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사회권규약은 규약에 대한 가입국들의 이행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제16조부터 제25조로 규정된 제4부는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입국들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심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건의와 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다룬다.

2.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사회권규약 제9조에 되어 있는 권리는?

- ① 노동권과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 ②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 ③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 ④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정답: 2

해설: 제9조는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는 말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다음 중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통치와 간섭에 대항하기 위한 권리이다.
- ②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③ ‘~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 ④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민중들이 쟁취한 권리이다.

정답: 2

해설: ①, ③, ④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②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에 대한 권리’ 또는 ‘~할 자유’로, 훨씬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이다.



정리하기

1. 사회권의 의미

-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
- ‘~에 대한 권리’ 또는 ‘~할 자유’로, 훨씬 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
- 유엔 인권위원회가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사회권규약 제정

2.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 1부(1조) : 모든 시민은 자결권을 가지고 있음
- 2부(2~5조)
 - 조약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
 - 남녀평등 보장 의무
 - 국가에 대한 권리의 제한
 - 규약의 해석과 적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
- 3부(6~15조)
 - 노동과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문화에 관한 권리
- 4부(16~25조)
 - 가입국들의 주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그 보고서의 심사·평가 및 그에 대한 경제사회 이사회의 건의와 권고의 절차
- 5부(26~31조)
 - 사회권규약의 비준절차와 발효, 개정절차 등

제8강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1. 소수자의 인권
2.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4. 평등권
5. 공유하기

제8강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학습목표

-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차이를 존중할 수 있다.
-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아동)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다.
- 평등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소수자의 인권
-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 평등권

들어가기

헬렌 켈러라고 하면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여성'으로 기억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88살에 숨을 거두기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과 함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헬렌 켈러는 평생 동안 FBI의 감시를 받았고, 미국 정부는 그의 활동과 발언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그녀가 진보적인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만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여인'으로만 남아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한국에는 남녀고용평등법((男女雇傭平等法))이 있다.

정답: O

해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에 법 이름이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2. 한국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한 사람은 방정환이다.

정답: O

해설: 아동 문학가이자 아동 권리 운동에 앞장 선 소파 방정환선생은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1 소수자의 인권

영어로 'minority'인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한자로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만을 일컫는 것 같지만, 소수자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숫자는 적어도 거꾸로 다수를 압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숫자는 많지만, 지배 집단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을 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세상의 절반가량이지만, 남성이 힘을 가지고 사회를 주도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그 수와 관계 없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의 토착민들이 식민지 지배자들보다 숫자가 많더라도, 차별받고 억압당한다면 소수자인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차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백인과 흑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다. 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한다. 사회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한쪽이 우월하고 다른 쪽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된다.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이다. 일에 대한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이나 승진, 해고 부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 차별도 능력과 상관없이 고용이나 임금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나머지 차별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역사이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원주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가. 여성의 인권

1. 2기 여성참정권 요구운동의 등장

여성에게 참정권 같은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 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여성은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낡은 관념과 관습이 삶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2기 여성운동이 일어났다. 1기 여성운동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교육, 취업,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겪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1960년 무렵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인 여성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보다 여전히 적은 보수를 받았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강요 받았다. 여성의 역할을 고정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찾으려 한 운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2기 여성운동이 시작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 1920~2006)이라는 여성이 쓴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 1963년>가 있다. 미국의 명문 여대인 스미스 대학을 졸업하고 세 자녀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던 그는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가두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1957년 대학 동창생 20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신비>를 썼다. 이 책에서 베티 프리단은 미국 가정을 ‘편안할 뿐인 강제수용소’로 묘사했다. 여성의 정체성이 무시되고 가사 노동에 적합한 대상으로만 취급당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성 최대의 미덕은 그들의 여성스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과 자신의 삶을 남편과 아이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성들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고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여성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가 있다”고 쓰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66년에 전국여성동맹(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NOW), 1969년에 여성평등실천연맹(Women's Equity Action League, WEAL), 전국여성 정치위원회(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NWPC) 등의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공정한 임금, 균등한 고용 기회 보장, 보육 시설의 확충, 빈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보장, 남녀평등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했다.

2.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조약의 등장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도 만들어진다. 1979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를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성(母性)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의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 하도록 하는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1973년)이 제정되었다. 그 밖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됨)이나 성폭력 특별법, 가정 폭력 방지법 등 여성의 인권 신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3. 여성인권의 현재적 한계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문화적, 관습적 차별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혼인, 임신, 출산 등 여러 이유로 고용과 보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직무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 등으로 여성 노동자의 채용을 제약했다. 이로 인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 차별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을 위한 진학의 기회 등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관행과 인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또는 결혼을 하면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많아지고, 사회적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나 편견과 싸우고 있다.

사실 남녀의 역할 구분은 모두 사회적 인습에 의해 규정화된 편견이거나 고정 관념들이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시켜 사회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성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 직장 등의 사회 속에서 양성 평등의 객관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각종 국제 기준이나 협약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어린이·청소년(아동) 인권

1. 어린이 개념의 역사

근대 시민혁명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위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지만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청소년기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선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계속해 왔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이가 선천적으로 선한 성향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적 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책에서 믿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간섭하려 드는 버릇을 그만두고, 어린 시절을 순수하게 즐기고 경험하도록 격려해 주라고 촉구했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는 어린이도 고유한 세계를 가진 인격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00년을 전후로 스페인에서 활동한 자유교육주의자였던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학교에서 체벌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가 자유롭고 비판적인 정신과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어린이’의 등장

어린이의 등장에는 몇 가지 사회변동이 있었다. 첫째,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유아사망률의 감소는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경제생산단위였던 시대에는 어린이노동 역시 중요했으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어린이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변화되었다. 국가적 과제로서의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

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기존의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독자적인 인생의 단계로서 어린이·청소년기를 인식하고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1,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질병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 선언이 만들어진 것이다. 1923년, “어린이가 단순히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의 어린이·청소년 권리선언이 에글렌타인 켈(Jebb, 1876~1928)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선언은 1924년 11월 26일에 열린 국제연맹총회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채택되었고,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권리선언이 되었다.

한편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관심은 서구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다. 방정환 선생은 1923년에 〈아동의 권리공약 3장〉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으로서 예우를 하고, 둘째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지하며, 셋째로 어린이들이 가정이나 사회적 시설에서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3. 어린이 권리선언의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7대 원칙을 담은 〈1948년 어린이 권리선언〉, 10대 원칙의 〈1959년 어린이·청소년 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조금씩 인식의 전환을 맞게 되고 빈약했던 권리의 내용을 확대·보완하게 되었다. ‘보호’를 넘어서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고 초점이 ‘권리’에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 방임과 학대, 인종차별을 포함한 갖은 차별과 착취, 열악한 교육과 문맹 등 어린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이 있었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고통은 여전했다. 이에 유엔은 1979년을 ‘국제 어린이의 해’로 선포하고,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자는 제안을 통해,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했다.

UNCRC))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이 협약은 첫째,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이라는 점. 둘째, 어린이·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셋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장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0년 5월 25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와 <어린이·청소년의 매매·성매매 및 어린이·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선택 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충하도록 했다.

4. 아동권리의 한계

이처럼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린이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전쟁에 동원되어 죽거나 다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내전(1992~2002)에서는 7세 어린이가 소년병으로 전투에 참가한 사례가 조사되었을 정도로, 어린이를 전투에 동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성매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인구(5~17세)는 1억 6천800만 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8천500만 명은 직접적으로 건강과 안전, 성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에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가정 내의 폭력이나, 빈곤, 사회의 나쁜 환경 등에서 오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의 문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나올 것이 없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에 대해 성인은 물론 어린이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야말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가. 장애인 인권

1. 장애인의 인권의 배경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했던 먼 옛날에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악마에 홀린 사람으로 여겼고, 지체 장애인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학대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감염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감금당하기도 했다. 동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았다. 그들은 인간이 받아야 할 배려를 받지 못했다.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 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다. 히틀러는 3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고, 1940년과 1941년에만 7만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을 안락사 시켰다. 장애인들이 겪는 수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

2. 장애인인권선언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장애인일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75년 12월 9일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장애인인권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을 채택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 외에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정으로는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 (1971년)을 시작으로 하여, 농·맹인의 권리선언(1977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1981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1982년), 국제 연합 장애인의 해 10년(1983년~1992년), 장애인의 기회 평등화에 관한 기본 규칙(1993년)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1998년에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 선포되었다. 특히,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는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에는 장애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비로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언과 문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된다. 국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각 국가들에서도 장애인 인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미국은 1990년에 제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고용이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1999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을 2007년에 제정하기도 했다.

3. 장애인 인권의 한계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것도 아니다.

장애인들도 재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 활동, 각종 문화·여가 활동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이나 취업, 입시제도 등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뒷받침해 줄 여건 조성이나 기술 진보, 제도상의 문제들이 있다. 또, 주거 공간의 개선 문제와 같은 경우, 장애인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무엇보다도 일반인들과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에서 구체적인 권리 확보가 미약하다. 먼저, 장애인들도 의사 표현 및 정보 활용 수단으로서 통신이나 컴퓨터 이용은 물론, 수화 통역이나 자막, 점자 및 음성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공공시설 및 대중 이용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권의 보장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 차별 등은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만큼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장애인들에게는 차별과 편견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실 물리적, 제도적 장벽 같은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밑바탕에 자리 잡은 편견들은 보다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안내견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공연장, 숙박 시설 등에서 출입이 거부되고, 택시를 타려 할 때 승차가 거부되기도 하다. 또, 지역 내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도 아직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는 한국의 제1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인권에 기반 하지 않고 의료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 판정 시스템 △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장애 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탈 시설화 정책을 마련할 것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강제 노동을 포함한 착취, 폭력, 학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의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흔히 장애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장애인의 90퍼센트 이상은 교통사고, 산재, 각종 질환, 환경오염

등에 따른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쟁을 겪는 나라들에서도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장애인이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개념보충: 통합교육

과거에 장애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장애인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 학생 부모와 장애인 운동가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장애 학생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교육은 장애 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 학생을 격리시키면,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만날 기회도 드물어져서 결국 장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지면서 통합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는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 이를 통한 서로 다른 타자에 대한 인정과 용납 그리고, 관용의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즉 통합교육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다양한 인간을 발견하게 하며, 서로의 관계를 대립이 아니라 상호교류 하게 하여, 서로에게 의미와 영향을 주며 발달하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나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있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탓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 학생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이다.

나. 노인인권

1.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다른 소수자 인권과는 달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이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에서는 이미 <노인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s)>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안전·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유엔의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1982년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 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이며, 건강과 영양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 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 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계 노인의 날 지정과 미국의 노인현장

1990년에는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했으며, 1991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했다. 여기에서는 자립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원칙은 노인의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해 각종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에서는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를 위해 117개의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 측면의 노인 인권 보장에 기여한 국제적인 활동으로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며, 1967년에는 <장애·노령·유족연금에 관한 128호 협약>으로 노령연금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인권 보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과 정책 대안을 통해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했으며, 1998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7대 원칙>을 제시했다.

노인을 위한 국제인권규약은 채택되지 않고 있지만,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원칙과 계획, 법률 그리고 노인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 내용을 추론할 수는 있다. 1969년 백악관 노인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의 노인현장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①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②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노후 생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권리 ④ 여가·교육 및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⑤ 노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⑥ 가족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신적·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⑦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독립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⑧ 생존이나 사망 시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⑨ 노후를 풍부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高齡化 社會)로 들어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유엔의 기준에 따른 분류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14퍼센트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퍼센트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2.2퍼센트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4퍼센트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15~65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14년 기준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실정이다.

3. 노인인권의 전망과 과제

고령인구의 증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문제는 그 속도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80년에서 150년씩 걸린 서구의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빨랐다는 일본의 기록 36년

보다도 10년이나 빠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이다. 이는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 문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대부분 소득의 감소나 중단,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경제적 빈곤이나 어려움에서 비롯되며, 다음으로는 치매를 비롯한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역할 상실과 여가 선용의 기회 부족, 핵가족화 및 자식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에서 오는 고립감과 소외감, 사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고정 관념 등 여러 가치를 들 수 있다. 동시에 그 양상과 정도는 다양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05~2013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80살 이상의 자살률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100명을 넘다가 지난해 와서야 94.7명으로 떨어졌고, 70대의 자살률도 8년 동안 70~84명을 유지했고 2013년에는 66.9명이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자살 원인 중 70퍼센트 정도가 심한 우울증(신체적 노화로 인한 우울증, 자녀의 독립 및 직장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무력감 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노인성 우울증은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는 노부부끼리만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거 노인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고, 이들은 대부분 전업 주부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제도 등의 노후 보장이 결여된 계층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빈곤에 처한 노인들, 특히 여성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식사나 목욕, 투약 등 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심지어는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착취하며 노부모를 유기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노인 학대의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간혹 제3자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양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노인 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다름없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둘째,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의 구축, 셋째로, 안정된 주거권의 보장, 넷째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권, 이동권 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교육과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이주민의 인권

1. 이주민 인권의 배경

이주민들도 중요한 소수집단이다. 자유를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온 일이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95년 사이에도 모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이 때문에 서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에서 인구대비 이주민의 비율은 평균 10퍼센트에 이르렀다. 필요한 노동력을 이주민들로 충당한 것이다. 1955년부터 1988년까지는 서독으로 2,450만 명이 이주하고, 프랑스로 2,190만 명, 영국을 비롯한 베네룩스 3국으로 2,500만 명이 이주했을 정도이다. 그래서 유럽은 백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사회가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매년 100만 내지 150만 명이 이주했다. 이들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이주민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큰 규모로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 인구가 흑인보다 더 많아졌다.

2. 세계화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와 이주민 인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미등록 상태로 머물기도 한다. 처음 입국할 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입국한 다음에 노동관련 비자를 받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에게는 강제 추방 같은 조처를 취하는 반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멕시코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미등록이민자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등록 이민을 단속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1,100만 명 정도(2012년 기준)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만약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그 옹호자들은 “불법인 인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체류자도 인간인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해 자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가혹한 처우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일단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민의 자녀들에게는 교육, 의료 등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들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유엔에서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0년에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⁴⁾이 채택되었고, 2000년에는 12월 18일을 ‘국제 이주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로 정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산업 연수생 제도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또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시화 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2004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雇傭許可制)가 시행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보호의 길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비인간적인 대우, 국적 및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편견과 어려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당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한편 난민 문제도 있다. 여기서 ‘난민(refugee, 難民)’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난민고등판문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설립되었고, 1951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체결되었다. 한국

4) 한국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에서도 1993년에 이 협약이 발효되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낮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으로 1994년 이후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7,233명으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많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상당수이다. 그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389명(5.4%)뿐이다. 대부분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대륙을 넘어 온 사람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짜늘한 시선을 견디며 살고 있다.

4

평등권

가. 외모차별과 루키즘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평등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장애 등의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평등의 결과 속, 곧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인권의 실현도 가능해 진다.

루키즘(lookism)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고 취직이나 결혼, 대인 관계 등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는 루키즘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름다운 외모는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는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외모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외모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특징 가운데 일부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와 같은 외모 경쟁력은 꼭 갖추어야 하는 스펙이 되어버렸다. 학교 때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외모 때문에 여러 번 면접에서 탈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모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결혼에서도 적용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결혼도 취직도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인기를

언고 대접받는 사회에서 대중 매체가 부추기는 외모의 잣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심의 뒷전에 밀려나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지닌 선천적인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학력차별

외모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느끼는 차별은 바로 ‘학력’이다. 공무원의 임용 시험이나 기업의 각종 채용 기준에서 학력을 암시하는 규정들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기업들이 있고, 일부 공무원 시험에도 학력 규정이 남아 있다. 공직 사회나 기업의 요직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또, 저학력 계층에 많이 분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학력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불평등 구조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학력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사교육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 격차는 자녀에 대한 불평등한 교육 조건을 낳게 되며, 이는 다시 자식의 학력 격차로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적 대우로도 연결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시 차별을 낳게 한다. 예를 들면, 일반의 인식에 학벌과 학연이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 주고, 서로 배타적 학벌주의를 형성하게 되어 사회 내에서 또 다른 갈등 구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견,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이나 승진, 임금 등에서 눈에 보이는 학력이나 외모 등에 의한 차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학력이나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편견 및 차별 의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공유하기**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외에 어떤 소수자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봅시다.



문제풀기

1.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은?

- ① 강자 ② 소수자 ③ 다수자 ④ 노약자

정답: 2

해설: ‘소수’는 단순히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소수자란 다수가 갖는 지배적인 위치가 아닌 소수가 갖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2.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 ① 분리교육 ② 통합교육 ③ 특수교육 ④ 융합교육

정답: 2

해설: 통합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 이를 통한 이질적인 타인에 대한 인정과 용납의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3.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 ① 강박관념 ② 콤플렉스 ③ 루키즘 ④ 노비즘

정답: 3

해설: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은 루키즘이다. 참고로 노비즘(nobysism)은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을 말한다.



정리하기

1. 소수자의 인권

- 소수자(minority) :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
- '다수에 의한 지배'가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2.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 여성
 - 참정권 운동에서 시작 된 여성에 대한 차별 극복은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 조약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계속되고 있음
- 어린이
 - 어린이 또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일부 선각자들의 노력과 국제조약을 통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조약과 원칙들을 통해 보호되고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아님
- 과거에는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가혹한 대우를 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있었음
-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

제9강

유엔인권선언



1.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2.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3.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4. 공유하기

제9강 유엔인권선언

학습목표

- 국제기구의 탄생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들어가기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에서 ‘독일 학교의무교육법 위반 행위는 미국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며 독일에서 이주한 로마이케 씨의 망명신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바덴뷔텐베르크 주에 살던 로마이케 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직접 교육을 해왔다. 그러다 2008년에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학교교육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미국으로 가족 망명을 신청했다.

독일은 1938년 독재자 히틀러에 의해 국민개병제와 국민 의무교육 제도가 완성됐다. 히틀러 체제 하에서 교육의 목적은 “인종적 정서와 인종적 감정을 청소년의 본능과 지능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능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육권을 명시한 제 26조에서는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로 전체주의적인 국가교육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 것도 나치체제가 국가 통제로 오염된 학교에 모든 아동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강탈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1. <세계인권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답: X

해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끔찍한 학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2. <세계인권선언>은 초안이 완성된 직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정답: X

해설: <세계인권선언>은 초안이 나온 뒤 약 2년간 81번의 회의를 거쳐 수정한 뒤 거의 만장일치로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치열한 논의와 1,233번의 투표를 거쳐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연맹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강대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재편되었다.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인 황태자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계기로 7월 28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4년간의 전쟁은 전세계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물자는 통제되었으며, 군수품 생산을 위해 여성들까지 동원되었다. 식민지 국가들은 전쟁 물자와 군인을 조달하느라 강대국들의 수탈에 시달렸다.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를 남긴 전쟁이 끝난 후, 미국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의 제창으로 국제연맹이 탄생했다. 윌슨 대통령은 1918년 의회 연설에서 “정의와 형평이 지배하는 세계를 창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사상은 ‘14개조 평화원칙’으로 확장되었다. 이 ‘14개조 평화원칙’은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 조약을 통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가 설립됐다.

920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국제연맹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맞서 회원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경제·사회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세계최초의 국제평화기구였다.

국제연맹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총 42개국 이 최초 가입하여 소규모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초기에는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는 그 역할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이탈리아와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국제연맹의 설립을 제안했던 미국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국제기구에 넘기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운 상원의 반대 때문에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창립 초기부터 국제 분쟁을 바라보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시각차도 국제연맹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로써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결국 전쟁으로 인해 국제연맹의 행동은 동결되었다. 국제적인 노동입법도 중단되었고, ILO 준칙의 비준도 늦춰지고 말았다.

나. 제2차 세계대전과 국제연합

1. 미국의 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미국은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전쟁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무기와 군수품을 팔면서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기도 했다. 그러던 1929년 10월, 미국에서 대공황(1929~1939)이 발생했다.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추락했고,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산 사람들과 은행들은 파산했다. 금융권이 휘청거리자,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대공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에 여파를 미쳤다.

2.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한편,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 틈을 이용해 나치즘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강한 독일, 베르사유 체제 타파, 반유대주의를 외치며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1934년에 스스로 총통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다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끔찍했다. 특히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에 대한 대량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종 말살이었다. 반인륜적인 생체실험과 학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정도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 기간 내내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6일과 9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이후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 전사자와 민간인 사망자는 수천만 명에 달했다.

3. 국제연합의 등장

끔찍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철저한 반성의 의미로 만든 것이 바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잔학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반성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연합국들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보다 범세계적이고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은 1941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네 가지 기본적 인간 자유 즉,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근거한 세계가 건립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1942년 1월 1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대표들이 연합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 연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1944년 중국, 소련, 미국, 영국은 덤바턴오크스에 모여 국제연맹을 계승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제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평화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유엔의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창설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5년 알타에서 소집된 회의에는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 루스벨트,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이 모여 안보이사회의 투표시스템과 소련 내 공화국들의 회원자격 규정을 논의했다. 그리고 1945년 4월 12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대국들과 유엔 가입 희망국, 비정부기구들이 참석하여 유엔기구들의 주요 기능들을 논의했다.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전승국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General Assembly)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달리 다수결 투표제로 운영되며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다루도록 했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은 총회의 관할 아래 운영되며 수많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Secretariat)은 관리와 공직자로 이루어져 있고, 유엔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 행정과 통역, 인사, 관리 등 여러 사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엔 결성을 위한 제안이 나왔을 때, 중소국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리기 두 달 전, 멕시코에 모여 신생 국제기구에서 강대국의 주도적인 영향력에 맞설 방안을 논의한 토론안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제출했다.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등도 가세했고, 칠레, 쿠바 등 여러 나라들이 유엔이 더욱 강력한 인권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결과 총회의 권위를 높이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약화시키며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많은 NGO 단체들이 이들의 편에 서서 강대국들을 압박했다. 이에 강대국들은 헌장과 그 전문을 수정하고 인

권보호를 유엔활동의 핵심에 두도록 했다. NGO 활동가들은 1945년 5월 미국 국무장관 스테티니어스(Edward Stettinius, 1990~1949)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미국 대표단이 인권을 유엔의 핵심적 목표로 두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할 것과 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사흘 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이 문제에 양보를 하기로 하고 인권에 관한 NGO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엔헌장〉에 “우리 유엔의 인민들은 우리 생애에 두 번씩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한다는 첫 구절이 포함되는 한편 그 뒤에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4일, 46개국의 비준으로 유엔이 창설되면서 인권 항목이 삽입된 〈유엔헌장〉을 승인하게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주요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전범재판소와 도쿄전범재판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평화에 반한 죄(crime against peace), 전쟁범죄(war crimes), 범죄와 관련하여 자행된 인간성(인륜)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의 죄목으로 전범들을 재판했다. 그 결과 뉘른베르크전범재판소는 12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5명의 피고인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도쿄전범재판소는 7명에게 사형을, 16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의 목적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함이었다거나 승리자의 정의를 구현했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국 쪽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전범재판소의 관할권 너머에 있고, 평화에 반한 죄나 인간성에 반한 죄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 즉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제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인간성에 반한 죄를 처벌하게 됨으로써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고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유엔은〈유엔헌장〉에서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엔헌장>이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강조하긴 했어도,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유엔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인권을 위한 국제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인권문제를 다룰 최종적인 주체가 주권국가라는 핵심사항을 재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는 국가 관할권을 초월한 정의를 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권리장전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인 엘리너 루스벨트(Anna Eleanor Roosevelt, 1884~1962)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온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다. 중국의 철학자이자 외교관인 즈앙펑춘(張彭春, 1892-1957)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레비논의 실존철학자이자 위원회의 보고관이었던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 1906-1987)와 프랑스의 법학자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은 캐나다의 법학자 존 험프리(John Peters Humphrey, 1905-1995)가 여러 국가의 헌법을 비교연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작성했다. 전 세계 인권 관련 문헌들과 세계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관련 조항들을 수집하여 48가지의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험프리 초안’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법학자 르네 카생이 험프리 초안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다듬은 것이 ‘카생 초안’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초안을 놓고 약 2년간 81번의 회의를 거쳐 수정한 뒤 거의 만장일치로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치열한 논의와 1,233번의 투표를 거쳐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58개 회원국 중 5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48개국이 찬성, 소련을 비롯한 8개 국가는 기권했고, 반대한 국가는 없었다.

불참한 나라는 온두라스와 예멘이며, 기권한 나라들은 벨로루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소련, 유고슬라비아였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의 범주들이 주로 개인주의적이며, 선언문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유엔헌장>이 보장한 국내 관할권에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우려를 했다.

나.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권 개념의 기본을 설명하며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또한 인류가 인권을 수호하고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세계인권선언〉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중략)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세계인권선언〉 中-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했다.

제2조는 차별 금지에 대해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세계인권선언〉 제3조~21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발전되어 온 자유권과 참정권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체보전권(personal integrity rights)’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다루고 있다. 제3조에서는 전통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노예제도와 노예상태, 노예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적 권리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이전과 거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비호를 구하고 받을 권리는 최근 가장 중요하고도 논란이 많은 인권관련 주제 중 하나이다.

제15조는 국적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또는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됩니다. 이 조항은 혼인에 대한 자유주의 관점을 따른 것이며, 나치의 인종주의 결혼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16조 3항에서는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드물게 ‘집단권’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제17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서 단독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공적이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이다.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와 충돌할 수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에는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나 경멸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나의 문제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제20조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됨을 명시하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2조~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들은 19세기 후반 이후로 발전해 온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23조는 노동에 관련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지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해주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24조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25조 2항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에 대해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는 말로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등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인권을 위한 사회치제 및 국제체제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이 구현되고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제29조는 의무와 제한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지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30조는 <세계인권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을 경계하고 있다.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다.

3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비판과 한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이 어설픈 철학으로 만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또한 선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에 따를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법적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세계인권선언>이 어느 정도 서구에 편향되었다는 점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명시적 우려 표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그 한계가 어떠한 간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1948년 이후로 헌법을 제정한 많은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자국의 헌법에 인용함으로써 선언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킬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운동과 부정과 착취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이 문서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이러한 운동의 활동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단 한 나라의 반대도 없이 합의한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이라는 사실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국민들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의 세계화와 제도화를 이루어낸 역사적인 문서인 것이다.

4 공유하기

흔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인권침해자’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 하나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아무도’ 등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인권을 누릴 권리를 부여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인권의 침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풀기

1.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기초가 된 것은?

- ① 국제연맹조약
- ② 14개조 평화원칙
- ③ 유럽인권규약
- ④ 국제연합헌장

정답: 2

해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918년 의회 연설에서 '정의와 형평이 지배하는 세계를 창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사상은 '14개조 평화원칙'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14개조 평화원칙'은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 조약을 통해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됐다.

2.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가 반성과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 24일에 설립한 것은?

- ① 유럽연맹
- ② 국제연맹
- ③ 유네스코위원회
- ④ 국제연합

정답: 4

해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잔학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반성함과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범세계적이고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그 결과 1945년 10월 24일 46개국의 참여로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3.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자유권과 참정권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 ③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④ 제30조는 인권이 구현되고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4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 28조는 인권이 구현되고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9조는 의무와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세계인권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을 경계하고 있다.



문제풀기

1. 양차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창으로 세계최초의 국제평화기구인 국제연맹과 ILO탄생
- 제2차 대전 후 나치가 저지른 잔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반성함과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느낌
 -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탄생
 - 〈유엔헌장〉에 인권에 관한 항목 삽입

2.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1946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 엘리너 루스벨트를 위원장으로 한 유엔 인권위원회 구성 : 인권에 관한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하도록 함
 -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 〈세계인권선언〉 제3조~21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 〈세계인권선언〉 제22조~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3.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 많은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자국의 헌법에 인용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침
- 국민들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의 세계화와 제도화를 이루어낸 역사적인 문서임

제10강

유엔인권레짐

1.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2.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3. 고문방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
4.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5. 공유하기

제10강

유엔인권레짐

학습목표

- 〈유엔의 8대 인권조약〉을 설명할 수 있다.
- 유엔 전문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 고문방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들어가기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는 보통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너무 잘 알려져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된 인물들이 많이 있다. 몽고메리 시에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벌어졌을 때 마틴 루서 킹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였다. 그런데 로자 파크스가 용기 있게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한 항의 운동의 물꼬를 트자, 그가 지도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자 파크스야말로 잊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로자 파크스는 1955년 12월 1일 저녁에 몽고메리 시에서 버스를 탔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유색인종 전용 좌석이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많이 타서 전용 좌석이 넘치자, 버스 운전기사는 그녀가 앉아 있던 유색인종 전용 좌석의 표시를 백인 전용 좌석으로 바꾸고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다. 이를 거절한 로자 파크스는 흑백 분리법을 위반한 죄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날 저녁 이후부터 몽고메리 시에서는 흑백 분리 정책에 항의하는 유인물이 만들어지고, 승차 거부 운동이 벌어졌다. 흑인 교회들도 동참했고 그 과정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지도자로 부각된 것이다.

로자 파크스는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잃고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 때문에 흑백 분리 정책이 역사의 심판에 오르게 되었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유엔의 공용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어, 스페인어이다.

정답: X

해설: 유엔 헌장에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유엔 공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뒤 아랍어가 총회, 안보리 및 경제사회이사회의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2. 아시아 출신으로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정답: X

해설: 유엔 최초의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은 버마 출신의 제3대 우 탄트(U Thant, 재임기간 1961.11.30.~1971.12.31.) 사무총장이다.

1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유엔 창설은 인권 보호에 유례없는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유엔의 후원 아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국제법 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인권선언> 외에도 유엔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만들어냈다.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 1966년)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규약, 1966년 채택) ③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1984년) 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1989년) ⑦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년) ⑧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2006년)이 있다. 앞에서 나열한 8개의 조약들은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으로서 <유엔 8대 인권조약>으로 불리고 있다.

법적 권리만으로 인권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미흡하지만 인권을 보장하려면 법적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다. 도덕적 권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법적 권리라는 형태로 성문화되지 않으면 현실적 힘이 없다. 따라서 인권이 법적 권리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우선적이며, 더 중요하지만,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라는 형식을 갖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법은 내재적으로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
-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한국 발효일 1990. 7. 10
- 가입국 168개국(2014. 10. 기준)
- 6부 53조로 구성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될 시기에, 두 개의 주요 인권조약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 또는 ‘국제 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또는 ‘국제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두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이 두 규약은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불린다.

두 규약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몇몇 조항들의 경우 동일한 혹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규약의 전문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인권의 이상이 성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모든 인권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있다. 두 규약은 자결권과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고, 차별금지조항,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협약상 권리의 향유와 그러한 향유의 제한에 관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을 발전시킨 실제적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권 규약〉은 생명권(제6조)을 선언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으며, 노예 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되고, 노예상태에 있거나 강제노동을 강요받지 않으며(제8조),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제10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제12조)를 보장하는 반면에 합법적으로 회원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추방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제13조)고 규정하며, 모든 사람이 법원과 특별 법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절차상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제14조), 형법의 소급적 적용 금지(제15조),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하고(제16조),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 그리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훼손을 금지하고 있다(제17조).

또한 이 규약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전쟁 선전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을 부추겨 차별, 적대심, 또는 폭력사태를 선동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제20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가정·결혼의 보호(제23조), 아동의 권리 보호(제24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제25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소수자의 보호(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규약의 국내적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자유권 규약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 간 진정절차를 처리하고, 국가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개인청원 내용을 처리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권고를 표명한다. 또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는 국가들이 부가적인 의무들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는 개인 청원을 수락하는 제1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가 있다. 한국은 제2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1. 3 / 한국 발효일 1990. 7. 10
- 가입국 162개국(2014. 10. 기준)
- 5부 26조로 구성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권의 보장과 관련해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두 개의 조항(제13조와 제14조)을 마련했다. 이들 조항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의 보장과 무상 중등·고등교육 확대를 위한 조치의 고안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adequate standard of living)’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건강권을 하나의 단독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권 규약> 제12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환경위생과 전염병, 직업병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조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의 권리를 규정한 제6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7조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권리(제9조),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 임산부, 아동 및 연소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조(제10조),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제11조),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제15조)를 보장하고 있다.

● 사회권 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로는 〈사회권 규약〉의 ‘점진적 실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점진적 실현의 원칙은 가용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당사국들이 맞게 될 제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향한 구체적, 목표지향적 조치를 취할 즉각적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85년의 결의(1985/17)에 근거해 〈사회권 규약〉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및 유엔 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토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2008년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채택으로 국가 간 고발제도와 개인청원을 가능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라 사실심사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국은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2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한국 발효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 가입국 177개국(2014. 10. 기준)
- 3부 25조로 구성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라는 단순한 편견에 토대를 둔 인종주의(Racism)가 등장했고, 이는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편협한 태도를 형성했다.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인종주의는 전통적인 타인종 배척주의로서, 이는 특히 강압에 의한 노동인력 동원에 의존했던 식민지 경영에 토대를 둔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인종주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등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극단적 인종주의로 인한 혐오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학문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인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라고 할 수 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종차별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는 첫 번째 인권조약을 탄생시킵니다. 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descent)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구별을 금지하며(제1조)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6개의 상세조항들을 통해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한다. 우선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의 실행과 지원, 인종차별의 선동 금지(제2조, 제3조, 제4조). 또한 당사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실행하는 인종차별의 금지조치와 인종주의적 표현의 처벌 규제와 인종주의적 단체의 금지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집니다(제2조와 제4조). 그리고 인종적 편견의 제거와 인종간의 이해의 촉진을 위한 조치(제2조와 제7조), 인종차별의 희생자의 구제 조치(제6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종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으로의 적극적 우대조치(제2조)를 취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협약의 국내이행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개인청원을 접수하고, 보고서를 심사하며, 임시화해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와 다른 점으로 회원국은 국가 간의 고발을 접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제11조). 반면, 개인청원은 가입국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제14조). 이 협약은 당사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였고, 이후 1966년의 <자유권 규약>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가별 보고관을 임명한다. <집단살해 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과 같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분쟁 해결 권한을 승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한국 발효일 1985. 1. 26
- 가입국 188개국(2014.10.27. 기준)
- 6부 30조로 구성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성인권 관련 종합적인 협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법률, 규칙뿐 아니라 관습 및 관행, 관념 및 편견까지도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5조).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또 한시적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성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적인' 영역인 가족까지 확대했을 뿐 아니라 성차별의 정의에 결과적 성차별까지 포함시켰다. 이 협약은 할당제와 같이 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취하는 잠정적 특별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제4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의 금지(제6조),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철폐(제7조), 국제기구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제8조), 국적에 있어서의 여성의 동등한 권리(제9조),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0조),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1조),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2조), 금융대부 등의 기타 경제사회영역에 대한 권리(제13조), 시골여성의 권리확보(제14조), 법 앞에서의 평등(제15조),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6조) 등 모든 여성인권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두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관련 인권조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독립적인 여성전문 인권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심의하는 기구로 〈인권이사회〉를 둔 것과 위상이 같다. 따라서 당사국은 협약에 가입, 발효한 후 정기적으로 협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보고서에 기초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제17~21조).

그러나 이 협약은 여성인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보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려 188개국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유보조항을 두고 있어 협약의 효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혼인과 가족관계, 국적 등에 있어서의 평등한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19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과 유보조항 철폐를 강조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협약임에도,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자 1996년부터 4년간의 노력 끝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만들어져 1999년

3월 12일 제43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선택의정서는 가입 당사국의 여성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국 내의 모든 방법을 다 거치고서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이 위원회에서는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심각한 또는 조직적인 협약 위반이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성인권에 대한 일종의 국제재판소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2006년,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3

고문방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

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 채택일 1984. 12. 10 / 발효일 1987. 6. 26 / 한국 발효일 1995. 2. 8
- 가입국 156개국(2014. 10. 기준)
- 3부 33조로 구성

<자유권 규약> 제7조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가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적 체제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고문방지협약>이 주목하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나 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한 고문 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하는 것으로 이 협약의 가입국들은 법률로써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 행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

● 고문방지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전시 또는 전쟁위협, 국내 정치불안 또는 기타 모든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하는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상관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을 자행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2조).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인(absolute)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제3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국가 내에서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은 당해 특정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거나, 또는 인도되지 않는다.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고문을 법으로 금하고, 고문행위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가 경계(national boundaries)를 넘는 고문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제4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고문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나 고문행위자 혹은 고문피해자의 국가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관할권 행사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자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 인력의 교육과 그들의 법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제10조와 제11조). 다른 인권조약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모든 고문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고(제12조), 고문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피부양자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과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또한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5조).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고문으로 성립되지 않으나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6조).

제17조부터는 각 당사국에게 고문방지협약상 의무의 국내적 이행을 감시하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해 협약 위반의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항의와 우려서한을 전달하고, 위반 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고문방지위원회>와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12월 18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가 승인되어 2006년 6월 22일 효력이 발생했다. 의정서는 국내에 독립적인 고문방지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혹은 국가 기관이 고문 및 기타 가혹한 처우의 방지를 위해 구금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나. 아동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한국 발효일 1991. 12. 20
- 가입국 194개국(2014. 10. 기준)
- 3부 54조로 구성

<자유권 규약> 제24조와 <사회권 규약> 제10조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권리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다. 그 내용에서도 어떤 국내법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25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동권리협약>을 보충하도록 했다. 한국은 2004년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했지만 개인진정에 관한 제3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 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협약의 권리 향유자들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우선 이 협약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인과 다른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권리’로서 요구한다는 것은 아동이 온정적 시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속적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서는 성인과 다른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7조),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6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28조),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제31조)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국가나 보호자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사회적·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란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아동이 적절한 생활조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중 협약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조항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제12조)”이다. 이 조항의 채택과정을 보면, 원래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결혼·직업 선택·의료적 치료·교육·여가’로만 명시되어 있다가 후에 ‘종교·정치·사회적 신념·문화·예술·여행·거주지 등’의 제한이 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아동에 관한 문제의 목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로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의사 표현의 권리가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만 관련된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회문제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경우에 국내법상의 '절차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추상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을 넘어 권리행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을 규정한 것으로 혁신적인 아동관의 진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난민 아동(제22조), 장애아동(제23조), 소수자·선주민 아동(제30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에 시달리는 아동(제32조), 마약·향정신성 물질이나 성적 착취의 위협에 놓인 아동(제33조와 제34조), 무력분쟁 상태의 아동(제38조), 형사절차상에 놓인 아동(제40조) 등이 속한다. 이들 아동의 인권문제는 오늘의 세계적 인권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며, 그에 대하여 조약의 규정들은 일반 원칙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하는 <아동 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 인권 보장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4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 채택일 1990. 12. 18 / 발효일 2003. 7. 1 / 한국 미가입
- 가입국 47개국(2014. 10. 기준)
- 9부 93조로 구성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로, 1990년 12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범이므로 중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규범으로 이주노동자 송출국이 지니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기도 하지만, 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유입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즉 그들이 비합법적 방식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비합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출국의 자유(제8조), 생명권(제9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제10조), 강제노동의 금지(제11조), 사상양심의 자유(제12조), 신체의 자유(제16조), 국외추방의 제한(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제26조), 자녀의 권리(제29조, 제30조) 등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권리’로서, 국제인권규약 등 기존 인권 조약에 포함된 내용들인데, 그 적용 대상을 합법·비합법을 막론한 전체 이주노동자(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자영노동자)로 특정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 협약은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의거할 경우,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는 일시출국의 권리(제38조), 이주·주거 선택의 자유(제39조), 결사의 권리(제40조),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제41조), 가족 결합의 권리(제4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52조) 등을 가진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가족 결합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定住)를 막기 위하여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또 유입국 정부는 자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취업 허용 직종·업종·규모 등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노동력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가족초청을 허용하면 그들의 정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자국민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 나라들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자국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그것을 '주권' 행사의 측면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송출국들의 일반적인 지지에 비해 유입국의 참여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각 당사국들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하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당사국이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가 진정을 받을 권한을 인정할 경우, 타 당사국 혹은 개인은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 채택일 2006. 12. 13 / 발효일 2008. 5. 3 / 한국 발효일 2009. 1. 10
- 가입국 151개국(2014. 10. 기준)
- 50조로 구성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와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면서 탄생했다. 특히 각 당사국간 그리고 당사국 및 장애인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의견 차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이 협약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보호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했다. 유엔총회는 이 협약과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도 채택했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평등 및 비차별(제5조),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제6조와 제7조), 장애인의 접근성(제9조), 법 앞의 평등(제12조), 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 장애인의 안전 보장(제11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제16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장애인의 이동 보장(제20조),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제24조),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25조), 근로 및 고용(제27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제30조)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설치되어 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은 선택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청원을 인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08년에 발효했지만,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5

공유하기

국제노동기구(ILO)는 213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320차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차별 사례를 권고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봅시다.



문제풀기

1. 다음 중 유엔 8대 인권 조약이 아닌 것은?

- ① 인종차별철폐협약
- ② 여성차별철폐협약
- ③ 고문방지협약
- ④ 강제실종방지협약

정답: 4

해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2006년 12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고 2010년 12월23일 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불처벌 관행을 없애으로써 인권의 보호·증진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2. 국제사회가 8번째로 마련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평등·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립생활, 이동권 등의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 ① 아동권리협약
- ② 장애인권리협약
-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④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정답: 2

해설: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다.

3. 다음 중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협약은 무엇인가?

- 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② 여성차별철폐협약
- ③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④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답: 3

해설: 한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정리하기

1.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 생명, 자유,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평화적 집회, 사생활 등에 대한 권리 보장
 - 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의 품위를 훼손하는 처우 및 형벌, 차별, 자의적인 체포, 채무를 이유로 한 감금 등 금지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
 - 교육, 식생활, 주거,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인권 규정
 - 일자리를 가질 권리와 적절하고 편안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 등 포함

2.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8대 인권협약

제11강

국제인권현안



1. 자본주의와 세계화
2. 국제인권현안
3. 세계화시대의 인권
4. 공유하기

제11강

국제인권현안

학습목표

-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국제인권현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자본주의와 세계화
- 국제인권현안
- 세계화 시대의 인권

들어가기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꿈꿨던 얼어붙은 지구.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열차에 오른다. 거대한 열차는 하얀 눈과 얼음뿐인 지구를 끝없이 달린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이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열차에 탄 사람들뿐이다. 열차는 곧 세계이다. 머리칸부터 꼬리칸까지 각 칸은 철저히 계급화 되어 있다. 가장 하층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꼬리칸이며, 가장 앞부분인 머리칸은 열차의 핵심인 엔진이 있는, 곧 힘을 가진 권력층이 있는 곳이다. 열차는 열차에 새겨진 로고 'W(영화에서는 열차와 선로를 만든 월포드의 앞글자를 나타내지만, 'wall street'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가 상징하듯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 꼬리칸에 있는 이들 중 한 명인 커티스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배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해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앞 칸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꼬리칸의 사람들에게 겨우 단백질 블록이 주어질 때, 앞 칸의 사람들은 마약과 술에 취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그 환락의 공간에 들어갈 때, 동양인 남궁민수와 요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백인인 커티스는 아무렇지 않게 그 공간으로 초대된다.

이윽고 커티스가 열차의 핵심인 엔진칸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커티스는 지배자 월포드를 물리치고, 엔진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어린 아이(꼬리칸에서 데려온)를 구출한다.

영화에서 열차는 이 세계 자체이다. 그곳에는 서로 다른 인종이 얽혀있고, 지배층은 자본의 혜택을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층 계급은 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살며 늘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부당한 차별과 착취,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전쟁)되고 있다. 압축된 세계인 열차 안은 현재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현실로 눈을 돌려보자.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양상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정답: X

해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들은 과거로부터 지속되던 종교·인종 갈등과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달라지는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문제들도 많이 있다.

2.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들은 해당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답: O

해설: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얽혀 있는 이 세계에서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야 하는 사안으로 그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1 자본주의와 세계화

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설립하고,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는 세계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엔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맨 처음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불참한 기회를 이용해서, 유엔군이(미국이 주도한) 남한 편에 서서 한국 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냉전 구도를 해결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냉전의 양대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완력 다툼을 벌이며 세계를 양분화시켰다. 유엔은 그러한 냉전 구도 속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었고, 동서 양 진영은 유엔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나. 문명과 기술의 발전

그러는 사이에도 문명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 했다. 냉전이 종식된 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수립되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초강대국들의 이념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세계는 크게 변해갔다. 시장경제는 건잡을 수 없이 팽창했고, 새로운 생산형태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세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자본주의의 확장과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문제의 양상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세계화로 인해 잘사는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화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주로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 인권문제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면서 온갖 국제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제를 변화시켰다.

2 국제인권현안

가. 아동노동착취

1. 아동권리협약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아동은 마땅히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과 관련된 협약은 198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이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제32조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에서도 아동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연령제한을 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동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아동의 노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아동노동과 관련한 유엔의 전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아동들이 용납될 수 없는 착취 상태에 놓여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2. 아동권리보호의 현실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138호 및 제182호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아동’은 성인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동노동은 ① 11살

까지의 아동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 ② 12~14살의 아동이 행하는, 제 138호 조약에 기초해 인정되는 ‘가볍고 쉬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 ③ 15~17살의 아동이 행하는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 ④ 18살 미만의 아동이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5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 1억 6천 8백만 명이 아동노동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2012년 기준). 이는 전 세계 아동의 11%에 달하는 비율이다.

7%인 1천 2백만 명의 아동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할 경우 먼지나 화염, 화학물질과 방사능 등에 노출되는 등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아동들의 수는 매년 22,000명에 달한다.

아동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7천 7백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아동노동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동노동을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0명 중에 2명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5세~14세 아동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아동노동의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에는 공인구가 사용된다. 이때 사용되는 공인구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 이 공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만든 것을 선호하는데, 손으로 직접 만든 축구공은 최상품으로 여겨진다. 축구공에 들어가는 오각형과 육각형의 무늬를 붙이기 위해서는 약 1,620번의 바느질이 필요하다고 한다. 파키스탄에서는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아동들이다. 아동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지문이 지워져가며 축구공을 만들고 버는 돈은 하나당 약 150원.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을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많아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이다. 더 어린 아동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작업 과정에서 유독 물질로 인해 시력을 잃는 아동들도 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나 초콜릿도 아동들의 노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이들의 주요 생산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이다. 전세계 카카오의 약 70%가 생산되는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은 사정이 심각하다.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까지도

인신매매로 팔려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수는 18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다국적 자본이 제3세계 국가들의 영토와 노동력을 잠식하면서 아동노동 착취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노동 착취는 빈곤국에서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위기관리 분석기관인 메이플크로프트가 발표한 2012년 아동노동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강제노동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부모가 수감된 경우, 함께 수감된 아동들도 처벌을 받으며, 수많은 아동들이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플크로프트가 발표한 2012년 아동노동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97개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노동을 착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중 지폐는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위의 목화 생산국이자 5위의 목화 수출국으로, 목화의 생산과 거래를 정부가 통제한다. 이곳에서는 목화 수확이 시작되는 9월이면 아동들이 정부가 통제하는 목화 농장에 동원되느라 학교가 문을 닫는다. 노동에 동원된 아동들은 수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단을 맞거나 처벌을 당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지폐와 같은 보안용지의 주원료인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2010년 9월에 대우 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에 회사를 설립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지만 대우 인터내셔널 측은 공장 안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일은 없고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우리나라는 ILO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아동노동금지협정에도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아동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아동들은 광산이나 공장에 고용되거나 가정부로 고용되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논에서 일을 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성매매나 음란산업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런 아동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ILO가 2002년에 6월 12일을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로 제정했다.

아동노동 착취는 열악한 노동을 개선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고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국가간의 경제불균형

1. 산업혁명이후 경제 불균형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었고, 각 나라별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 특히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와 그 외 지역의 일부 나라들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 반대로 자본주의가 초래할 불평등을 비판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붕괴한 지 오래되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련식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었으며, 사회주의 내부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사회주의는 종말을 맞고 말았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사람들은 더욱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자본주의가 불러온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 금융자본에 의해 세계 경제체제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삶은 국제금융 자본에 종속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 중에는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제3세계’는 1960년대 말부터 사용한 용어로, 원래는 냉전 시대에 동서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들, 즉 자본주의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발전에 따라 구미 자본주의 국가와 일본이 제1세계,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산업화를 이룬 소련과 동유럽 블록이 제2세계, 제1세계와 제2세계로부터 자본과 기술 및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3세계로 구분한다. 제3세계 국가들은 주로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 경제적 토대가 허약한 저개발 또는 빈곤 국가들이다. 지역적으로는 중남미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인 2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으며, 매년 수백 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수단,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빈곤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2. 원조의 두 얼굴

유엔 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유엔 개발계획의 '2013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교육, 삶의 질 등의 부문에서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는 모두 15억 명에 이르고,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상위계층도 8억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루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1,300원 이하인 절대빈곤층 인구는 12억 명이다. 이런 극심한 빈곤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은 사치스러운 일일 뿐이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원조'라는 이름으로 이들 국가들에 각종 물품과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학교를 짓고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는 경제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 선진국들이 제3세계로 경제 진출을 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선진국들은 값싼 임금을 찾아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자원 개발을 추진했다. 문제는 저개발 국가의 공업화와 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는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나라들도 많아서 임금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고용 비용을 더 지출하게 만드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제도가 갖추어진 나라도 드뭅니다. 반면 제3세계에서 값싼 임금을 통해 생산한 물품과 농산물, 자원 등으로 선진국들의 경제는 더욱 발전했다. 제3세계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과 에너지, 공산품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이 원래부터 빈곤에 시달렸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불행은 대부분 서구 강대국들이 이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수백 년 전, 서구에서 온 침략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천연광물 자원들을 채굴해 갔다. 그렇게 서구의 침략자들이 가져간 자원의 채굴권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서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에 대한 이익이 제3세계 나라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이다. 게다가 부유한 나라의 다국적기업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 시설들(수도, 가스, 전기 등)을 사들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다. 무슬림 무장단체 “IS”

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

경제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나타난 다른 문제점은 투쟁을 통해 세계화에 대항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 집단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근본주의 집단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의 이름을 빌어 사회를 전통적 가치에 따라 재편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종교와 인종, 이념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9.11 테러와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이러한 테러행위는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은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했으며, 포로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체계적인 고문은 국제인권기준을 단박에 무력화시켰다.

9.11 테러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전투 병력이 철수하면서 미국이 내세우던 테러와의 전쟁은 끝이 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 즉 ISIS(또는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IL)가 이라크의 모술을 무혈점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은 시리아 북부의 라카 주(州)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한 통치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이슬람 내의 다른 종파인 시아파나 기독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개종을 강요했다.

2. IS의 탄생

그러던 ISIS가 알카에다로부터 독립한 후 이라크 쪽으로 군사적 공세를 확대하고 모술을 점령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이들은 ‘칼리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이슬람국가(IS)’의 탄생을 선언했다. 이들은 영국보다 더 큰 지역인 시리아 동북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영토로 선포했다. 현재 IS는 이슬람과 이슬람 경전의 꾸란의 이름을 빌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노예제 부활을 공식 선언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야지디족이 거주하는 이라크의 신자르를 점령한 후에는 병사들에게 여성과 어린이를 전리품으로 나누어주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이슬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어린 소년들을 전투에 동원하고 일부를 자살폭파범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질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참수하는 한편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리한 자신들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에 폭파 협박을 하거나 운전사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고, 은행이나 가게를 약탈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014년 모술 점령 당시에는 모술 중앙은행을 약탈하여 거액의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1. 유엔의 결정과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무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7세기에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되었으며, 16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오스만투르크제국(현재의 터키)의 영토였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군사협력을 위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독립을 약속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한다.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고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절반이 넘는 56%를 유대 국가에, 나머지 약 43%를 아랍 국가에 할당하는 분리안을 발표했다. 당시 팔레스타인 영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랍인들은 당연히 유엔의 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2. 1차 중동전쟁

유엔의 결정에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1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대가로 유엔이 할당한 것보다 더 많은, 전체 영토 중 70%가 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머지는 가자(Gaza Strip)와 서안(West Bank)으로 나뉘어 가지는 이집트가, 서안과 동예루살렘(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통치)은 요르단이 통치하게 되었다.

1차 중동 전쟁으로 75만~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주변 아랍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와 시민권을 준다고 선포했죠. 이후 1967년에 발생했던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가자와 서안 모두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약 43만 명의 아랍인들이 추가로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100만 여 명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3.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8년에 지미 카터(James Earl Carter, Jr., 1924년 10월 1일 ~) 미 대통령과 사다트(Anwar El Sadat, 1918~1981)이집트 대통령, 베긴(Menachem (Wolhovich) Begin, 1913~1992)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가자에 대한 개입을 중지했고, 미국으로부터 매년 20억 달러를 받게 되었다. 요르단도 1994년에 사실상 서안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승인한 뒤 부채 탕감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았다.

이후에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고, 1988년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하마스가 창설되어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4.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의 건설

2000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은 자살 폭탄 공격을 일으키는 등 강경하게 저항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2년부터 서안 지역에 콘크리트 분리 장벽을 건설했다. 길이 800킬로미터, 높이 8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장벽이었다.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정착지를 분리시키고, 검문소를 설치하여 팔레스타인을 고립시켰다.

팔레스타인인 인권유린과 학살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과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5.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인권유린

지난 7월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 몇 달 전, 이스라엘 소년들이 살해당한 것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소년을 잡아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보복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7월 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다. 50일의 공습 기간 동안, 약 2,2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약 75%가 민간인이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무기한 휴전 상태이며, 조만간 가자지구의 영구적인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3 세계화시대의 인권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튀니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의 바람은 ‘아랍의 봄’을 불러왔다. 그러나 현재 이들 나라들은 튀니지를 제외하고, 또 다른 독재 정권이 들어서거나 내전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 중 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도 다시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실패로 끝이 났다. 러시아와 중국의 민주주의도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9월, 홍콩의 24개 학교 대학생들이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후보 제한 등에 반발해 벌인 이 시위는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낸 것을 계기로 ‘우산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곳곳과 영국, 필리핀 등에서 우산 혁명을 지지하는 동조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우산 혁명을 지지하는 동조 시위 대열에 참여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사안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인권 문제는 우리 일상이자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각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도 무척 중요하다.

4 공유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인권현안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풀기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냉전 시대에 유엔은 제 목소리를 내며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 ② 자본주의와 정보통신의 발달이 세계화를 촉진하고 인권의제를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 ③ 세계화로 인해 세계 경제는 비교적 균등하게 발전시켰다.
- ④ 세계화 시대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인권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겼다.

정답: 2

해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완력 다툼을 벌이며 세계를 양분화시켰고, 세계화는 잘사는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 인권문제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정세에 간섭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2. 아동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

- ① 아메리카
- ② 동유럽
- ③ 아시아
- ④ 아프리카

정답: 3

해설: 아동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비율적으로 아동노동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동노동을 하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0명 중에 2명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

3.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무장테러단체로, 이라크 모술을 점령한 뒤 2014년 6월 '칼리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의 탄생을 선언했다.

- ① ISIS ② 하마스 ③ IS ④알카에다

정답: 3

해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 ISIS(또는 이라크레반트이슬람 국가, ISIL)가 이라크의 모술을 점령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약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이들은 '칼리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이슬람국가 (IS)'의 탄생을 선언했다. 또한 시리아 동북부와 이라크 북주 지역을 장악하고 영토로 선포했다.



정리하기

1. 자본주의와 세계화

- 자본주의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 촉진 : 인권문제의 양상을 변화시킴

2. 국제인권현안

- 1) 아동노동착취
- 2)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
- 3) 무슬림 무장단체 'IS'
- 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3. 세계화 시대의 인권

-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님
-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참여, 각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가 중요함

제12강



국가인권기구의 기원과 발전

1.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2.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성격, 기능
3.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4. 공유하기

제12강

국가인권기구의 기원과 발전

학습목표

-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성격,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성격, 기능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들어가기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입법을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도쿄를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비밀보호법을 막아라 11·21 대집회'란 이름으로 집회가 열린 것이다. 도쿄에서만도 행사 시작 전부터 집회장 안팎에 시민 1만여 명이 몰려 들었고, 주최측에 의하면 현장에 왔지만 자리가 없어 돌아간 시민도 2000여 명이라고 한다. 시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영원히 감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 의견(29%)을 두 배 넘게 앞서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신문협회 등 언론계,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여성계 모두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이다. '비밀보호법'이나 '자위대', '핵 발전 정책' 등 우경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아베 정권 아래, 일본 시민의 인권도 점점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는 '국가인권기구', 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가 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이미지가 강한 일본이니 인권을 위한 국가기구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http://www.nichibenren.or.jp/>)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변련)은 1949년 9월 1일 설립된 법인이다. 일본 내 전국 모든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은 각지의 변호사회에 입회하는 동시에 일본변련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인권 옹호를 위한 여러 활동, 각종 법률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의견 제출, 소비자 피해 구제, 사법 개혁 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18일, '국내인권기구실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일본 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 중이다.

국내인권기구실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한 국내인권기구의 설립은 유엔이 세계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환이다. 일본변련은 정부로부터 독립한 국내 인권기구를 (일본)내각부에 두는 것을 조직 구성으로 한다'고 요강 안을 공표했다. 2014년 2월에는 '국내인권기구 창설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본 내 진보정당, 시민 및 관련 NGO, 언론과의 협력 활동을 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출범했다.

정답: O

해설: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1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2.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정답: O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1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배경

국가인권기구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기 2년 전인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론화한 이후 많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1960년에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을 다시 권유하게 되었다.

1976년 <국제인권규약(A, B규약)>의 발효를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들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들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따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1978년 9월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구 관련 세미나’를 제네바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결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인권정보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② 여론에 대한 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 지원 ③ 정부가 위임하는 특정 사항들에 대한 검토, 심의, 권고 ④ 정부가 위임하는 인권문제와 관련 질문들에 대한 자문 제공 ⑤ 입법, 사법, 행정적 제도 등의 상황 연구, 검토 및 해당기관에 보고서 제출 ⑥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부과되는 의무와 기능수행 등 이다.

199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 및 지역 인권기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권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워크숍’이 1991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워크숍의 합의사항들은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 의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으로 승인(1992년) 되었으며, 유엔 총회에서 재승인(1993년)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 되었다. 1978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구 관련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확대한 <파리원칙>은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활동방식, 준수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서는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목적, 대표성과 접근성을 비롯한 적절하고 효율적 기능을 위한 핵심 요건들, 기구 간

활동의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기구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으며, 유엔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또는 강화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지역인권기구들 및 유엔간의 협력, 국가인권기구들간의 협력을 권고했다. 또,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체제를 개선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엔인권센터의 후원 하에 정기적으로 국가인권기구 대표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1993년 튀니스에서 열린 ‘제2차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28개 이상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남미 및 북미의 국가인권기구들로 구성되는 <국제조정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들간의 공동 활동과 협력을 권장하고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 간의 연락을 담당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각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파리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등급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와 <파리원칙> 채택 이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관련 활동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국가인권기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4년 현재 120여개 국가에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나. 파리 원칙

국가인권기구들의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파리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원칙>의 주요 내용

① 권한과 책임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으로서는 정부, 의회 그 밖의 모든 관계기관에 대하여 인권

법제와 인권상황에 관한 제언 및 권고, 국제인권문서의 실효적 이행의 촉진 및 확보, 인권조약의 비준 및 그 이행을 보장, 인권조약상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협력 및 의견표명, 국제협력, 인권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예, 민간단체, 노동조합,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관련 사회단체 등). 더불어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임기 보장과 재정적 독립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활동 방식

-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체계의 구성이나 소집 등 운영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사건의 심사, 의견청취 및 정보나 문서의 취득, 의견이나 권고의 공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실무위원회와 지역 또는 지방사무소의 설치, 인권촉진 및 보호에 책임을 갖는 기관 등과의 협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④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조사,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권리구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조정을 통한 우호적 해결 모색, 진정인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률의 제한 내에서 진정의 청문 및 관련 기관에의 이송, 법률 규칙 행정관행의 개선 등의 제안 및 권고를 해야 한다.

가.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국가인권기구의 초기 개념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국가 기구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탄력적인 것이어서, 광범위한 조직과 제도가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유엔이 연구 활동을 통해, 점차 공통적 기능들을 기준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권고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정의하면, 국가인권기구란 “위원회”로 명명된 기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의 인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권위원회”, “옴부즈만” 그리고 특수한 집단 혹은 이슈를 다루는 “특별인권기구”로 구분되며, 대다수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의 분류에 속하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만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옴부즈만이 인권기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옴부즈만의 권한은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두 기구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구의 기능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대다수 옴부즈만의 일차적인 기능은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인권위원회는 주로 인권 침해, 특히 차별 행위를 다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이나 관리에 대한 개인들의 진정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기 때문에 두 기구 사이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는 인권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구가 적용되는 편이고, 북유럽 국가들과 구소련 연방의 독립국가 연합에는 옴부즈만 형태의 국가기구가 적용되는 편이다.

〈대륙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

국가	기관명칭	설립시기/ 근거	기구 성격	
아시아 · 태평양	호주	인권위원회	1986/ 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필리핀	인권위원회	1987/ 헌법	국가·헌법기구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1993/ 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1996/ 대통령령	국가·법률기구
	피지	인권위원회	1999/ 헌법, 인권위원회법	법인·헌법기구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2000/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헌법기구
	태국	인권위원회	2001/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헌법기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1/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기구
유럽	스웨덴	인종차별옴부즈만	1986/ 인종차별옴부즈만법	국가기구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	1988/ 자문위 설치령	자문기구
	러시아	인권위원회	1998/ 헌법	헌법기구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 정관	자문기구
	아일랜드	국가인권위원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독일	인권기구	2001/ 특별법	자문기구
	덴마크	덴마크인권기구	2002/ 덴마크인권기구법	국가·법률기구
	영국	평등위원회	2007/ 평등법	비정부 공공기관
	스코틀랜드	국가인권위원회	2008/ 스코틀랜드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미주	캐나다	인권위원회	1977/ 캐나다 인권법	국가·법률기구
	아르헨티나	국가옴부즈만	1994/ 옴부즈만설치법	국가·헌법기구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1994/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헌법기구
	파나마	파나마 옴부즈만	1996/ 파나마공화국 옴부즈만설치법	의회
아프리카	모로코	인권자문위원회	1990/ 정부조직 재편법	국가·법률기구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인권위원회	1995/ 헌법, 인권위원회법	헌법기구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	1995/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우간다	우간다인권위원회	1997/ 우간다 인권위원회법	법인·연방기구
	르완다	인권위원회	1999/ 인권위설립법, 개정헌법	헌법기구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률기구

나.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상 가장 큰 특징으로는 ① 국내에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비록 각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운영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 역시 국내법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규범까지 포괄적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② 국가인권기구는 기본적인 국제인권법과 관련법이 정한 인권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인권 이외의 권리도 관할대상으로 삼는 사법부와는 구별된다. ③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갖는 종합적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후적 구제기능 외에도 조사연구, 대정부 자문조언, 교육, 홍보를 통한 사전적 예방기능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④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 시정하는 업무의 특성상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 이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점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 부담을 느끼기 쉬운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 활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②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 ③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행하는 준사법기구 ④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 등으로 자신들의 기구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제인권조약과 다른 문서들에 규정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① 인권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advisory function) ②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③ 공적 부문 및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인권문화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의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국제인권기준에 합치되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일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 문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고 인권교육 증진에 필요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협의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③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로서부터 진정을 접수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법기관이 하는 일과 유사하지만, 조사의 목적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권고·조정·법률구조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준사법적(quasi-judicial) 구제’ 또는 ‘비사법적 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의 <파리원칙 해설서>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① 진정의 대상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 ②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free access)할 수 있는 권한 ③ 문서 또는 구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권한 ④ 현장 조사권 ⑤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권 ⑥ 증언을 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소추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⑦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 ⑧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권한 ⑨ 선서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하게 할 권한 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권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

한국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단체의 오랜 노력과 활동이 뒷받침되어 설립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생소하기만 했던 ‘인권’이라는 의제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을 통한 인권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의해 처음 가시화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각종 인권관련 국제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리고 199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97년 1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대통령 당선 후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정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도 급속히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는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을 발족시켰고, 같은 해 10월 인권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및 독립성 등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 3년여에 걸친 싸움이 계속되었다. 정부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산하 민간기구로 설립할 것을 추진했고, 인권시민단체는 1998년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1999년 71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정부와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인권시민단체의 노력의 결과 2001년 4월에 이르러서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제적의원 273명, 찬성 137명, 반대 133명, 기권 3명) 되었다. 정부는 200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의결했고, 5월 24일 법률로 공포됐으며, 1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두고 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사무처 조직은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과·소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를 구성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사 집행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기관은 인권사무소이다. 지역별 인권사무소는 지역사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 기능,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첫째, 정책 기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정부 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 청취(제21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청문회 운영(제23조),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및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제28조)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다.

주요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 사례

- 호주제 폐지 의견 표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발표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개선 권고
- 군내 불온서적 지정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권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불심검문관련) 의견 표명

둘째,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존중문화 향상에 필요한 인권 교육·홍보 기능(제19조 제5호)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제26조 제2항),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제26조 제3항),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제26조 제4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요청 또는 공동연구(제25조 제5항),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제26조 제6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요 교육·홍보 사례

- 검·경 교도관 등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및 인권교육센터 설치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 초·중·고교용 등 각종 인권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선 1318>등 인권 영화 및 <별별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격월간 <인권> 발행, 뉴스레터(휴먼레터) 서비스
- 교과서 모니터단 운영
- 인권보도준칙 제정

셋째, 조사·구제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업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제30조),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 조사의 방법(제36조) 등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상임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한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주요 조사·구제 사례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 농민 전용철씨 사망 사건 → 과잉 진압 책임자 고발 등 권고
-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 →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
-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개선 권고
- 장애인 발산역 사망 사건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
- 입사지원서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차별적 항목 개선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연령 차별 개선 권고
-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개선
- 촛불집회 과잉 진압 개선 권고
- 경찰관 고문 사건·> 관련 경찰관 고발 등

마지막으로, 국내외 협력 기능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19조 제8호)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사항(제19조 제9호)을 명시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의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유엔의 국제인권 기준의 제도적 확산 노력이 당시 ‘국민의 정부’의 정책과 결합하면서 탄생한 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정치적 수사나 선언이 아닌 국가 정책의 중심가치이자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그리고 위상과 권한의 정도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한국에서도 인권의 보편적 실현이라는 인류의 열망과 대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혼란과 불안한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의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2009년 인권위 조직 21% 축소, 새로 임명된 인권위원(장)의 적격성 문제, 2014년 ICC 등급 보류 판정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비생산적인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자체로, 존재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국가기구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인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잘못된 법률과 제도 등을 개선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실제 이들에게 얼마만큼 제대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과 구제조치가 이루어졌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찾아가기라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정기 등급 심사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재심사 대상이 되었다. 재심사 사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풀기

1.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 ① 세계인권선언
- ② 파리원칙
- ③ 유엔인권선언
- ④ 더반선언

정답: 2

해설: 1993년에 채택된 파리원칙은 오늘날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다.

2. 다음에서 <파리원칙>의 내용 중 일부이다.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① 권한과 책임
- ② 활동 방식
- ③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 ④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정답: 3

해설: 국가인권기구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3. 다음 중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정책연구 및 자문
- ② 인권교육과 홍보
- ③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④ 인권침해와 관련한 가해자 처벌

정답: 4

해설: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다.



정리하기

1.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 국가인권기구
 - 유엔의 인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설립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
- <파리원칙>
 -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히 함
 -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파리원칙> 채택 이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활동
→ 2014년 120여개 국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 ‘인권위원회’, ‘옴부즈만’ 그리고 ‘특별인권기구’로 구분

2. 국가인권기구의 형태·성격·기능

- 특징
 - 국내에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
 - 기본적인 국제인권법과 관련법이 정한 인권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갖는 종합적 국가기구
 -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시정하는 업무의 특성상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
- 기능
 - 정책연구 및 자문
 -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3.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설립
 - 인권단체의 오랜 노력과 활동이 뒷받침되어 2001년 11월에 설립

- 기능
 - 정책 기능
 - 교육·홍보 기능
 - 조사·구제 기능
 - 국내외 협력 기능
- 의의
 - 한국에서도 인권의 보편적 실현이라는 인류의 열망과 대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제13강

국가와 인권



1. 의무의 주체, 국가
2. 국가의 역할
3. 공유하기

제13강 국가와 인권

학습목표

- 국가가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의무의 주체, 국가
- 국가의 역할

들어가기

오쿠다 히데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임순례 감독의 영화 <남쪽으로 튀어>의 주인공 최해갑은 무정부주의자이다. 그는 주민세를 내라고 요구에,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나는 주민으로서 받은 게 없다.'며 주민세 내기를 거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텔레비전 수신료에 항의해서 텔레비전을 던져 박살내버리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상식을 벗어난 최해갑의 행동은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떠올라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지금껏 국가는 '4대 의무'란 이름으로 교육·근로·납세·국방의 의무 등 계속해서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해 주지 않다. 국민들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걸까?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해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주주의와 인권은 별개다.

정답: X

해설: 인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구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중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1 의무의 주체, 국가

가. 인권이란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권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권을 누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존립 근거이다. 국민과 국가가 서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국가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인권 담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충족할 의무의 주체인 국가에 대해서는 잘 부각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의무의 주체인 국가가 국민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오랫동안 인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국가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왔고 그래서 국가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여긴 것이다.

나.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현대의 국가는 여러 종류의 적극적 기능과 책임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 그러한 책임은 정치의 문제로 여겨질 뿐, 권리의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다.

보통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권리라기보다는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그런 권리를 과연 절대적 인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이런 의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대립시키고 자유와 평등을 구분하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는 것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국가의 소극적 의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평등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시기에는 이런 식의 구분이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와 연관되어 있던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평등을 신장하라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여겼다. 반면 서구의 민주적 권리와 연관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소극적 의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여겼다. 또한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적극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주거권은 국가가 개인의 가정이나 가족생활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인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를 '자유'로 규정하는 관념이 작용하고 있다. 자유란 간섭이 없는 상태이며, 국가를 개인과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이다. 이때 인권의 역할이란 개인의 자율성에 간섭하려고 하는 국가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다. 역량이론

그러나 인권은 의도적인 국가의 간섭을 억제했을 때에만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지 않는다. 만일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다른 억압 요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유를 가로막는 억압 요인들은 국가의 폭압이나 불관용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빈곤, 질병, 낮은 교육 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주체 행위 또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확장하면 개인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미국의 철학자 마사 너스봄(Martha Nussbaum, 1947~)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이자 정치적 계획의 목표로서 ‘역량’이란 개념을 인권에 도입했다. 너스봄은 역량 이론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적 핵심 원리의 기초를 설명하려고 한다. 너스봄은 어떤 역량 이하로는 인간이 진정으로 기능할 수 없는, 역량의 하한선(threshold)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역량의 하한선 이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사람들의 역량의 하한선을 보장해 줄 적극적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너스봄의 주장은 국가의 불간섭과 적극적 행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빈곤 문제의 경우, 빈곤이 국가가 국민을 돕지 않아서(간섭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국가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간섭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는 법으로써 소유권을 보장하기도 하고, 소유한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고 고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법이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없을 때 굶주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이나 굶주림을 국가의 고의적인 간섭의 결과로 이해하든 자유의 장애물로 이해하든, 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마땅히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를 주체 행위로 폭넓게 파악하는 견해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선택’이다. 개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지칭하는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존중하고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를 주체 행위로 보는 적극적 견해에서도 이러한 선택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선호를 촉진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선택’의 사회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개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자기가 보기에 실현 가능한 수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권력 구조에 맞춰 자신의 선호를 조절한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육아·양육 등 기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육아나 양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두고 굳이 시간에 일자리를 얻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도 -진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뛰어난 스펙을 갖추어도 취업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기업에 취직한다 해도 언제 해고될 지 몰라 불안해하느니,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이런저런 스펙이 필요하지 않은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개인이 어떤 법적·사회적 조건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하는 법적·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선호를 직접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초부터 어떤 법적 권리가 없었던 사람은 그러한 법적 권리를 선호한다고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에게는 법적 권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기 가능성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선택의 자유를 증진하려면 실행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통해 선택의 영역을 확장해 줌으로써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은 국가가 자율성을 위한 조건을 형성해줄 때에만 온전하게 자율적일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을 증진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율성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다 허용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에게는 국민들이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목표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도 있을 수 있다.

라. 자유를 주체행위로 보는 견해

영국의 법철학자 조셉 라즈(Joseph Raz, 1939~)도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즈는 자유주의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관을 추구함으로써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도덕성을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인 속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라즈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이 구상한 ‘해악 원리’에서 ‘해악’의 범위를 넓혀서 타인의 상황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것도 해악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일 뿐이라고 했다. 이것은 국가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택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말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악 원리에서 국가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국가는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해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도덕적으로 해로운 선택이 해악을 끼칠 때이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강압적 방법이 정당화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자유에 관한 적극적 견해에는 평등이라는 실질적 개념이 반드시 뒤따른다. 자유가 인간에게 근본적인 가치라면 몇몇 소수의 자유가 아닌 ‘모든 사람’의 자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러한 자유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게 자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 의무로 인해 국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거나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국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특정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국민의 기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으로부터 비롯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규범적 성격이다. 인권에서 비롯되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의무가 국가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가 국가에게 소극적 의무에 비해 더 많은 운신의 폭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실질적 자유와 연대와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증진하지 못할 때에는 정당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권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그 자체로 국가가 자기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 원칙은 국가가 행동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한 수 있는 것 만큼이나, 국가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을 통한 개인의 자유 대신, 국민들에게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선택들을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결론은 모든 적극적 의무가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권이란 가치를 명백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의무만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민주주의의 현실과 실현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촉진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역할이 인권의 기능이 아니라 민주적 정치 과정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목표가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그 목표는 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 더 잘 수행될 수 있다고도 한다.

국가의 적극적 기능이 민주적 정치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참여의 정도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현대의 민주주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권력은 소수 집단에게 집중되고, 과도한 경쟁과 물질 중심의 풍토는 사회의 여러 집단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천은 민주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과 공공사안에 대해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이 정부의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정부 조직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람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 또한 행정은 정부 조직 및 공무원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행정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활동이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하는 행정은 인권 원칙과 맞지 않는 듯 한다. 국가권력은 오랫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인권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법과 정책들은, 시장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과 더불어 인권의 실현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의 인권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것은 각 개인이 모여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국민 개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와 개인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권위주의적 태도와 성장 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추구하는 것이 곧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나. 행정과 인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입법과 사법의 영역이라면, 행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든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권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을 만들 때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없는지, 혹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평등’이다. 평등은 소극적 인권 보호와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잇는 중요한 개념이다. 평등 개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범주에 속하지만,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 영역에서 국가의 소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은 분배적 불평등을 강조하는 입장과 대비됩니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정책에서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에서의 평등과 달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인권 보호 의무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의 소극적 의무만으로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 없이는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반드시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 34조 -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제37조이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난 뒤, 행정 조직을 구축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공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하려고 한다. 저상 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이다. 하지만 저상 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저상 버스 구입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예산 수립 단계부터 인권 개념을 반영한 예산을 인권 인지적 예산이라고 한다. 인권 인지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인권 인지적 예산은 특정 인권 예산, 인권 개선 예산, 일반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인권 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쓰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려한 예산이다. 인권 개선 예산은 사회 전반의 인권 인식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예산은 간접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이다. 직접적으로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여 편성되는 예산이다.

정책이 확립된 이후에는 그 정책이 인권 보호와 증진이란 목표에 부합하여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이후 보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로부터 소외를 당한다. 정보접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인권 침해이다. 이주노동자들이나 소외된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권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 또는 국제 사회의 인권 협약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지수(index)’와 관련 통계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정함으로써, 정책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으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할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한 조직이다.

인권 전담 기구들은 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구제 활동을 벌인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이런 기구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3 공유하기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풀기

1. 미국의 철학자 마사 너스봄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이자 정치적 계획의 목표로 인권에 도입한 개념은 무엇인가?

- ① 개발 ② 역량 ③ 자유 시장 ④ 참여

정답: 2

해설: 마사 너스봄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이자 정치적 계획의 목표로서 '역량'이란 개념을 인권에 도입했다. 너스봄은 역량 이론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헌법적 핵심 원리의 기초를 설명했다.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예산 수립 단계부터 인권 개념을 반영해 인권 인지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인권 인지적 예산이라고 한다.
② 특정 인권 예산은 사회 전반의 인권 인식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③ 인권 개선 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려한 예산이다.
④ 인권 인지적 예산은 사회 갈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정답: 1

해설: 예산 수립 단계부터 인권 개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인권 인지적 예산이라고 하며, 이것은 인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특정 인권 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쓰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려한 예산이다. 인권 개선 예산은 사회 전반의 인권 인식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일반 예산은 간접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이다. 직접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예산이 아닌,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인권 증진을 고려하여 편성되는 예산이다.

3.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이 제도는 무엇인가?

- ① 인권영향평가 ② 인권정책감시제 ③ 인권감사제 ④ 인권환경평가

정답: 1

해설: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정함으로써, 정책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기

1. 의무의 주체, 국가

-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개인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짐
-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적극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특정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국민의 기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됨

2. 국가의 역할

-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정부 조직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임
- 행정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
-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 수립 요구됨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예산 수립 단계부터 인권 개념을 반영한 인권 인지적 예산 편성 필요
-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제도 도입 필요
-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담당할 조직이나 기구 필요

제14강

법과 인권



1. 준사법적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언론중재위원회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6. 공유하기

제14강 법과 인권

학습목표

- 준사법적 권리구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준사법적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가기

가정폭력의 결말은 아주 심한 경우에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쪽이 매우 불행한 파국을 맞아야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그런데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일이나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간 비율이 50.5%였다고 한다. 경찰관 현장출동이 의무화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도 배치되었지만, 아직도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2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한국 사법이야내를 죽인 남성과 남편을 죽인 여성에게 불공평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를 보겠다.

여성: (울먹이며)저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것이다. 정당방위였어요.

판사: 남편의 행동은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피고인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나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의 다리를 가위로 그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무지'와 남녀차별적 시각, 가정폭력이란 피해여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과연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법의 피해자인지를 반문하게 만든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침해된 인권은 사법적인 절차만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다.

정답: X

해설: 권리구제제도에는 크게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준사법적)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제도가 있다.

2.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사법적 국가기관이다.

정답: O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준사법적 국가기관이다.

1 준사법적 권리구제

한 국가의 인권옹호는 국제인권법의 큰 틀에서 보면 통상 사법적 절차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실현된다.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옹호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담당하고, 준사법적 절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담당한다. 한 국가의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 준사법적 절차가 사법적 절차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지 않으면 인권의 실질적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법적 판단은 성질상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인권 실현에 있어서 대단히 실효적이다. 그러나 이 절차는 많은 자원을 전제로 한다. 우선 복잡하고 정교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법적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재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 절차는 대부분 사후적 개념의 인권옹호절차이다.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비로소 작동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옹호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오히려 실효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우선 사법적 절차에 비하여 돈과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나오는 결정(권고)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법절차의 그것보다 다양하며 유연하다. 준사법적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 절차 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인권옹호 절차가 될 수 있다.

준사법적 구제방법으로 일찍이 주목받아온 것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 내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비사법적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호민관(護民官)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일컬어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옴부즈만 외에 준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각종 대체분쟁처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또는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를 의미하는 준사법적 구제방법이다. 여기에는 민사조정, 가사조정과 같은 사법형 대체분쟁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환경 분쟁위원회와 같은 행정형 대체분쟁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준사법적 구제방법은 침해된

인권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능률성을 높이고자 조정, 중재, 권고 등을 통한 자율적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 기구로서,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인권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조정 및 구제조치, 권고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법령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담당 업무로 하고 있다.

○ 진정의 제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이다.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는 민원으로 접수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 및 구제를 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분류되며, 예비조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각 조사본부로 이송된다. 조사 대상의 인권 침해행위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진정 접수 후 신속히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각하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본격적인 사건조사는 서면 출석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조사종결 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 합의권고를 의결한 경우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종결되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진정처리절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나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진정·민원신청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③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이다.

주택·건축, 도시계획, 재정·세무 등의 모든 행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 내부의 행정심판제도나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에서 드러나는 중립성의 문제나 절차의 복잡성 문제 때문에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던 민원들도 신속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고충민원 처리절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은 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④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이상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고충민원의 신청방법은 사법적 구제절차의 전형인 민·형사소송의 제기와 달리 매우 간단하다.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①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 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하게 된다. 행정 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민원접수 처리 체계



-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
-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감사의회에 결정에 관한 사항
 -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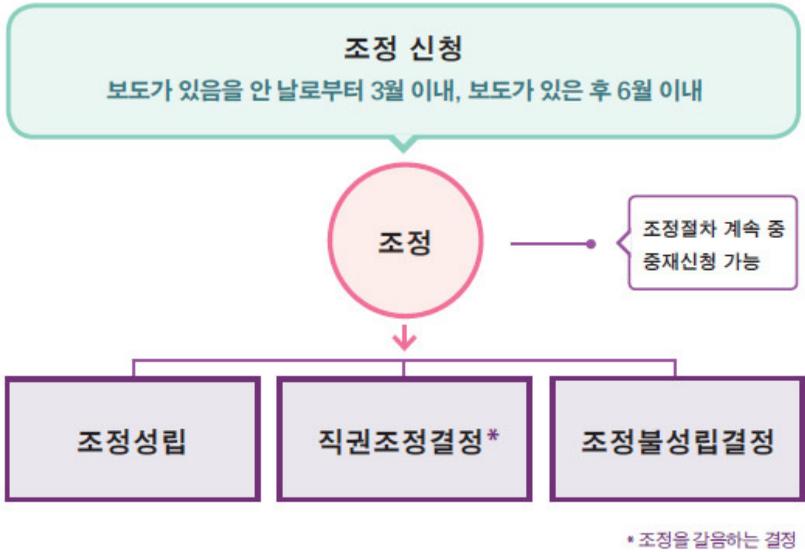
4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1년에 설치된 준사법기구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행정형 대체분쟁처리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언론조정 절차

언론조정 절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는 먼저 조정절차가 있다. 언론조정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조정성립이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된다. 조정신청의 결과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나올 수 있다.

○ 언론중재 절차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조정분쟁법 제5조(환경분쟁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침해된 환경 관련 국민의 인권, 즉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분쟁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1년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1억 원 초과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③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④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의 조정을 임무로 한다. 그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1억 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②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등의 조정을 임무로 한다.

○ 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이다. 환경피해는 ①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②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③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④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⑤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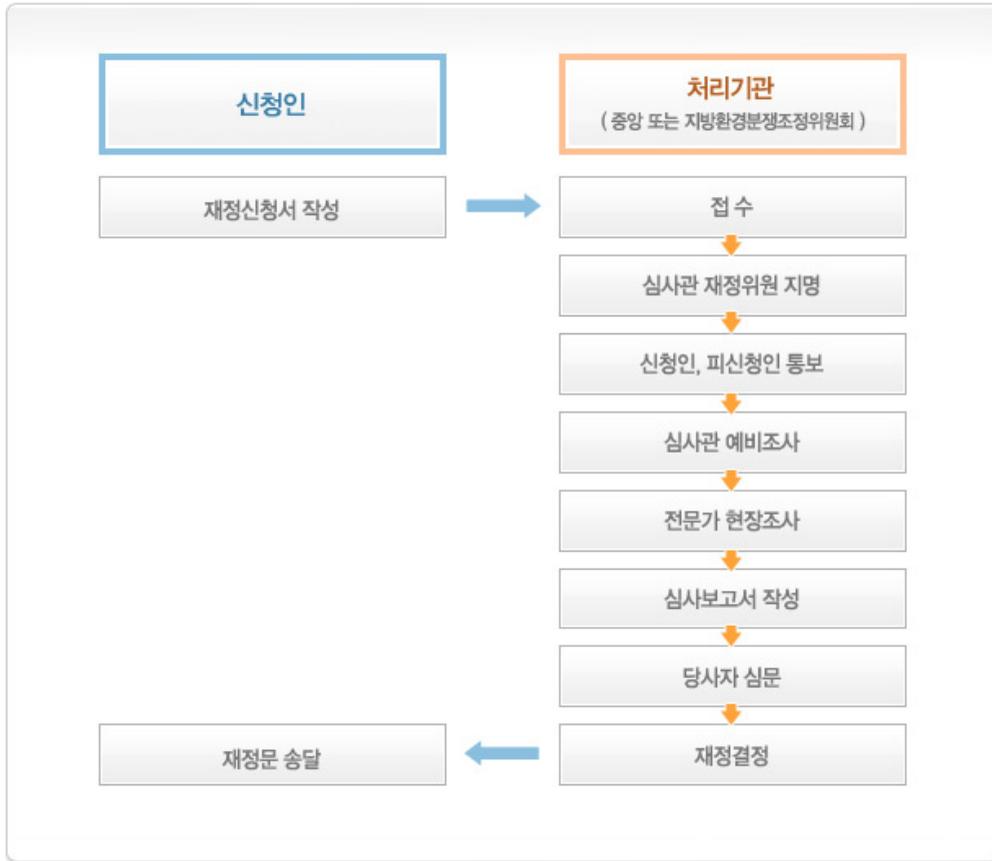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조정(調停) 외에도 재정(裁定), 알선(斡旋)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조정(調整)이라고 칭하고 있다.

구 분	정 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이 중에서 대체분쟁절차인 재정신청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행하되, 조정가액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억 원 이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재정의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질문, 진술 청위,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신청사건 처리절차 (재정의 경우)



조정(調整)의 효력으로는 ① 위원회가 재정(裁定)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보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 관계확정)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調停)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③ 알선(斡旋)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직권조정’(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

환경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로 환경 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6 공유하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 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반론보도청구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풀기

1.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국가인권위원회
- ③ 언론중재위원회
- ④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답: 2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까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의 기능을 합쳐 출범한 기관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국가인권위원회
- ③ 언론중재위원회
- ④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답: 1

해설: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3. 다음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임무가 아닌 것은?

- ① 1억 원 초과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③ 1억 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 ④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정답: 3

해설: 1억 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이다.



정리하기

1. 준사법적 권리구제

-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거나 없지만 오히려 실효성이 높은 경우가 많음
- 사법적 절차에 비하여 돈과 시간이 절약됨
-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법절차의 결정보다 다양하며 유연함
- 경우에 따라 사법적 절차 보다 실질적인 인권옹호 절차가 될 수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

3.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4.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 심의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 보전
- 침해된 환경 관련 국민의 인권 구제

제15강



사회복지와 인권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3.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4. 공유하기

제15강

사회복지와 인권

학습목표

- 사회복지 개념을 말할 수 있다.
- 과거와 달라진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회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들어가기

요즘 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에서 세 모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세 모녀가 동반자살을 한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기 전, 임대인에게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다. 정말 죄송하다'란 유서와 현금 70만원을 남겼다. 세 모녀는 십여 년 전 암투병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병원비와 생활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딸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팔을 다쳐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팍팍한 삶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떠난 세 모녀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고,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이 사회의 현실에 분노했다. 정부도 복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등 3건을 묶어 '송파세모녀법'을 발의했다. 몇 달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은 2014년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반쪽 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모녀 사건 후 사람들은 왜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의아해 했다. 하지만 세 모녀는 근로능력자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가까운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죽어 가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진정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리 알아보기

앞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은 가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다.

정답: X

해설: 과거에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취약계층이었으나, 현대의 사회복지의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의 대상이다.

2. 사회복지의 정책은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답: O

해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사회권의 종류와 맥을 같이 한다.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사회권에서 규정한 권리들은 모두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개념

가. 사회복지의 시대적 발전에 따른 변화

인권과 복지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권과 복지를 분리해서 다루어져 왔다. 국가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할 기본적인 책임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도 복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발전에 따라 인권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권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인권 침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 약자들은 동시에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와 인권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나. 사회복지의 의미

인권 담론에서 복지의 지위가 달라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복지, welfare는 불만이 없는 또는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라는 뜻이 된다. 즉 사회복지란 이상적인 인간사회,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르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기에 곤란을 겪는 사회적 약자 즉,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영국의 구빈법(Poor Law)에서 출발한 공적 구제제도와 민간에서 실시된 자선사업, 사회사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의 각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란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으로 보며, 개인과 사회를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본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공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요구를 갖는 존재

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예방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보완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보완적 관점은 권리의 소극적 개념(negative)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복지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란 불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소수의 개인에게 해당하며, 자선·민간단체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설사 국가가 개입을 한다 해도 절대빈곤,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이 최저수준, 즉 절대 빈곤을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럴 경우 정해진 예산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의 대상을 주변화시키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복지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개념(positive)과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것이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본다. 이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집행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당하는 소외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

다. 사회복지의 두 가지 관점

사회복지는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으로 보며, 개인과 사회를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본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공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요구를 갖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예방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보완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보완적 관점은 권리의 소극적 개념(negative)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복지를 가난

하고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란 불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소수의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자선·민간단체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설사 국가가 개입을 한다 해도 절대빈곤,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이 최저수준, 즉 절대 빈곤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럴 경우 정해진 예산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을 규명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의 대상을 주변화시키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사회복지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개념(positive)과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것이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본다. 이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집행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당하는 소외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

라.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크게 일반적 목적과 사회 기능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일반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립성 유지, 개인적 성장과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한 인간이 인종, 종교, 연령, 성별, 교육과 경제적 수준, 신분 등에 관계없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장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란 개인이 타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립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자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의미를 스스로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의 사회 기능적 목적은 사회적 통합과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통해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사회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가 경제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사회복지활동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기흐름을 안정화 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 사회복지의 주체

근대적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있지만,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시관점에서 보면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보통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실시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는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관련 전문 인력을 말한다.

바.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인 서비스의 수혜자와 사회복지의 정책대상인 사회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천대상인 서비스의 수혜자는, 종전에는 주로 빈민이나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특정 계층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특별한 보호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고아, 빈민, 장애인, 노인 등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복지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의 또 다른 대상은 사회복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즉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needs)이다. ‘욕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것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욕구는 충족해야 할 기본적 욕구 또는 충족할 수 있는 욕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욕구는 개인이 생명을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가. 19세기 서유럽

19세기 서유럽에서는 시민권이 시민적 시민권과 정치적 시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민권사상은 계약자유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원리로 하고 있는 근대 시민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계약자유 원칙은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한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절대불가침 원칙은 계약자유 원칙을 기초로 하는 원칙이다. 상호존중 또는 상호승인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원칙이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원칙으로, 빈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 시민권 소유자로서의 자격까지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한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렸다. 국가의 역할은 법과 질서 유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았지요. 영국에서 구빈법을 시행할 때에도 실직과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구민법에 불만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던 개인주의적 빈곤관에서 벗어나 빈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

비로소 국가가 개인의 복지에 적극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법도 변화하게 되었다.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유지 등의 법리를 통하여 계약자유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제한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사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되었고 〈세계인권선언〉 등을 거쳐 사회권으로 확장되었다.

자선적인 요소가 강했던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화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 농촌과 도시 사이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제도적 개념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의 오래 전부터 인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회복지와 인권과 헌법, 특히 사회법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인식의 변화는 서유럽 국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다. 시민적 권리에서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어 온 사회복지정책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편과 함께 권리를 재정적하게 된다. 시민권에서 사회권으로 변화한 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자유 원칙과 소유권 절대불가침원칙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통해 사회권을 강화하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시민권 논쟁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보편성과 평등의 가치가 후퇴하고 시장을 통한 선택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유럽의 복지재편과 권리개념의 변화에 대해 서유럽 사회 내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성과 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

서유럽의 복지재편을 둘러싼 최근 논쟁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이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s)을 시민권의 중요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복지국가의 기초이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마셜의 사회적 시민권 이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소극적인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동일한 범주의 보편적 시민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사회적 권리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식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시민권은 복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제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소극적’ 권리는 본질적으로 ‘적극적’ 권리라는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용과 사회적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시장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생각했을 때, 복지국가를 ‘시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시장에서 복지의 최종 이용자들에게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 시장에서 선택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개념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간의존율이 높고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화로 인한 피해가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재원과 서비스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이 의식주(衣食住)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욕구패러다임(Needs Paradigm)에서 권리의 패러다임(Rights Paradigm)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의 이용자가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기본적인 정의와 권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라.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와 법의 제정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는 법의 제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복지 개념이 변화하게 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제도화되는 행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적 개념에서 제도적인 개념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선과 박애의 개념이었던 사회복지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간이자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권리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내용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사회복지정책이 시혜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리임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가.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인권의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개인의 역량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사회복지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즉 ‘사회권규약’의 조항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영역인 노동의 권리와 노동 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과 아동이 보호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권리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시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개입하고 가능한 자원과 제도를 마련해야만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 사회권 규약

물론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주거나 교육과 같이 복지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반드시 사회 보장권에서만 발생할 필요는 없다.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부터도 사회 보장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처우 조차 고의적으로 거부한 정책을 놓고, 망명 신청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소송을 한 사람들은 도착 즉시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중에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해 온 영국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도 거부당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해당 부서 장관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며, 국가가 망명을 거부당한 이들의 처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법률에 의해 유급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다. 인권과 사회복지 정책

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더 이상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연대 등 기본 가치에 의거하여 국가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고, 이러한 의무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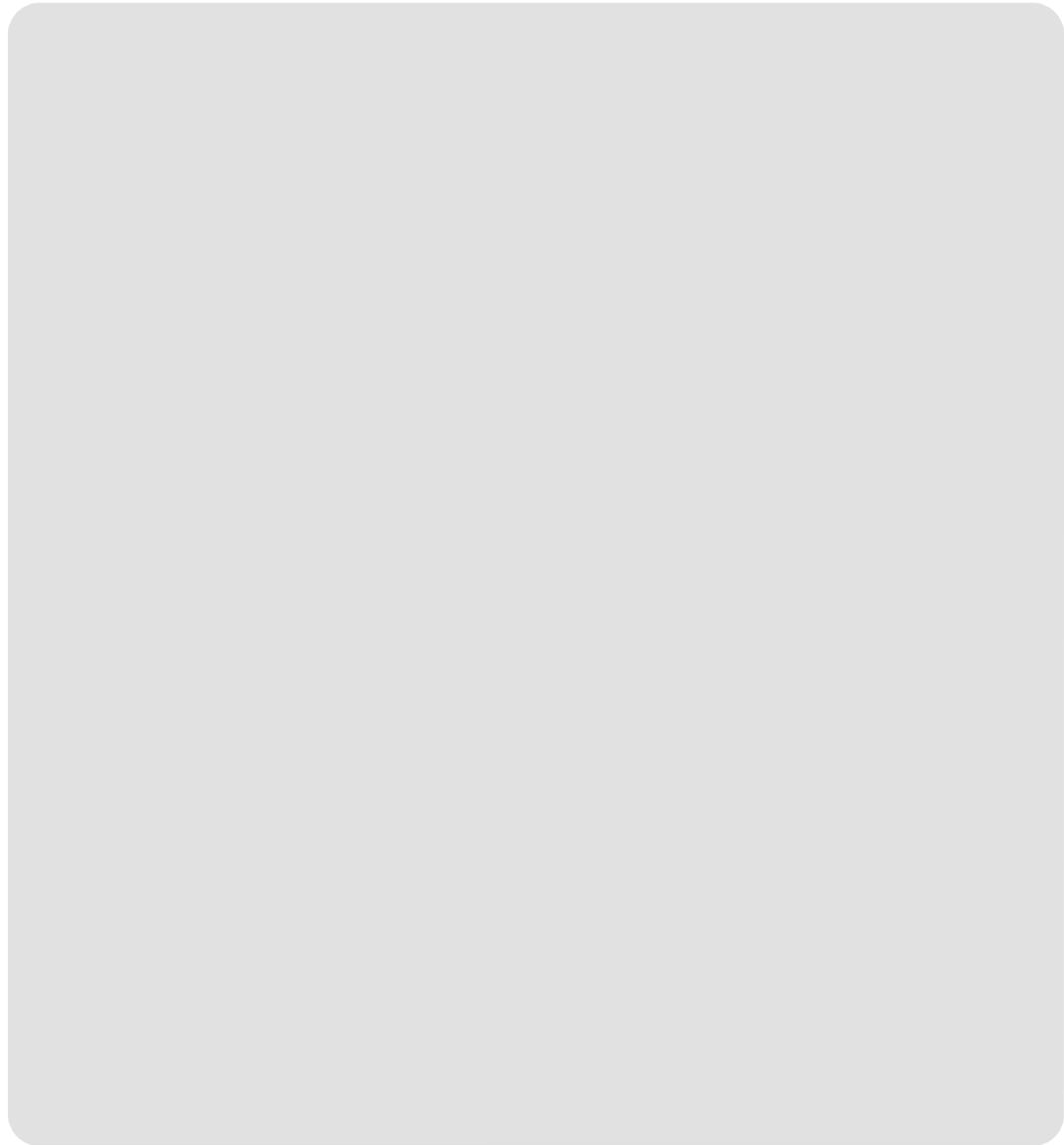
물론 헌법이나 사회복지 정책만으로 개인이나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사회복지 정책들이 모두 당초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인권과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인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한 합의 과정 없이 법이 제정된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법안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헌법과 국제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주거권, 의료권, 건강권, 노동권과 같은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예산이다. 사회복지란 다른 어떤 국가적 사안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예산이 취약한 사회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시혜로 여기며, 소수의 사회적 취약 계층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불시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나를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록해봅시다.





문제풀기

1.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사회복지의 시작은 19세기 미국의 구빈법에서 시작되었다.
- ②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대상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의 각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사회복지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를 별개로 본다.
- ④ 사회복지의 개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보완적 관점은 권리의 적극적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제도적 관점은 소극적 개념과 맞닿아 있다

답안: 2

해설: 사회복지의 시작은 16세기 영국의 구빈법(Poor Law)에서 출발했으며, 사회복지의 개념은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사회적 일차적인 관심으로 보며, 개인과 사회를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보완적 관점은 권리의 소극적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2.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시관점에서 사회복지의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책주체는 누구인가?

- ① 국가 ② 자선단체 ③ 민간기관 ④ 사회복지사

답안: 1

해설: 사회복지의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보통 국가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정책을 위탁 받아 실시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사회권규약'의 조항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상반된다.
- ② 사회권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③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와 무관하다.
- ④ 인권과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인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답안: 4

해설: 사회권규약의 조항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개입하고 가능한 자원과 제도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반드시 사회 보장권에서만 발생할 필요는 없다.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부터도 사회 보장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의 개념

- 1) 사회복지 : 이상적인 인간사회,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 2) 사회복지의 목적
 - 일반적 목적 :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립성 유지, 개인적 성장과 개발
 - 사회 기능적 목적 : 사회적 통합과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을 도모
- 3) 사회복지의 주체 : 정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공공기관, 민영기관), 실천주체(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
- 4) 사회복지의 대상 : 실천대상(서비스의 수혜자), 사회복지의 정책대상(사회문제)

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 자선적인 요소가 강했던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뿌리내리게 됨
→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변화함
- 서유럽에서 복지재편을 둘러싸고 논쟁 발생
→ 마셜이 사회적 시민권을 시민권의 중요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복지국가의 기초 이론을 제시
-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이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욕구패러다임에서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사고가 전환
→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
- 사회복지 개념이 변화하게 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제도화됨

3. 사회복지정책과 인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항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온 내용을 명시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부터도 사회

보장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권과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마련
→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됨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 인 쇄 | 2018년 8월
| 발 행 | 2018년 8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51 | F A X | (02) 2125-09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35-7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